

ISSN 0000-0000

장애인복지 연구

DISABILITY & SOCIAL WELFARE

제1권 제2호

제1권 2호

장애인복지 연구

DISABILITY & SOCIAL WELFARE

| 목 차 |

장애인복지 연구 Disability and Social Welfare

1. 학교 급별 전환교육의 요소와 특수학급 공간구성 요소에 관한 연구 1
김진철
2. 취업애로계층 가구주의 노동속성변화에 관한 연구 31
김선희
3. 장애인의 임금수준결정요인연구 55
김재영
4. 장애인행정도우미 직무분석 79
이용복
5.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103
김정희

학교 급별 전환교육의 요소와 특수학급 공간구성 요소에 관한 연구

A Study of Factors for Transition Education in School's levels and Spaces of
Special Education

김진철*

【국문초록】

최근의 특수교육은 분리교육 중심의 특수학교 주도에서 통합학급 중심의 특수학급 주도로 바뀌고 있어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은 대부분 장애로 수반되는 어려움으로 인해 진로와 직업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좁을 뿐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자신의 강점을 살려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환교육(진로 직업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요구 속에 전국 특수학급 교사의 80% 이상이 불만족을 표시할 정도로 특수학급의 물리적 환경은 열악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 급별 전환교육에 필요한 설비·교구와 소요 공간을 분석하여 전환교육에 적합한 특수학급 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구하였으며, 이에 따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특수학급의 전환교육은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요소와 직업인식 단계로서 자기관리, 금전, 요리, 청소, 컴퓨터 사용, 직업 알기 등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여 학습공간〈동적활동공간〉작업대, 컴퓨터〉요리, 운동기구, 정적활동공간, 수납공간, 세면대〉세탁, 식물재배, 바다난방, 화장실의 순서를 고려하여 체계적인 설비·교구와 공간의 설치가 요구되며 중학교 특수학급은 기능적 생활중심 교육과 직업 탐색의 단계로서 이동능력이나 소비활동, 체험활동 등 사회적응훈련이 필요하고 효율적인 작업 공간의 구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학습공간〈동적활동공간〉컴퓨터, 작업대〉정적활동공간, 요리〉세탁, 사무용기기〉운동기구, 수납공간〉탈의실의 순서로 설비·교구와 공간의 설치가 필요하다.

2 장애인복지 연구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전환교육은 업탐색부터 실습을 거쳐 취업 및 진학지원까지 예비 사회인으로 서의 준비과정이 필요하여 학습공간> 작업공간> 동적활동공간> 컴퓨터> 정적활동공간> 세탁 등의 순서를 고려하여 체계적인 설비·교구 및 공간의 설치가 요구된다.

특수학급의 전환교육은 체계적이어야 한다. 성공적인 전환교육의 조건은 초등학교 과정부터 개별화 전환교육계획(Individualized Transition Planning; ITP)에 의한 단계적인 교육과정과 그 교육과정의 운영에 적합한 설비·교구로 이루어진 학습 및 활동공간이다.

☼ 주제어 : 전환교육, 학교 급별, 특수학급, 공간구성, 특수교육대상학생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의 특수교육은 분리교육 중심의 특수학교 주도에서 통합교육 중심의 특수학급 주도로 전환되고 있으며, 분리교육에서 통합교육을 강조하는 추세로 변화되고 있고 특수교육 전반의 실천방식의 변화는 특수학급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교육의 질이 특수학급의 교육 내실화 정도에 좌우하는 중요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정희섭 외, 2006: 3).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기존 특수학급은 일반교실에 최소한의 물리적 보안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그러나 특수학급은 교과학습과 생활지도, 직업교육까지 담당하는 다목적공간으로 계획되어야 하고 학습 활동 시 이용 가능한 보조교재 및 보관함을 비치하는 등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강병근, 2007: 91). 전국 특수학급 교사를 중심으로 질문한 결과 80%이상의 교사들이 특수학급의 물리적 환경에 불만족을 표시하였다. 특수학급에는 기본적인 기자재 외에 자료의 보관 공간 등 장애학생들에게 충분한 교육공간이 필요하고 활동중심 학습이 많으며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일반학생에 비해 월등히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보다 쾌적하고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최세민 외, 2005: 240).

또한, 일반학생들이 초·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한 진로와 직업에 관심을 두고, 대학에서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거나 자신의 강점과 흥미를 살린 직업을 얻고자 준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애학생도 자신의 능력에 따라 미래를 준비해야만 한다. 그러나 장애를 가진 경우는 대부분 장애로 인해 수반되는 어려움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좁을 뿐 아니라 미래를 준

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장기계획에 의거하여 좀 더 빠른 시기에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신의 강점을 살려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되어야 한다(정인숙 외, 2007: 3). 2008년 5월 26일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거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교육현장에서는 장애학생들의 진로 및 직업교육(전환교육)을 체계화하고 실천해야 하는 당위성과 책무성을 자각하고 특수교육의 변화에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급별 전환교육 운영에 필요한 설비·교구 등을 파악하여 소요 공간을 도출하고 그 관계를 분석하여 학교 급별로 전환교육 영역의 운영에 적합한 특수학급 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구함으로써 통합교육의 인식과 전환교육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특별한 교육적 요구 중에 물리적인 면을 해소하여 전환교육이 체계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특수학급 설치 운영이 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로 한정한다. 유치원 교육과정은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는 달라 비교가 어려울뿐더러 [표 1-1]과 같이 특수학급의 설치율도 2.0%에 지나지 않아 현황 파악이 어렵고 대표성과 통계 분석의 한계가 있다.

〈표 1-1〉 학교 급별 일반학교 대비 특수학급 설치율

(단위: 학급, %)

시·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전체 수	설치 교수	비율	전체 수	설치 교수	비율	전체 수	설치 교수	비율	전체 수	설치 교수	비율	전체 수	설치 교수	비율
전체	8,240	165	2.0	5,807	3,282	56.5	3,080	1,071	34.8	2,280	453	19.9	19,407	4,971	25.6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08정기국회보고자료, p. 30

본 연구를 진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육의 현황을 알아본다.

둘째, 학교 급별 전환교육의 영역별 요소 분석에서는 자료분석을 통해 학교 급별로 전환교육의 영역을 운영하는 전환교육의 요소와 소요되는 설비·교구를 파악하여 활동공간을 알아보고 분석한다.

II. 전환교육의 이론적 고찰

1. 특수교육 현황

특수교육의 현황(교육과학기술부, 2008: 9-20)에서 최근 5년간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별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학교에 배치되어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표 2-1〉 연도별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 현황

(단위: 명, %)

연 도	특수학교 배치 학생 수	일반학교(일반학급) 배치 학생 수	전체 학생수
2004	23,762 (42.9)	31,612(3,610) (57.1)	55,374 (100)
2005	23,449 (40.2)	34,913(5,110) (59.8)	58,362 (100)
2006	23,291 (37.2)	39,247(6,741) (62.8)	62,538 (100)
2007	22,963 (34.8)	42,977(7,637) (65.2)	65,940 (100)
2008	23,400 (32.7)	48,084 (67.3)	71,484 (100)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08정기국회보고자료, 2008, p. 15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교육의 확산으로 일반학교 내에 설치하는 특수학급은 최근 5년간 연평균 500여 학급씩 지속적으로 증설되어 왔으며 2007년도와 2008년도를 비교하면 특수학교는 5개교가 신설된 반면, 특수학급은 599학급이 증설되었다.

〈표 2-2〉 특수학교 수 및 특수학급 수 변화 추이

	2007년	2008년	증감
특수학교	144	149	5개교 신설
특수학급	5,753	6,352	599학급 증설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08정기국회보고자료, 2008, p. 13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현황을 보면 지적장애 학생이 40,222명으로 전체 학생의 56.3%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지체장애 학생이 8,788명으로 12.3%를 차지하고 가장 적은 장애영역으로는 의사소통장애 학생으로 1,226명, 1.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학생이 33,974명으로 47.5%를 차지하고 중학교 학생이 16,833명, 23.6%, 고등학교 학생은 17,441명, 24.4%를 차지하고 있다.

〈표 2-3〉 특수교육대상학생 현황

구 분		특수학교	일 반 학 교		계	
			특수학급	일반학급		
특수교육대상학생		23,400	37,857	10,227	71,484	
학 생 수	장애영역별	시각장애	1,460	313	330	2,103
		청각장애	1,229	795	1,049	3,073
		지적장애	15,921	21,360	2,941	40,222
		지체장애	3,111	3,334	2,343	8,788
		정서장애*	1,547	5,121	1,013	7,681
		의사소통장애	108	544	574	1,226
		학습 장애	7	5,900	847	6,754
		건강장애	17	490	1,130	1,637
	계	23,400	37,857	10,227	71,484	
	과정별	초등학교	7,458(22.0%)	22,887(67.4%)	3,629(10.7%)	33,974
		중학교	6,346(37.7%)	8,379(50.0%)	2,108(12.5%)	16,833
		고등학교	6,865(43.8%)	5,957(38.0%)	2,864(18.3%)	15,686
		전 공 과	1,755	-	-	1,755
		계	22,424	37,223	8,601	68,241
학 교 수		149	4,971	4,790	9,910	
학 급 수		3,488	6,352	8,918	18,758	
특수학교(급)교원수		6,465	6,700	-	13,165	
특수교육보조원 배치수		1,775	4,464	614	6,853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08정기국회보고자료, 2008, p. 14

주 : 조사 기준일이 2008.4.1일로 구법의 장애범주 구분에 따라 조사되었으며 정서장애*는 자폐성 장애를 포함함

교육환경별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현황을 보면 특수학교에 배치되어 교육을 받는 학생이 23,400명으로 32.7%를 차지하는데 반해 일반학교에 배치되어 교육받는 학생은 48,084명, 67.3%로 두 배가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일반학교에 배치된 학생 중 특수학급에 배치되어 통합교

6 장애인복지 연구

육을 받는 학생이 37,857명으로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완전통합교육을 받는 학생 10,227명보다 3.7배가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 계 : 71,484명

[그림 2-1] 교육환경별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 현황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08정기국회보고자료, 2008, p. 15

연도별 장애영역별 특수교육대상학생 현황을 보면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등록하는 학생 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학습장애 학생은 감소하는 반면 건강장애 학생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4> 연도별 장애영역별 학생 수

(단위: 명, %)

연도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전체학생수
'04	1,650 (3)	2,938 (5)	31,705 (57)	5,232 (10)	4,787 (9)	-	9,062 (16)	-	55,374 (100)
'05	1,745 (3)	2,549 (4)	33,618 (57.6)	5,924 (10)	5,870 (10)	-	8,447 (15)	209 (0.4)	58,362 (100)
'06	1,902 (3)	2,806 (5)	33,958 (54)	6,957 (11)	8,852 (14)	301 (0.4)	6,738 (11)	1,024 (1.6)	62,538 (100)
'07	2,292 (3.5)	2,864 (4.3)	36,041 (54.7)	7,739 (11.7)	7,695 (11.6)	1,185 (1.8)	6,982 (10.6)	1,142 (1.7)	65,940 (100)
'08	2,103 (3.0)	3,073 (4.3)	40,222 (56.3)	8,788 (12.3)	7,681 (10.7)	1,226 (1.7)	6,754 (9.4)	1,637 (2.3)	71,484 (100)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08정기국회보고자료, 2008, p. 16

주 : 건강장애는 2005년부터, 의사소통장애는 2006년부터 조사 실시

2. 전환교육의 이해

1) 전환교육의 과정

전환교육이란 장애학생을 위한 진로교육의 총체적 서비스 개념이다. 장애학생의 요구 및 장애 특성에 따라 진학, 취업, 독립생활 또는 사회참여를 포함하는 학교에서 사회로 혹은 다음 단계로의 전환을 촉진시키고자 제공되는 종합적인 사회통합 교육 및 서비스 활동을 의미한다(송은주, 2004: 17-21).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전환교육의 개념은 생활 전반적인 면에서 이루어지는 전환에 대한 지원이라는 의미보다는 학교 졸업 후 취업을 위한 적응 교육으로 고등학교 및 전공과의 교육이 주가 되는 직업전환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학교를 졸업하면서 학교의 체제에서 성인사회로의 전환은 한 단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과정은 [표 2-5]와 같이 ‘투입과 기초’, ‘과정’, ‘결과로서의 취업’의 세 단계를 필요로 한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경우에는 세 단계가 순차적으로 계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진로배치 후 진로탐색이나 진로준비가 이루어지는 방안도 모색될 수 있으며 진로탐색과 진로준비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동시에 일반고용 외에 보호고용이나 지원고용 같은 다양한 형태의 고용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

전환과정의 결과는 취업으로서의 배치로 경쟁고용, 보호작업장 등의 취업을 들 수 있다. 취업 이외로는 직업훈련, 계속훈련 그리고 미취업을 들 수 있다. 학교 교육을 통한 기본적인 서비스와 지역사회 내의 기관에서 제공되는 직업의 종류 등 모든 가능한 서비스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도금숙, 2000).

〈표 2-5〉 장애학생을 위한 세 단계의 전환교육 모델

Ⅲ. 결과로서의 취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쟁고용 2. 지원고용 3. 보호작업장 ■ 주거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사회 주거 2. 그룹홈 3. 시설 ■ 여가생활 ■ 사회생활
Ⅱ.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화된 프로그램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환교육의 책임에 대한 공식화 2. 조기 계획 ■ 수의자 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학생의 부모 2. 장애학생 ■ 관련 기관간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 2. 직업재활 기관 3. 성인 재활 시설
Ⅰ. 투입과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등과 직업의 특수교육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능적 교과 2. 통합된 학교 환경 3. 지역사회에 기초한 서비스 전달

자료 : 박희찬, 전환교육의 이론과 적용방안, 제44회 전국특수교육 연수자료, 한국정신지체아교육학회, 1999

8 장애인복지 연구

전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교사나 가족과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은 다양한 교과 영역들에서 학습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머지않은 장래에 다가올 성인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기술과 능력을 준비할 수 있는 내용도 중시하여야 한다. 미래에 성인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가능한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사회적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진로교육으로 전환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장애학생의 특성과 필요를 고려한 개별화 전환교육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박희찬, 1999: 267-286).

2) 전환교육의 시작 시기

현재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직업교육은 중학교 과정부터 갑자기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체계적인 직업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치원부터 진로인식, 진로탐색, 진로준비, 취업 등 진로발달 단계에 따른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강병호 외, 2003: 127).

전환교육의 시작 시기에 대한 연구 결과(유현주 외, 2005:164-167)를 보면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생각하는 전환교육 실시 시기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교사가 68명(41.7%)이고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실시하여야 한다’는 교사가 55명(33.7%)으로 응답해 현재 중학교 과정부터 실시되고 있는 전환교육의 실시 시기를 앞당겨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6〉 전환교육 실시 시기

(단위: 명, %)

응답항목 응답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부터	고등학교 졸업이후
전체	28(17.1)	55(33.7)	68(41.7)	12(7.3)	.	.

자료 : 유현주 · 유애란 · 강계남, 초등학교 장애학생의 전환교육에 대한 교사인식과 교수실태, 나사렛論叢 제10호, 2005, p. 165.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 유형에 따른 전환교육 실시 시기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의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전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가 43명(45.2%)으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특수학급에 근무하는 경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전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가 32명(47.0%)으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표 2-7〉 학교 유형에 따른 비교

(단위: 명, %)

응답항목 학교유형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부터	고등학교 졸업이후
특수학교	12(12.6)	43(45.2)	36(37.8)	4(4.2)	.	.
특수학급	16(23.5)	12(17.6)	32(47.0)	8(11.8)	.	.

자료 : 류현주·유애란·강계남, 초등학교 장애학생의 전환교육에 대한 교사인식과 교수실태, *나사렛論叢* 제10호, 2005, p. 166

또한 초등학교 교사가 지도하고 있는 학생의 장애 유형에 따른 전환교육 실시 시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고학년부터’의 항목에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인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 36명(53.7%), 지체부자유 20명(62.5%)이었다. 청각장애를 지도하는 교사의 경우 전환교육 실시 시기를 ‘유치원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항목에 8명(66.6%)으로 가장 높은 응답을 하였다. 시각장애를 지도하는 교사의 경우 가장 적절한 전환교육 실시 시기에 대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라고 반응한 교사가 16명(57.1%)으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정서장애를 대상으로 하는 교사들은 전환교육 실시에 가장 적절한 시기를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라는 항목에 똑같이 각각 8명(33.2%)으로 가장 높게 반응하였다.

〈표 2-8〉 입급 학생의 장애 유형별 비교

(단위: 명, %)

응답항목 장애유형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부터	고등학교 졸업이후
지적장애	8(11.96)	23(34.3)	36(53.7)	.	.	.
시각장애	4(14.2)	16(57.1)	8(28.5)	.	.	.
청각장애	8(66.6)	.	4(33.3)	.	.	.
지체부자유	4(12.5)	8(25.0)	20(62.5)	.	.	.
정서장애	4(16.6)	8(33.2)	8(33.2)	4(16.6)	.	.
학습장애

자료 : 류현주·유애란·강계남, 초등학교 장애학생의 전환교육에 대한 교사인식과 교수실태, *나사렛論叢* 제10호, 2005, p. 167

지금까지의 전환교육은 중학교에서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직업기능과 직업태도, 졸업 후 성공적인 고용을 준비하는 교육의 일환이라고 사고되어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초등학교 교사들이 전환교육의 시기를 중학교 이상에서 실시하기보다는 초등학교 저학년 또는 고학년부터 실시하는 것이 효

10 장애인복지 연구

울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전환교육 투입에 있어 대상의 확대와 내용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유현주 외, 2005: 18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업전환의 의미를 포함하여 생활 전반적인 면에서 이루어지는 전환교육이라고 설정하여 초등학교 과정을 포함한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의 전환교육의 요소를 추출하였다.

3. 특수학급의 공간구성 요소

1) 특수학급의 설비·교구

특수학급 운영을 위한 시설·설비는 일반학급과 달리 특수학급 교사가 특수학교(급) 시설·설비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여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의 도구로서 특수교육환경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모든 학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설비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특수학급에 배치된 학생들의 특성과 학교의 실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정희섭 외, 2006: 49).

특수학급의 설비·교구 기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 제20740호, 2001.10.31] 제8조(교구)와 특수학교(급)시설·설비기준령[대통령령 제19959호, 2007.3.27, 일부개정] 제1조, 제4조에 의거하여 최소한 일반학급의 설비·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2) 특수학급의 공간

특수학급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교실 공간을 효과적으로 구성하여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수학급을 구성하는 기본적 공간은 명칭만 다를 뿐 유사하게 분류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표 2-9]) 본 연구에서는 현황조사 중에 특수교사와 면담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세부적으로 재구성하였으며 각 공간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표 2-9〉 특수학급 공간의 분류

최환호	이영숙	안남희	본 연구
① 개별학습지도공간	① 학습지도공간	① 개별지도공간	① 개별학습공간
② 학습공간		② 학습공간	② 그룹학습공간
③ 작업공간		③ 작업공간	③ 작업공간
④ 놀이공간	② 놀이활동공간	④ 놀이공간	④ 동적활동공간
⑤ 도서공간	③ 조작활동공간	⑤ 도서공간	⑤ 정적활동공간
	④ 교사공간		⑥ 관리업무공간
⑥ 자료보관공간		⑥ 자료보관공간	⑦ 수납공간

(1) 개별학습공간

개별학습공간은 개인용 책상과 의자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사의 일제지도에 일제학습을 진행하면서 개별적인 지도를 받는 공간이다.

(2) 그룹학습공간

그룹학습공간은 교구학습, 문자나 숫자학습 등 수준이 비슷한 여러 명의 학생이 같은 활동을 진행하는 공간이다. 다양한 활동을 필요로 하는 특수학급에서 개별학습공간의 배치는 감소하는 반면 개별학습공간이나 작업공간 등으로의 변환이 가능한 책상을 배치하거나 일반 책상의 배열을 다양화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그룹학습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3) 작업공간

작업공간은 공작이나 조리, 미술이나 직업교육활동 공간으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개수대 옆에 위치하며 가까운 곳에 결과물을 전시하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작업대는 넓은 작업용 테이블이나 다기능책상을 사용하고 코너학습 공간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4) 동적활동공간

학생이 교실 내에서 뛰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학습활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놀이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타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방해가 되는 경우로 동적인 놀이활동의 경우 크게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나타난다.

(5) 정적활동공간

정적활동공간은 학생의 움직임이 거의 없이 타 학생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용하게 놀이기구나 교구를 가지고 노는 경우를 말하며, 구체적인 놀이 종류는 동화책, 만화읽기, 인형놀이, 종이접기, 블록 쌓기, 칠판에 그림그리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6) 관리업무공간

교사용 책상과 의자와 컴퓨터, 수납장 등으로 구성되어 교사의 업무를 처리하고 학생 관련 주요 서류를 보관하는 교사용 사무공간이다. 보통 교실 앞쪽에 위치하여 교사가 시선으로 학생의 행태를 파악하며 관리한다.

(7) 수납공간

수납공간은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교구 및 설비를 보관하는 수납설비를 배치하는 공간으로 전체 학교급에서 수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붙박이장을 비롯한 기능성 수납 설비를 사용한다.

Ⅲ. 전환교육의 요소 및 공간 구성요소에 대한 영역별 분석

1. 조사 개요

전환교육의 요소 선정의 기준이 되는 전환교육의 영역은 특수교육 전문가가 제작하고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펴낸 ‘전환교육의 실제 I(김형일 외, 2006: 39-149)’의 학교 급별로 개인생활, 사회생활, 여가생활, 직업생활 영역으로 분류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특수학교 기본교육과정의 교과 내용을 추출하였으며 특히, 초등학교 과정의 ‘실과’와 중·고등학교 과정의 ‘직업’ 교과의 내용을 보충하여 전환교육의 요소와 소요 설비·교구를 추출하였다.

교과의 분석은 교과서를 기준으로 하는데 보통 1권인 국정교과서의 경우나 또는 한 종류의 교과서인 경우는 ‘교과 학년-학기-단원’이나 ‘교과 학년-단원’으로 표기하면 적당하나 대부분의 검정 교과서는 여러 종류로 일정한 기준이 없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한 각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주제를 기준으로 표기하였으며 수업에 필요한 설비·교구를 파악하여 특수학급 공간구성의 요소를 추출하였다.

특수학급의 교육과정의 대상 교과는 초·중등학교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특수학교 교육과정 중 기본 교육과정의 교과로 한정한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인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는 대부분 통합학급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과이므로 제외하였으며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중 전문·직업 교과는 전환교육과 관련성은 많으나 특수학급에 적용하기에 공간상 어려움이 있어 제외하였다.

2. 초등학교 특수학급의 전환교육 요소

초등학교 특수학급의 전환교육은 사회로의 바람직한 전환을 위해 생활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개인, 사회, 여가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단계적으로 학습하고 더 나아가 중학교에서 직업적인 탐색을 할 수 있도록 직업인식 단계로서 직업에 관심을 가지는 데 중점을 두고 요소를 추출하였다.

초등학교에서의 전환교육 내용은 교과에서 꼭 이수되어야 하는 학습 요소를 분석하여 생활기술을 습득하며 더 나아가 직업을 갖기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직업을 인식할 수 있는 요소를 추출하였다.

개인생활에서 추출한 내용은 대부분 저학년에 있는 교육내용으로 바른 옷차림과 자기주변의 정리 정돈, 가족알기이며 고학년의 교육내용은 경제생활을 위한 금전관리하기의 요소에 초점을 두었다. 사회생활에서는 대인관계기술과 관련이 있는 바르게 말하기, 바른 자세로 인사하기, 이웃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이웃알기와 물건사기, 여러 가지 규칙과 질서에 관련된 교통규칙과 공공질서 지키기,

실생활과 밀접한 계절에 관한 생활을 교육내용으로 선정하였다. 여가생활에서는 다양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문화와 여가생활에 대해 알기와 스포츠 중에서 태권도, 인라인스케이트의 요소를 추출하였으며 간단한 요리로 밥과 빵을 이용한 음식을 만들어 보는 내용을 선정하였다.

직업생활에서는 간단히 직업을 인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직업의 종류를 알고 자신의 장래희망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내용을 선정하였다.

초등학교 특수학급의 형태는 통합교육을 모형으로 하는 시간제 특수학급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도구교과에만 교육 내용이 치중될 수 있으나 교육과정에 속한 내용을 전환교육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개개인의 수준에 따라 체계적인 지도가 병행되어야 한다.

〈표 3-1〉 초등학교 특수학급의 전환교육 요소

영역	내용	전환교육 요소	초·중등학교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특수학교 교육과정 기본교육과정	소요 설비 · 교구
개 인 생 활	바른 옷차림하기	이 닦기	바른생활 2-1-1 도덕 3-1-1 도덕 4-1-1	실과 5	세면대
		손과 얼굴 씻기			
		단정한 옷차림 구별하기			
		잠잘 때의 옷차림 알기			
		운동할 때의 옷차림 알기			
	의류와침구	의류와 침구 정리하기		실과 5	
		의류와 침구 관리하기			
	정리 정돈하기	자신의 사물함 구별하여 정리하기	바른생활 2-1-2 도덕 4-1-2 사회 5-1-3 실과 5-2	실과 2	사물함 진공청소기 청소용구 청소용구함 분리수거함
		놀고 난 후 장난감 정리하기			
		교실의 정리정돈 하기			
		쓰레기 분리수거하기			
	주거관리	생활용품 사용하기	실과 5-7	실과 4, 6	
		가전제품 사용하기			
	가족 알기	가족 구성원이 하는 일 알기	도덕 3-1-4 도덕 4-1-1 실과 5-1	실과 1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 찾기			
		친척의 호칭 알기			
가족의 행사 알기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 찾기					
금전 관리하기	화폐 구별하기	실과 5-6	사회Ⅱ-경제문화 생활	모의 화폐 용돈기입장 입출금전표 모의 은행	
	액면가 알기				
	용돈의 개념 알기				
	용돈 기입장 기록하기				
	금융기관의 종류알기				
	입·출금 전표 작성하기				

14 장애인복지 연구

영역	내용	전환교육 요소	초·중등학교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특수학교 교육과정 기본교육과정	소요 설비 · 교구
사 회 생 활	바르게 말하기	자기 소개하기	바른생활 2-1-5	국어Ⅲ-말하기	
		들은 내용 전달하기			
		칭찬하는 말하기			
		부탁하는 말하기			
		거절하는 말하기			
		예삿말과 높임말 바르게 사용하기			
	바르게 인사하기	바른 자세로 인사하기	도덕 3-1-5 국어 1-2-4	사회Ⅱ-공동생활	
		인사말 알기			
		상황에 맞게 인사하기			
	이웃 알기	우리 동네 살펴보기	바른생활 2-1-3 바른생활 3-1-3 사회 4-2-3	사회Ⅰ-경제문화 생활	모의 이용시설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이웃 알기			
		물건의 종류에 따라 판매하는 가게의 종류 알기			
관공서 알기					
계절에 따른 생활	4계절의 특징 알기	사회 3-1-2 사회 5-1-1	과학Ⅱ-지구		
	계절에 따른 자연환경 변화 알기				
	계절에 따른 의복, 음식 알기				
	추위를 이기는 방법 알기				
	더위를 이기는 방법 알기				
공공질서 지키기	신호등 구별하기	도덕 3-1-2 도덕 4-1-2 도덕 6-5	사회Ⅲ-공동생활	모의 교통시설 모의 공공시설	
	차도와 인도 구별하기				
	교통규칙 알기				
	공공장소의 종류 알기				
	공공장소의 특징에 따른 예절과 질서 알기				
여 가 생 활	동물과 식물 기르기	사는 곳에 따른 동물 분류하기	실과 6-1 실과 5-3	실과 3 실과 8	식물재배도구
		집에서 기를 수 있는 동물 알기			
		애완동물을 기르는 과정 알기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식물 알기			
		꽃씨를 심을 때 준비물 알기			
		화초나 야채 심고 가꾸기			
	태권도	태권도 알기	읽기 3-1-5 말하기듣기 3-1-5		동적활동공간
태권도 기본동작 따라하기					
태권도 하기					

영역	내용	전환교육 요소	초·중등학교 국민공통기본교육 과정	특수학교 교육과정 기본교육과정	소요 설비· 교구
여 가 생 활	인라인 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 바르게 신기	읽기 3-1-5 말하기듣기 3-1-5		인라인스케이트, 동적활동공간
		인라인스케이트 탈 때 주의점 알기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방법 알기			
		인라인스케이트 타기			
	우리문화 알기	고유의 큰 명절 알기	도덕 4-2-4 사회 5-2-3	사회Ⅱ-공동생활 체육Ⅰ-놀이게임및 스포츠	
		명절에 하는 일 알기			
		한복 알기			
		한복입고 절하기			
		전통음식 알기			
	민속놀이 알기				
	다양한 여가생활	여가생활의 종류 알기	사회 4-2-2	사회Ⅲ-경제문화생 활	
		바람직한 여가생활을 즐기는 방법 알기			
		내가 할 수 있는 여가생활 찾기			
	요리하기	조리기구 이름과 쓰임새 알기	실과 5-4 실과 6-3	실과 7	조리기구세트, 개수대, 조리대 핫플레이트 전자렌지
		밥을 이용한 음식 만들기			
		빵을 이용한 음식 만들기			
식사예절 알기					
컴퓨터 사용	컴퓨터 작동하기	실과 6-7	실과 10	컴퓨터와 주변기기	
	인터넷 검색하기				
직 업 생 활	직업 알기	직업의 종류 알기	사회 5-1-1 실과 6-1	실과 11	
		자신의 장래희망 알아보기			
		사육 관련 직업 알기			
		작물재배 관련 직업 알기			
		서비스업 관련 직업 알기			
	조작기능	간단한 생활용품 만들기	실과 5-8 실과 6-4 6-5, 6-8	실과 9	목공구, 작업대 재봉틀 바느질세트
		바늘과 실로 용품 만들기			
		재봉틀로 용품 만들기			
		우리 생활과 목제품			
		재활용품 만들기			

초등학교 특수학급의 전환교육 요소를 활동 내용에 따른 소요 설비·교구를 추출하여 정리하면 [표 3-2]와 같다. 컴퓨터와 프로젝터(TV)는 전환교육을 안내하거나 학습프로그램을 이용한 전환교육을 진행할 때 필요하며 공공질서의 내용에서 모의 교통시설이나 모의 은행 등 모의 시설은 이용 시설을 방문하기 전에 여러 번에 걸쳐 모의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표 3-2〉 초등학교 특수학급의 전환교육에 필요한 설비·교구 및 활동공간

구분	활동 내용	소요 설비·교구	소요 활동공간
개인 생활	바른 옷차림	세면대	동적활동공간, 수납공간
	의류와 침구		수납공간
	정리정돈	사물함, 진공청소기, 청소용구, 청소용구함, 분리수거함	수납공간
	가족 알기		학습공간
	금전	모의 화폐, 용돈기입장, 입출금전표, 모의전표	학습공간, 정적활동공간
사회 생활	바르게 말하기		학습공간
	바르게 인사하기		학습공간
	이웃 알기	모의 이용시설	학습공간
	계절에 따른 생활		학습공간
	공공질서 지키기	모의 교통시설, 모의 공공시설	학습공간, 동적활동공간
여가 생활	동물과식물 기르기	식물재배도구	
	태권도		학습공간, 동적활동공간
	인라인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	학습공간, 동적활동공간
	우리 문화 알기		학습공간, 동적활동공간
	다양한 여가 생활		학습공간
	요리하기	조리기구세트, 개수대, 조리대, 핫플레이트, 냉장고, 전자렌지	작업공간
	컴퓨터 사용	컴퓨터와 주변기기	
직업 생활	직업 알기		학습공간
	조작기능	목공구, 작업대, 바느질세트, 재봉틀	작업공간

3. 중학교 특수학급의 전환교육 요소

중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의 사회로의 전환을 수월하게 지원하기 위한 개인생활, 사회생활, 여가생활, 직업생활 영역에서 꼭 필요한 전환교육 요소를 교육과정의 분석을 통해 추출하였다.

개인생활 영역에서는 실생활에서 꼭 필요하고 자립생활 능력을 길러주는 내용의 요소를 추출하였으며 사회생활 영역에서는 타인과 함께하는 생활 속에서의 원만한 대인관계의 유지를 위한 다양한 방법과 혼자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교통규칙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방법,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 등의 요소가 추출되었고 여가생활 영역에서는 다양한 현장체험 활동과 취미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경험의 폭을 넓히고, 그 속에서 자신의 취미와 특기를 찾아내어 여가시간을 자유롭고, 흥미롭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요소가 추출되었다.

특히 중학생이 되면 자신의 시간을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보낼 수 있어야 하므로 여가생활의 다양한 활동이 요소로 추출되었고 직업생활 영역에서는 직업 탐색의 단계로서 기초적인 작업 기술과 작업 태도를 기르는데 초점을 둔다.

중학교 특수학급인 경우 대부분 시간제 운영과, 학습장애 학생이 많은 특성상,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적 생활중심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전환교육에 필요한 학습 내용들을 교과 수업에 함께 담아내어 지도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은 게 현실이다.

각 요소는 학생들의 능력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선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최대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가정 및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일회성 교육이 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방과 후 교육 활동 속에서 프로그램의 운영은 학교 여건 및 지역사회의 환경 등 각 학급 특성에 맞게 시간운영을 적절히 조절하거나, 내용의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표 3-3〉 중학교 특수학급의 전환교육 요소

영역	내용	전환교육 요소	초·중등학교 국민공통기본교육 과정	특수학교 교육과정 기본교육과정	소요 설비·교구
개 인 생 활	몸단장	목욕하기	기술가정	직업 I-2	세면대
		단정한 옷차림하기	기술가정-청소년의생활		
		계절과 장소에 맞는 옷차림하기	기술가정		
		위생관리하기	기술가정		
	의복관리	옷을 분류하여 보관하기	기술가정	직업 I-2	빨래판 세탁기, 건조대, 다리미, 다리미대
		세탁물 분류하기	기술가정		
		손세탁하기	기술가정		
		건조대를 이용하여 건조시키기	기술가정		
		신발 빨기	기술가정		
	식생활	손으로 다듬기	기술가정	직업 III-1	개수대, 조리대, 전자렌지, 오븐렌지, 핫플레이트, 냉장고
		채소 및 과일, 곡류 씻기	기술가정		
		여러 종류의 채소 썰기	기술가정		
		여러 종류의 과일 깎기	기술가정		
		여러 종류의 차 끓이기	기술가정		
		감자, 옥수수 삶기	기술가정		
		라면, 자장라면, 우동 끓이기	기술가정		
		상차리기	기술가정		
		식탁 정리하기	기술가정		
	설거지 및 건조시키기	기술가정			

18 장애인복지 연구

영역	내용	전환교육 요소	초·중등학교 국민공통기본교육 과정	특수학교 교육과정 기본교육과정	소요 설비·교구
개 인 생 활	주거관리	집안 청소 및 관리하기	기술·가정	직업 I-1	진공청소기, 청소용구, 청소용구함, 분리수거함
		쓰레기 분리수거 하기	기술·가정		
		청소기 사용하기	기술·가정		
		가전제품 다루기	기술·가정		
	건강관리	음식물의 영양소에 대해 알기	기술·가정	과학Ⅲ-건강한 생활	
		음식물 골고루 섭취하기	기술·가정		
		적당한 운동하기	체육	체육Ⅱ-보건과 안전	운동기구
		집안에서 간단한 응급처치 하기	체육		
	금전관리	용돈의 개념과 사용법 알기	사회	직업 I-5	모의 화폐 용돈기입장
		용돈 기입장 기록하기	사회		
사 회 생 활	대인관계 기술	규칙 지키기	사회	직업 I-3	
		친구에 대한 예절 지키기	사회		
		웃어른에 대한 예절 지키기	사회		
		타인과의 약속 지키기	사회		
		타인과 적절하게 의사소통하기	사회		
	이동능력	주변 동네의 명칭 알기	사회	사회Ⅱ 공동생활	모의 교통시설 모의 공공시설
		동네의 주요 기관 이름과 위치 알기	사회		
		교통안전 규칙 지키기	사회		
		교통안전 표지판의 종류와 의미 알기	사회	직업 I-6	모의 교통시설
		대중교통 수단 알기	사회		
		자주 이용하는 버스번호와 시간간격 알기	사회		
		목적지까지 대중교통 이용하기	사회		
	소비 활동	물건 구입 계획 세우기	사회	직업 I-5	모의 상점
		필요한 물건을 파는 상점의 종류 알기	사회		
		필요한 물건 구입하기	사회		

영역	내용	전환교육 요소	초·중등학교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특수학교 교육과정 기본교육과정	소요 설비·교구
여 가 생 활	체험 활동	박물관 견학하기	사회	직업 I-7 사회 II-경제문화생활	모의 이용시설
		지역 사회 문화재 견학하기	사회		
		영화관 이용하기	사회		
		놀이공원 이용하기	사회		
		볼링장 이용하기	체육		
		수영장 이용하기	체육		
		봉사 활동하기	도덕		
		흙으로 소품 만들기	미술	직업 II-2 미술 I-표현활동	작업대
		동·식물 채집활동 하기	과학	과학 I 생명영역	
	취미 활동	비디오 감상하기	국어	직업 I-7	TV
		독서하기	국어		도서
		컴퓨터 활용하기	컴퓨터	직업 II-5	컴퓨터
		음악 감상하기	음악	음악 I-감상활동	오디오
전통놀이하기		체육	체육 I-놀이 게임 및 스포츠		
곤충 기르기		과학	과학 I-동물의 이름과 생김새		
직 업 생 활	직업정보 획득	직업의 종류와 필요성 알기	기술·가정	직업 II-6	
		직업관련 광고 이해하기	기술·가정		
	작업태도	기록된 지시대로 작업 수행하기	기술·가정	직업 II-7	수행 활동지
		등하교(출퇴근)시간 지키기의 필요성 알기	기술·가정		
		일과에 대한 시간과 시각 개념 이해하기	기술·가정		
	작업도구 활용	작업용구의 이름과 쓰임을 알고 사용하기	기술·가정	직업 II-4	주방용, 위생용 도구, 재봉틀, 작업공구세트, 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
		생활용구의 이름과 쓰임을 알고 사용하기	기술·가정		
		사무용구의 이름과 쓰임을 알고 사용하기	기술·가정		
	조작기능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한 작품 만들기	기술·가정	미술 III-표현활동	작업대
		바느질하기	기술·가정	직업 II-4	바느질세트
상품 포장하기		기술·가정	직업 III-4	작업대	

중학교 특수학급의 전환교육 요소를 활동 내용에 따른 소요 설비·교구를 추출하여 정리하면 [표 3-4]와 같다. 초등학교에 비해 활동 내용이 다양하고 구체화 되어 소요되는 설비·교구의 수도 증가하였으며 특히 이동능력이나 소비활동, 체험활동 등 사회적응훈련의 내용이 많아 이용시설의 모의 체험활동이 필요하며 초등학교에 비해 직업교육의 활동 내용과 작업공간을 이용하는 내용이 증가하여 효율적인 작업공간의 구성이 필요하다.

〈표 3-4〉 중학교 특수학급의 전환교육에 필요한 설비·교구 및 활동공간

구분	활동 내용	소요 설비·교구	소요 활동공간
개인 생활	몸단장	세면대	동적활동공간
	의복관리	빨래판, 건조대, 세탁기, 다리미, 다리미대	작업공간
	식생활	조리기구세트, 개수대, 조리대, 핫플레이트, 전자렌지, 오븐렌지, 냉장고	작업공간
	주거관리	진공청소기, 청소용구, 청소용구함, 분리수거함	수납공간
	건강관리	운동기구	동적활동공간
	금전관리	모의 화폐, 용돈기입장	학습공간, 정적활동공간
사회 생활	대인관계기술		학습공간
	이동능력	모의 교통시설, 모의 공공시설	학습공간, 동적활동공간
	소비활동	모의 상점	학습공간, 동적활동공간
여가 생활	체험활동	모의 이용시설, 작업대	학습공간, 정적·동적활동공간
	취미활동	TV, 컴퓨터, 오디오, 도서, 전통놀이기구	학습공간, 정적·동적활동공간
직업 생활	직업정보획득		학습공간
	작업태도	수행활동지	학습공간, 작업공간
	직업도구활용	주방용·위생용도구, 재봉틀, 공구세트,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학습공간, 작업공간
	조작기능	작업대, 바느질세트, 포장지	작업공간

4.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전환교육 요소

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 진학, 가정관리, 지역사회 활동에의 참여, 만족스러운 대인관계 형성 등 직업적·경제적 자립과 독립적인 성인으로서의 삶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 대부분의 고등학교 특수학급 대상학생들은 정규교육에 있어서 최종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환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독립적 성인으로서 삶에 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기본적인 위생관리, 의복관리 등과 같은 자기관리, 요리활동, 가전제품 다루기 등의 주거관리, 그리고 예산편성, 가계저축 등 금전관리 등의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삶에 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가능한 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각종 사회활동에 필요한 사회성 기술, 지역사회 내 시설 이용, 이동능력, 소비활동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행복한 삶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취업이나 진학을 해서 필수적으로 겪게 되는 것이 인간관계인데, 동료나 상급자와의 좋은 인간관계는 장애학생의 성공적인 적응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시간 관리, 문화생활 및 취미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활동적이고 긍정적으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자기 스스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종 목표인 직업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하여야 한다. 개인의 적성, 흥미, 능력에 맞는 직무를 찾아 이에 대해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내 및 외부 기관을 통한 직업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인 기능을 익혀야 한다. 특히, 장애학생은 각기 독특한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욕구, 흥미, 선호도를 기초로 종합적이고 개별화된 전환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체계적인 평가, 진로탐색, 직업훈련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장애학생들은 매우 제한된 분야의 직업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으나, 비장애인이 종사하는 모든 직종을 포함하는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력서 작성, 지원, 취업 면접, 모집공고 탐색 등 구조화된 취업지원을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또한, 직업에 배치되었다고 해서 모든 서비스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배치된 이후에도 적응기술, 직업 기술에 문제가 있는지, 재훈련이 요구되는지 파악하고, 지속적인 추수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3-5〉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전환교육 요소

영역	내용	전환교육 요소	초·중등학교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특수학교 교육과정 기본교육과정	소요 설비·교구
개 인 생 활	자기관리	위생관리하기	체육, 기술가정	직업 I-2	세면대
		화장품 사용하기	기술가정		
		면도하기	기술가정		
		상황에 맞는 옷차림하기	사회, 기술가정		
		장신구 착용하기	기술가정		
		의복관리하기	기술가정	체육Ⅲ- 보건과 안전	
		체중관리하기	기술가정, 체육		
		질병관리하기	기술가정, 체육		
		안전관리하기	기술가정, 체육		
성윤리 알기	기술가정, 체육	과학Ⅲ-우리몸의 성장			

22 장애인복지 연구

영역	내용	전환교육 요소	초·중등학교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특수학교 교육과정 기본교육과정	소요 설비·교구		
개 인 생 활	주거관리	음식재료준비하기	기술·가정	직업Ⅲ-1	냉장고, 개수대, 조리대, 오븐렌지, 전자렌지, 핫플레이트, 전기밥솥, 주방용품, 작업대, 청소기, 분리수거함		
		반제품 조리하기	기술·가정				
		조리하기	기술·가정				
		상황에 맞게 상차리기	기술·가정				
		식사 후 뒷정리하기	기술·가정				
		음식물 저장하기	기술·가정				
		청소용 가전제품 다루기	기술·가정				
		조리용 가전제품 다루기	기술·가정				
		냉·난방기 다루기	기술·가정			직업Ⅱ-4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대, 공구세트
		세탁용품 다루기	기술·가정				
	기타 가전제품 다루기	기술·가정					
	가정용 도구 관리하기	기술·가정					
	집안 시설·설비 관리하기	기술·가정					
	환경관리하기	기술·가정					
	금전관리	가계의 수입과 지출 계획하기	사회, 기술·가정	직업Ⅰ-5	가계부		
가계부 쓰기		기술·가정					
세금과 공과금 납부하기		수학, 사회					
사 회 생 활	사회적 기술	자기주장능력 기르기	윤리, 사회	직업Ⅰ-3			
		책임감 기르기	윤리, 사회				
		대인관계능력 기르기	윤리, 사회				
		문제해결능력 기르기	윤리, 사회				
	지역사회 시설이용	복지관 이용하기	사회	사회Ⅱ-공동생활 직업Ⅰ-5	모의 이용시설		
		금융기관 이용하기	사회				
		의료기관 이용하기	사회				
	이동능력	관공서 이용하기	사회	직업Ⅰ-3			
		지역사회 구역알기	사회				
	소비활동	목적지까지 찾아가기	사회	사회Ⅰ-경제문화생활	모의 이용시설 TV, 컴퓨터, 인터넷 환경		
		재래시장 이용하기	사회				
		대형마트 이용하기	사회				
백화점 이용하기		사회					
홈쇼핑 이용하기		사회					
인터넷쇼핑몰 이용하기	사회						

영역	내용	전환교육 요소	초·중등학교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특수학교 교육과정 기본교육과정	소요 설비·교구	
여 가 생 활	시간관리	여가활동의 필요성 알기	윤리, 사회	직업 I-7		
		여가활동 계획하기	윤리, 사회			
		여가활동 선택하기	윤리, 사회			
	문화생활	공연장 이용하기	윤리, 사회	직업 I-7		모의 이용시설
		미술관 관람하기	미술			
		문화센터 이용하기	윤리, 사회			
	취미활동	독서하기	특별활동	직업 I-7		학습도서, 독서공간, 작업대, 컴퓨터, 화분, 재배용기구, 운동기구
		컴퓨터 게임하기	특별활동			
		영화감상하기	특별활동			
		등산하기	특별활동			
		화초 기르기	특별활동			
		수공예하기	특별활동			
		운동하기	특별활동			
동호회 활동하기	특별활동					
직 업 생 활	직업탐색	직업 파악하기		직업 II-6		
		직업정보 관련기관 탐색하기				
		장애인 사업체 견학하기				
		특정 직업에 관련된 요구조건 알기				
		직업적성 파악하기				
	직업기능	일상적인 사무 보조하기		직업 III-5		다과세트, 복사기, 팩시밀리, 사무용기기
		서류관련 사무 보조하기				
	작업태도	출퇴근시간 지키기		직업 II-7		수행활동지
		지각, 결근 했을 때 취해야 할 행동알기				
		안전수칙 지키기				
		도움이 필요한 상황 알기				
		위급상황에서의 행동 알기				
		작업수행에 적절한 행동 알기				
일하는 속도 유지하기						
주어진 일에 책임감 갖기						
작업 활동의 보람 알기						

영역	내용	전환교육 요소	초·중등학교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특수학교 교육과정 기본교육과정	소요 설비·교구
직 업 생 활	교내 실습	식품조리 실습하기		직업Ⅲ-6	작업대, 컴퓨터
		원예·축산 실습하기			
		전산·정보 실습하기			
		포장·운반 실습하기			
		전기·전자 조립 실습하기			
		판매·서비스 실습하기			
		환경미화 실습하기			
현장 실습	직업훈련과정 참여하기	직업훈련과정 참여하기		직업Ⅲ-7	
		산업체 실습하기			
취업 및 진학 지원	이력서 작성하기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취업 신청하기 면접 대비하기 학과 탐방하기 학교, 학과 선택하기	이력서 작성하기		직업Ⅱ-3	컴퓨터, 인터넷 환경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취업 신청하기			
		면접 대비하기			
		학과 탐방하기			
		학교, 학과 선택하기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전환교육 요소를 활동 내용에 따른 소요 설비·교구를 추출하여 정리하면 [표 3-6]과 같다. 중학교에 비해 개인생활의 요소 수는 감소한 반면 직업생활의 요소 수는 약 3배로 증가했다. 그 이유는 직업준비와 직업훈련의 단계인 고등학교 과정에서 직업탐색부터 실습을 거쳐 취업 및 진학지원까지 예비 사회인으로서의 준비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표 3-6〉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전환교육에 필요한 설비·교구 및 활동공간

구분	활동 내용	소요 설비·교구	소요 활동공간
개인 생활	자기관리	세면대	학습공간, 동적활동공간
	주거	조리기구세트, 개수대, 조리대, 핫플레이트, 전자렌지, 오븐렌지, 전기밥솥, 주방용품, 냉장고, 청소기, 분리수거함,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대, 공구세트	작업공간, 수납공간
	금전	가계부	학습공간, 정적활동공간
사회 생활	사회적 기술		학습공간
	지역사회 시설이용	모의 이용시설	학습공간, 동적활동공간
	이동능력	모의 이용시설	학습공간, 동적활동공간
	소비활동	모의 이용시설, TV, 컴퓨터, 인터넷환경	학습공간, 동적활동공간

구분	활동 내용	소요 설비·교구	소요 활동공간
여가 생활	시간관리		학습공간
	문화생활	모의 이용시설	동적활동공간
	취미	도서, 컴퓨터, 운동기구, 작업대, 식물재배도구	학습공간, 정적·동적활동공간, 작업공간
직업 생활	직업탐색	컴퓨터, 인터넷 환경	학습공간
	직업기능	다과세트, 복사기, 팩시밀리 등 사무용기기	작업공간
	작업태도	수행 활동지	학습공간, 작업공간
	교내 실습	작업대, 컴퓨터	작업공간
	현장 실습		
	취업 및 진학 지원	컴퓨터, 인터넷 환경	학습공간

IV. 결론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 항목인 전환교육은 중학교에서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직업기능과 직업태도를 기르고 고등학교 졸업 후 성공적인 고용을 준비하는 교육의 일환이라고 사고되어 왔으나 전환교육의 시기를 초등학교 저학년 또는 고학년부턴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으로 바뀌고 있다. 이는 전환교육 투입에 있어 대상의 확대와 내용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진로발달의 단계는 진로인식, 진로탐색, 진로준비, 직업배치의 4단계로 설명된다. 즉, 진로인식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단계에서, 진로탐색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진로준비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그리고 직업배치는 고등학교 졸업이나 전공과 수료 시에 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업전환의 의미를 포함하여 생활 전반적인 면에서 이루어지는 전환교육이라고 설정하여 초등학교 과정을 포함한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의 전환교육의 요소와 그에 소요되는 설비·교구에 따른 특수학급 공간을 파악하였다.

초등학교 특수학급의 전환교육은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요소와 직업인식 단계로서 직업에 관심을 가지는 데 중점을 두고 요소를 분석한 결과 자기관리, 금전, 요리, 청소 등 다양한 활동과 그에 따른 활동공간을 추출할 수 있었으며 중학교 특수학급은 기능적 생활중심 교육과 직업 탐색의 단계로서 기초적인 작업 기술과 작업 태도를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에 비해 활동내용이 다양하고 구체화 된 내용으로 설비·교구의 수도 증가하였으며 특히 이동능력이나 소비활동, 체험활동 등 사회적응훈련의 내용이 많아 이용시설의 모의 체험활동이 필요하였고 초등학교에 비해 직업교육의 활동 내용과 작업공간을 이용하는 내용이 증가하여 효율적인 작업공간의 구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전환교육 요소는 중학교에 비해 개인생활의 요소 수는 감소한 반면 직업생활의 요소 수는 약 3배로 증가했다. 그 이유는 직업준비와 직업훈련의 단계인 고등학교 과정에서 직업탐색부터 실습을 거쳐 취업 및 진학지원까지 예비 사회인으로서의 준비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은 학교 급별 특수학급의 전환교육 영역별(개인생활, 사회생활, 여가생활, 직업생활) 내용에 대응하는 활동공간과 설비·교구를 중심으로 분석·종합한 것이다. 전환교육의 내용 중에 학교 급별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내용은 함께 표기하였으며 다른 내용이면 분리하여 표기하였고 되도록 모든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표 3-7〉 학교 급별 전환교육 요소와 공간 및 설비·교구의 분석 종합

영역	내용	학습공간	작업공간			동적활동공간		정적활동공간	수납공간	설비·교구			
			요리	세탁	작업	공간활용	운동기구			컴퓨터, 인터넷	세면대	사무용기기	식물재배
개인생활	옷차림, 몸단장	●				▲■●			▲		▲■●		
	의류와침구, 의복			■					▲				
	정리 정돈하기								▲				
	주거관리	▲●	●	●	●				■●				
	가족 알기	▲											
	금전 관리	▲■●						▲■●					
	식생활		■										
건강관리							■						
사회생활	바르게 말하기	▲■											
	바르게 인사하기	▲■											
	사회적 기술	●											
	이웃 알기	▲											
	지역사회 시설이용	●				●							
	계절에 따른 생활	▲											
	공공질서 지키기	▲				▲							
	이동능력	■●				■●							
소비활동	■●				■●				●				

영역	내용	학습공간	작업공간			동적활동공간		정적활동공간	수납공간	설비·교구			
			요리	세탁	작업	공간활용	운동기구			컴퓨터, 인터넷	세면대	사무용기기	식물재배
여가생활	동물과식물 기르기												▲
	태권도, 인라인스케이트, 우리문화 알기	▲				▲							
	다양한 여가생활	▲											
	요리하기		▲										
	컴퓨터 사용									▲			
	체험(문화)활동	■			■	■●							
	취미활동	■●			●	■	●	■●		■			●
시간 관리	●												
직업생활	직업 알기	▲■●								●			
	직업 기능											●	
	작업 태도	■●			■●								
	작업도구활용	■	■		■							■	
	조작기능				▲■								
	교내 실습				●					●			
	취업 및 진학 지원	●								●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학습공간은 거의 모든 전환교육 활동에 필요하였으며 작업공간 중 ‘요리’공간은 초등학교의 경우는 여가생활에,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개인생활에 포함되는 차이를 알 수 있으며 컴퓨터는 초등학교에서는 ‘컴퓨터 사용’의 내용에 쓰이는 반면 고등학교에서는 ‘소비활동과 직업알기’, ‘교내 실습’, ‘취업 및 진학지원’ 등 다양한 내용에 쓰이고 있다.

사회생활의 경우 사회적응을 위한 외부활동이 대부분이어서 특수학급 교사들은 학습공간과 동적활동공간에서 충분한 모의훈련을 한 다음에 외부활동을 나가고 있는데 전체 학교급에서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각 영역의 패턴을 살펴보면 초등학교보다는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활용공간과 설비·교구가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8]은 전환교육의 영역별, 학교 급별로 나타난 공간과 설비·교구를 정리한 것이다.

〈표 3-8〉 전환교육 영역별, 학교 급별 공간 및 설비·교구

영역	학교급	공간 및 설비·교구
개인생활	초등학교	학습+동적+정적+수납+세면대
	중·고등학교	학습+작업+동적+정적+수납+세면대
사회생활	초·중학교	학습+동적
	고등학교	학습+동적+컴퓨터
여가생활	초등학교	학습+작업+동적+컴퓨터+식물재배
	중학교	학습+작업+동적+정적+컴퓨터
	고등학교	학습+작업+동적+정적+식물재배
직업생활	초등학교	학습+작업
	중학교	학습+작업+사무용기기
	고등학교	학습+작업+컴퓨터+사무용기기

본 연구 결과에 따른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성공적인 전환교육을 위해서는

첫째, 초등학교부터 개별화 전환교육계획(Individualized Transition Planning; ITP)에 의한 전환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 급별로 전환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셋째,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현실성 있는 설비·교구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적합한 설비·교구로 구성된 합리적인 특수학급 공간이 구성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강병근(2007). 학생을 고려한 통합학교 계획 방향, 한국교육시설학회, 2007.
- 강병호 · 이유훈 · 김형일(2003). 특수교육기관의 직업교육 운영 내실화 방안, 국립특수교육원.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2008). 정기국회보고자료.
- 김형일 외 15인(2006). 전환교육의 실제 I, 충청남도 교육청.
- 도금숙(2001). 정신지체 특수학교 전공과 및 전환교육의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대구대 특수교육대학원, 특수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류현주 · 유애란 · 강계남(2005), 초등학교 장애학생의 전환교육에 대한 교사인식과 교수실태, 나사렛 論叢 제10호.
- 박희찬(1999). 전환교육의 이론과 적용방안, 제44회 전국특수교육 연수자료, 한국정신지체아교육학회.
- 송은주(2004). 중등 특수학급의 전환교육 운영실태 분석, 대구대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석사학위 논문.
- 정인숙 외 4인(2007). 특수교육기관 진로·직업교육 실태 및 요구조사, 국립특수교육원.
- 정희섭 외 4인(2006). 특수학급 운영 편람, 국립특수교육원.
- 최세민 외 2인(2005). 특수학급 경영론, 박학사.

【Abstract】

A Study of Factors for Transition Education in School's levels and Spaces of Special Education

Kim, Jin chul*

Recently, special education is getting important in the middle of its changing from separate special education into integrated special education.

In addition, the students at special education is not only likely to have narrow job choice but also need more time to prepare for their future because they have some disabilities. This is why the need of transition education(academic and career counseling) is getting emphasized to help students choose their job using their own advantages. Thus this study make an effort to find out basic materials which can compose layouts of special education class, analyzing facilities and teaching equipments for transition education which is demanded for transition education. The following is the results.

Elementary transition education needs various activities such as self management, counting, cooking, cleaning, computer operating, job searching as a basic stage of everyday life's factors and job recognition. And it is required to install systematic facilities and teaching tools and space layout considering the practical order such as learning space > dynamic activity space > working panel, computer set > cooking, sporting goods, static activity space, storage space, washstand > laundry, planting, floor heating, washroom.

In middle school, the special class needs social adaptation training such as mobility, consumer activities and experience activities as a stage of functional life centered education and job searching. And it also needs to install facilities, teaching tools and space because requiring the composing of effective working space.

In high school, the special transition education needs to prepare for the process to be a pre-social individuals from job searching and to support students to enter their advanced school through their practical practicing. It is also required to install the systematic facilities, teaching tools and spaces, considering the order such as learning space > working space > computer set > static activity' space > laundry.

☼ Key Words : transition education, school level, special class, spatial layout, composition, students at special education

* Sanbon Technical High School(architect, Doctor of Engineering)

장애인복지 연구 제1권 제2호
Disability & Social Welfare
Vol. 1, No. 2

취업애로계층 가구주의 노동속성변화에 관한 연구

- 장애인과 비장애인 가구주 비교 -

A study for the Labour property change of underclass' households
: comparison between the disabled and the non-disabled

김 선 희*, 이 정 자**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하여 취업애로계층으로 실질적으로 가구를 대표하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구주의 노동속성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 '취업애로계층 가구주의 장애여부에 따라 근로형태, 근로능력, 근로형태별 불완전취업자의 직종, 실업자의 구직 중 어려운 점, 비경제활동상태의 경우 비경제활동 사유, 그리고 균등화 소득에 따른 분포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취업애로계층 가구주의 근로형태는 공식적인 실업률은 안정적이지만, 연도별 패널이 진행됨에 따라 취업의사가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질병 또는 부상이나 노령으로 인한 심신 무능력으로 비경제활동인구에 머무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둘째, 장애인 가구주 중 취업자의 경우 비장애인 가구주에 비해 임시직 또는 일용직으로 불완전취업 상태에 있고, 직업 분포는 단순노무직, 기능원 및 기능 관련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전문직 종사자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셋째, 공식적인 실업상태에 있는 장애인 가구주의 경우 구직과정에서 건강을 주요한 걸림돌로 느끼고, 패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이, 기술이나 경력부족의 비율이 점점 높게 차지하였다. 비장애인 가구주의 경우는 나이, 기술부족이나 저임금, 열악한 근무환경, 경력부족을 주요 요인으로 들고 있다. 넷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가구주 모두에서 비경제활동 사유로 '근로무능력'은 점차 낮아진 반면 '근로의사가 없거나 구직활동을 아예 포기'하는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다섯째, 균등화 소득에 따른 취업애로계층 가구주의 소득변화는 장애인 가구주가 비장애인 가구주에 비해 저소득층에 포함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제출일 : 7월 29일 최종심사일 : 9월 24일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

** 서울특별시립 서대문농아인복지관 사무국장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종단연구 중 짧은 기간 동안의 동태를 살펴봄으로써, 취업애로계층의 장애인 및 비장애인 가구주의 노동속성의 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알 수 있었고, 향후 취업애로계층의 고용지원정책 마련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원된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 취업애로계층, 가구주, 노동속성

I. 서론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또는 working poor) 및 차상위층의 가구형태, 소득수준, 취업상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규모와 실태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해 정책지원에 기여함과 동시에 정책의 지원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취업애로계층은 공식 실업자·실업률이 실제 고용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 여론에 따라 정부가 고용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포함해 만든 지표이다. 취업애로계층에는 공식실업자, 현재 취업은 되어 있으나 주 36시간미만 단시간 근로자로 추가적인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불완전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010년 5월 통계청 보고에 따르면 공식실업자가 79만 3000명, 불완전취업자 45만 3000명, 비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의사 또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57만 명에 이른다. 2008년 각각 76만 9000명, 43만명, 31만 1000명에 비해 보면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취업의사가 있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인구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겨레신문, 2010. 6. 2). 비경제활동인구에 숨겨져 있는 잠재실업자* 수는 2003년 62만9000명에서 2008년에는 89만8000명, 2009년 1~8월에는 101만9000명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잠재실업자 중에서도 취업준비자가 가장 가파르게 늘어났으나, 금융위기(2008년 1~3월, 2009년 1~3월)를 겪으면서 재취업 의사는 있지만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대신 취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한국노동연구원, 2010; 한겨레신문, 2010. 6. 11).

전반적으로 장애인은 노동시장 진입이 어렵고, 진입한다 할지라도 불완전 고용상태에 머물러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서도 2008년 만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1.1%로 2005년의 38.2%에 비해 3.0% 증가한 수준이나, 전체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은 37.65%에 불과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만 15세 이상의 장애인 중 실업자는 약 7만여명(실업률 8.32%)으로 전체 실업률 3.3%(2008년 6월)에 비해 약 3배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장애인들이 노동권 영역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보고했다(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한다 할지

* 잠재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가 있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사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라도 일반인에 비해 노동환경이 열악한 2차 노동시장에 주로 취업하고 있다. 또한 종사상 지위는 자영업 종사자나 일용직 노동자 비율이 월등히 높다(이선우, 1997). 근로중인 장애인라도 직업 분포가 단순노무직이나 기능직에 종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일 가능성이 더 많다. 취업 장애인의 월평균소득은 1,15만6천원으로 2005년 114만9천원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나,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1,819천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2008년 기준 3,370천원)의 54% 수준이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지출도 1,555천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지출(2008년 기준 2,290천원)의 67.9% 수준으로써 2005년의 66.1%보다 1.8% 증가하였다. 장애인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비율은 19.1%로 전체 인구대비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 3.2%인 것에 비교해도 6배가량이나 높다(변용찬 외, 2009). 생활수준이 극빈층을 내려갈수록 장애인가구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와 빈곤이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오혜경, 2005).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는 심신장애인은 근로능력이 없다할지라도 근로 의사가 있어 취업을 시도하지만 고용시장 진입이 어렵고, 적절한 직종이 없는 취업애로계층에 속한다. 장애인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일반 경쟁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 고용확대 전략은 고용할당제, 장애인차별금지, 고용평등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고용할당제는 유럽의 대륙국가들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영미권 국가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다. 고용평등 프로그램은 최근 EU를 중심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전략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와 같이 노동수요에 비해 노동공급이 많은 상황에서 장애인고용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취업애로계층 장애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고용시장 진입과 일자리 이동의 욕구가 있더라도 경제적인 요인등과 노동시장 제도나 복지제도와 같은 제도적인 요인들로 인하여 미취업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고용율은 양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질적으로는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 어떤 유형의 장애인에게도 맞는 적합 직종 개발하고 장애유형별,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 장애인일자리 전문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강화를 위한 집중지원사업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초석을 다지는 단계에 있다.

경제적으로 빈곤과 실업의 문제로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 모두를 취약계층으로 일괄적으로 규정하여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에는 재정적 부담과 지원 부문에서 생계보호정책에 치중하게 될 우려가 있다. 특히, 올해는 장애인들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장애연금이 시행되어, 열악한 삶속에서 장애인들이 기초장애연금에 거는 기대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취업애로계층 중 실질적으로 가구를 대표하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구주의 개인적 속성과 노동속성 및 결과적인 면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취약계층의 소득보장을 위한 전략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일을 통한 자아실현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취업애로계층 중 실질적으로 가구를 대표하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구주의 장애여부에 따라서 노동속성의 변화에 대하여 분석한다. 한국복지패널 구성원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차, 2차, 3차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수준

에서 수집된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했다.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종단연구 중 짧은 기간 동안의 동태를 살펴봄으로써, 취업애로계층의 장애인 및 비장애인 가구주의 고용지원정책 마련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원된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질문으로는 취업애로계층 가구주의 노동속성변화를 장애인 가구주와 비장애인 가구주를 비교하여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첫째, 취업애로계층 중 장애인가구주와 비장애인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았다. 둘째, 취업애로계층 가구주의 근로형태와 근로능력 정도와 근로무능력의 사유를 살펴보았다. 셋째, 현재 취업은 되어 있으나 임시직 또는 일용직에 근로자, 자활 및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불안전 취업자, 공식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는 취업애로계층의 노동속성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근로형태별로 장애인 가구주와 비장애인 가구주 중 불안전 취업자(일용직, 임시직, 자활 및 공공근로 참여자)의 종사상 직종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구직을 희망하나 공식적인 실업상태 장애인 가구주와 비장애인 가구주의 경우 구직과정 중 어려움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장애인 가구주와 비장애인 가구주의 비경제활동 사유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넷째, 균등화소득 기준으로 장애인 가구주와 비장애인 가구주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1. 취업애로계층 가구주의 노동속성

취약계층은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공공의 관심과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복지정책적 관점에서 규정되는 집단이다. 따라서 정책의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정의되는 집단이며 그 대상범위가 가변적인 집단이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취약계층을 정의하는 기족연구들은 대상범위 선정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첫째, 소득을 고려한 빈곤계층, 둘째, 일자리속성상의 특징으로 정의하여 비정규직, 영세업체 종사자 등, 셋째, 인적속성으로 정의하여 여성, 여성가구주, 고령층, 청소년, 장애인, 인종소수자, 이민자 등의 인구사회적 집단을 취약계층으로 나누었다(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7).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위기속에서 빈곤계층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일자리 속성상 불안전고용과 실업, 비경제활동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우며, 인구사회적 특성상 장애여부로 공공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애로계층 가구주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취업애로계층은 공식 실업자·실업률이 실제 고용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 여론에 따라 정부가 고용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포함해 만든 지표이다. 취업애로계층에는 공식 실업자, 현재 취업은 되어 있으나 주 36시간미만 단시간 근로자로 추가적인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불완전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취약부문은 저임금·저숙련 취업과 실업 및 비경제활동 사이를 반복적으로 이동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취업해 있는 취약계층은 단기 취업률과 일자리 이동이 높고, 고용불안정성성이 두드러지나 일자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이들은 장기실업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취업을 하더라도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등 한계일자리에 집중되어 이직을 통해서도 이러한 일자리를 탈출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현실에 직면해 있다. 결국 취약계층은 저임금의 일자리를 머물거나 일자리 이동을 한다 할지라도 낮은 지위에 종사하여 근로빈곤의 늪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취약계층에 중 장애인의 경우처럼 한 사회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집단은 사회의 편견이나 차별이 심하기 때문에 임금고용보다는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으며(이선우, 1997), 근로조건이 좋지 않은 일용직과 같은 2차 노동시장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 장애인의 취업여부는 인적자본요인에서 직업훈련과 과거 직업경험, 결혼여부, 중복장애와 함께 가구주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황수경, 이상호, 2003). 장애와 빈곤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노동시장 진입경로 상 문제점으로 정보부족, 성별 및 적성을 고려하지 않는 취업알선 서비스, 아는 사람을 통해서만 직업을 갖게 된다는 점을 호소하였으며, 노동시장 진입시 장벽으로는 교육기회의 배제로 인한 사회적 조건의 미구비, 물리적·환경적으로 낮은 접근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자격박탈 때문에 취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곽지영, 신은경, 2006). 비경제활동 사유로는 장기간의 질병이나 장애, 근로욕구가 없거나 아예 구직활동 포기, 노동시장 접근성이 불가능하고(Catherine Barham, 2003), 근로 무능력, 돌봐야 할 가족구성원이 있거나, 학생인 경우(Catherine Barham, 2003; Debra Leaker, 2009), 그리고 개인적 특성으로는 연령(Debra Leaker, 2009; Elizabeth Whiting, 2005; Allan Smith et al., 2002), 저학력(Debra Leaker, 2009; 한국복지패널, 2008) 등을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소득빈곤층, 실업의 문제로 곤란을 겪는 사람들,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가 가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 모두를 취약계층으로 일괄적으로 규정하여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지원한다 할지라도 생계보호정책 부문에 치중하게 될 우려가 있다. 특히, 2010년 7월 1일부터 열악한 삶속에서 있는 장애인들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장애연금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들이 기초장애연금에 거는 기대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들의 경우 일반인과 비교해 일하고 싶은 의지가 낮지 않지만 현실에서의 많은 제약으로 인해 근로를 통한 소득활동이 어려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 중요한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취업애로계층 가구주의 개인적 속성과 노동속성 및 결과적인 면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취약계층의 소득보장을 위한 전략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일을 통한 자아실현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으로 가구를 대표하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구주들이 실질적으로 불완전 취업상태에서 근로형태 변화와 실업자 중 구직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비경제활동상태의 경우 비경제활동사유와 근본적인 속성을 장애인 가구주와 비장애인 가구주를 비교해서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Ⅲ. 분석방법

1. 원표본 설명

한국복지패널은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또는 working poor) 및 차상위층의 가구형태, 소득수준, 취업상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규모와 실태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해 정책지원에 기여함과 동시에 정책의 지원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실시할 목적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6년부터 조사하였다. 표본은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90%자료로부터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가구 30,000가구를 2단계 층화집락추출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이들 가구 중 소득계층별 저소득층가구와 일반가구 각 3,500가구씩 층화집락계통추출을 통해 총 7,000가구를 패널가구로 선정하였다. 층화이중추출(Stratified double sampling)의 형태로 조사완료 가구수 기준으로 7,072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한국복지패널 사용자지침서에 따라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 조사에서는 먼저, 2차년도에 조사되었던 원표본가구와 원표본가구원 및 2차년도 탈락가구 중 일부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였고, 1차년도 원표본 가구와 2차년도에 조사대상자가 아닌 가구원으로 새롭게 진입한 원가구원을 제외한 원표본 가구원의 유지율은 <표 1>와 같다. 3차년도에 새롭게 진입한 표본가구는 원표본가구에서 분가하여 새로운 가구를 형성한 경우로서 126가구이며, 가구원은 537명으로 파악되었다. 원표본 가구와 원표본 가구원을 합한 3차년도 표본가구 및 가구원은 1차년도 대비 3차년도 조사완료 가구 및 가구원 비율을 살펴보면, 가구는 89.28% 완료 비율을 나타내며, 가구원은 90.02%이다.

<표 1> 패널가구 및 가구원의 원표본 유지율

(단위: 가구, 명)

조사년도	전체표본 현황			
	가구		가구원	
	표본수	유지율	표본수	유지율
1차년도(2006년)	7,072	-	14,463	-
2차년도(2007년)	6,511	92.06%	13,083	90.46%
3차년도(2008년)	6,128	86.65%	12,191	84.29%
원표본	6,188	87.50%	12,393	85.69%
신규	126	1.78%	537	4.33%
합계	6,314	89.28	12,930	90.02%

* 자료 : 2008년 한국복지패널 사용자 지침서.

2. 변수의 정의와 측정

1) 주요변인

(1) 취업애로계층

취업애로계층은 공식 실업자·실업률이 실제 고용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 여론에 따라 정부가 고용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포함해 만든 지표이다. 취업애로계층에는 공식실업자, 현재 취업은 되어 있으나 주 36시간미만 단시간 근로자로 추가적인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불완전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 가구주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가구주의 개념은 호주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가구를 대표하고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3) 노동속성

취업애로계층 가구주의 장애여부에 따라 근로형태와 근로형태별 현재 취업 중인 불완전취업자의 경우 직종, 실업자의 경우 구직과정 중 어려운 점, 비경제활동 상태의 경우 비경제활동 사유, 소득수준 변화를 알아봄으로써 실질적인 개인적 속성과 노동 관련 속성을 반영한다.

가. 근로형태

현재 구직중인 공식실업자, 현재 취업은 되어 있으나 단시간 근로자로 추가적인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불완전 취업자)으로 일용직, 임시직, 자활 및 공공근로 참여자, 그리고 취업의사·능력이 있는 비경제활동 상태로 분류하였다.

① 근로능력 정도

근로형태별 장애인 가구주와 비장애인 가구주의 근로능력 정도는 근로가능, 단순근로 가능, 단순근로 미약, 근로 무능력이라는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다.

② 근로무능력사유

근로형태별 장애인 가구주와 비장애인 가구주의 중증장애, 질병 또는 부상, 노령으로 인한 심신 무능력, 기타(학업,가사,연로 등)의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나. 근로형태별 노동속성

① 불완전 취업자(임시직, 일용직, 자활 및 공공근로자)의 직종

불완전취업자는 현재 취업은 되어 있으나 주 36시간미만 단시간 근로자로 추가적인 취업을 희

망하는 사람(불완전 취업자)으로 일용직, 임시직, 자활 및 공공근로 참여자를 포함하였다. 직업분류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제 5차 개정의 대분류 체계에 따라 고위직 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 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임·어업 종사자, 기능원 및 기능관련 종사자, 장치·기계·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군인으로 분류했다.

② 실업상태 가구주의 구직과정 중 어려운 점

현재 실업상태에 있는 취업애로계층 가구주들이 구직과정 중 경험하는 어려움 정도를 나이, 성차별, 외모, 저학력, 기술부족, 경력부족, 건강, 높은 기대, 신용불량자, 가사일, 양육, 간병, 열악한 근로환경, 저임금, 불안정고용이라는 하위영역으로 살펴보았으며 어려움의 정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저 그렇다=3점’, ‘대체로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응답자의 점수가 높을수록 구직 중 어려움을 높게 경험하는 것이다.

③ 비경제활동의 사유

비경제활동사유가 겹치는 경우에 주된 사유를 기입하였으며, 비경제활동 사유의 하위영역은 근로무능력, 구직활동 포기, 근로의사 없음, 가정일 부담(양육, 가사, 간병), 그리고 기타(통학, 연로, 군복무 등)로 구성하였다.

다. 균등화 소득

한복지패널 데이터 사용지침서를 바탕으로 균등화 소득은 가구별 균등화된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미만이면 저소득층 가구로, 그렇지 않으면 일반가구로 분류하고 있다. 균등화 소득에 대한 분석은 가구 단위가 아니고 가구원 단위로 패널 개인의 개념으로 분석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WIN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목적에 따라 취업애로계층 가구주의 노동속성변화를 장애인 가구주와 비장애인 가구주를 비교하여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분석을 통해 주요 변수들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취업애로계층 중 장애인 가구주와 비장애인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 근로형태와 근로능력 정도와 근로무능력의 사유, 근로형태별로 장애인 가구주와 비장애인 가구주 중 불완전 취업자(일용직, 임시직, 자활 및 공공근로 참여자)의 종사상 직종, 실업상태의 경우 구직과정 중 어려움의 정도, 비경제활동 상태의 경우 비경제활동 사유, 그리고 균등화소득의 변화를 교차분석을 통해 심층적으로 비교분석 하였다.

IV. 분석결과

1. 분석대상자의 특성

1) 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한국복지패널에서 1차, 2차, 3차의 데이터를 가구와 가구원 모두를 결합하여 사용하였다. 분석대상은 가구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연도별 가구주의 비율을 <표 2>에서 살펴보면, 1차년도 초기자료에서 장애인 가구주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각각 78.4%, 22.6%이고, 2차 3차 패널의 진행과정에서 남성비율은 각각 74.7%, 72.9%, 여성비율은 25.3%, 27.1%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장애인 가구주의 성별구성은 남성비율이 각각 56.8%, 56.7%이고, 여성비율은 43.2%, 43.3%를 차지하였다. 장애인의 경우 남성가구주가 여성가구주에 비해 두드러지게 많았다. 반면, 비장애인 가구주의 경우 여성가구주의 비율은 남성가구주의 비율과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1차, 2차, 3차 패널이 진행에 따라서 장애인 가구주와 비장애인 가구주 두 집단 모두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분석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

		1차년도(2006년)		2차년도(2007년)		3차년도(2008년)	
		장애인 가구주	비장애인 가구주	장애인 가구주	비장애인 가구주	장애인 가구주	비장애인 가구주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성별	남자	407(78.4)	1,969(61.3)	384(74.7)	1,441(56.8)	385(72.9)	1,392(56.7)
	여자	112(21.6)	1,245(38.7)	130(25.3)	1,096(43.2)	143(27.1)	1,064(43.3)
	합계	519(100)	3,214(100)	514(100)	2,537(100)	528(100)	2,456(100)
연령	30세 이하	2(0.4)	126(3.9)	2(0.4)	76(3.0)	1(0.2)	60(2.4)
	30세~54세	164(31.6)	1,157(36.0)	151(29.4)	736(29.0)	138(26.1)	669(27.2)
	55세~64세	140(27.0)	594(18.5)	118(23.0)	449(17.7)	123(23.3)	398(16.2)
	65세 이상	213(41.0)	1,337(41.6)	243(47.3)	1,276(50.3)	266(50.4)	1,329(54.1)
	합계	519(100)	3,214(100)	514(100)	2,537(100)	528(100)	2,456(100)
교육수준	무학	80(15.4)	520(16.2)	95(18.5)	525(20.7)	98(18.6)	510(20.8)
	초졸	181(34.9)	830(25.8)	185(30.6)	701(27.6)	197(37.3)	684(27.6)
	중졸	89(17.1)	446(13.9)	78(15.2)	343(14.3)	80(15.2)	352(14.3)
	고졸	123(23.7)	960(29.9)	117(22.8)	627(24.7)	111(21.0)	593(24.1)
	전문대 이상	46(8.9)	458(14.3)	39(7.6)	341(13.4)	42(8.0)	317(12.9)
	합계	519(100)	3,214(100)	514(100)	2,537(100)	528(100)	2,456(100)

	1차년도(2006년)		2차년도(2007년)		3차년도(2008년)		
	장애인 가구주	비장애인 가구주	장애인 가구주	비장애인 가구주	장애인 가구주	비장애인 가구주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거주지역	서울	90(17.3)	686(21.3)	72(14.0)	515(20.3)	76(14.4)	473(19.3)
	수도권	106(20.4)	728(22.7)	103(20.0)	551(21.7)	99(18.8)	498(20.3)
	부산, 경남, 울산	76(14.6)	539(16.8)	72(14.0)	425(16.8)	71(13.4)	417(17.0)
	대구, 경북	65(12.5)	391(12.2)	71(13.8)	326(12.8)	74(14.0)	349(14.2)
	대전, 충남	40(7.7)	203(6.3)	46(8.9)	171(6.7)	47(8.9)	177(7.2)
	강원, 충북	22(4.2)	194(6.0)	28(5.4)	160(6.3)	32(6.1)	154(6.3)
	광주, 전남, 전북	120(23.1)	473(14.7)	122(23.7)	389(15.3)	129(24.4)	388(15.8)
	합계	519(100)	3,214(100)	514(100)	2,537(100)	528(100)	2,456(100)

장애인 가구주와 비장애인 가구주의 교육수준을 비교하면, 1차년도 장애인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무학이 15.4%, 초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자는 34.9%나 되었다. 중학교 졸업은 17.1%, 고등학교 졸업자 23.7%를 차지하였다. 전문대 이상의 고등교육은 8.9% 정도였다. 비장애인 가구주의 경우에도 16.2%가 무학 상태였고, 초등학교 졸업자는 25.8%나 되었다. 중학교 졸업자는 13.9%, 고등학교 졸업자는 29.9%이었고, 전문대 이상 졸업자는 14.3%인 것으로 나타났다.

1차년도 원표본을 기준으로 2차, 3차년도 패널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도에 따라 인구학적 특성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분석대상자의 지역별 분포는 1차년도 기초자료를 대비 2차, 3차 패널과정을 거치면서 가구원과 가구의 탈락률은 서울지역이 가장 높고, 지역적으로 가장 낮은 탈락률은 보이는 지역은 충남·대전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전라도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일반적 특성

연도별 취업여로계층 가구주의 비율을 <표 3>에서 살펴보면, 1차년도에 불완전취업자는 38.4%, 비경제활동인구가 53.9%, 실업자가 7.6%를 차지하였다. 2차, 3차 패널과정에서 불완전취업자는 각각 28.9%, 29.6%로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경제활동인구는 각각 63.7%, 64.7%로 기초자료에 대비해 10%이상 증가하였다.

가구주의 장애여부를 살펴보면, 1차년도 장애인 가구주는 13.9%였으나 2차, 3차년도 패널과정에서 16.8%, 17.7%로, 실질적으로 가구를 대표하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구주의 장애 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3〉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1차년도(2006년)		2차년도(2007년)		3차년도(2008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취업애로 계층*	불완전취업자†	1,435	38.4	882	28.9	882	29.6
	실업자‡	285	7.6	225	7.4	170	5.7
	비경제활동인구§	2,013	53.9	1,944	63.7	1,932	64.7
	합계	3,733	100	3,051	100	2,984	100
가구주	장애인 가구주	519	13.9	514	16.8	528	17.7
	비장애인 가구주	3,214	86.1	2,537	83.2	2,456	82.3
	합계	3,733	100	3,051	100	2,984	100

2. 취업애로계층의 노동속성 변화에 대한 분석

1) 근로형태의 변화

한국복지패널의 연도별 근로형태 변화는 <표 4>와 같다. 근로형태는 장애인 가구주와 비장애인 가구주를 대상으로 현재 구직중인 공식실업자, 현재 취업은 되어 있으나 주 36시간미만 단시간 근로자로 추가적인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불완전 취업자)으로 일용직, 임시직, 자활 및 공공근로 참여자를 포함하였고,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을 취업애로계층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1차년도 장애인가구주와 비장애인 가구주의 근로형태는 장애인 가구주는 비경제활동인구가 401명으로 77.3%를 차지하였고, 불완전취업자는 85명으로 16.4%, 실업자는 33명으로 6.4%를 보이고 있다. 비장애인 가구주의 경우도 비경제활동 인구가 1,612명으로 50.2%이고, 불완전취업자가 1,350명으로 42.0%를 차지하였으며, 실업자는 252명으로 7.8%를 보이고 있다. 초기자료의 비율에서는 비경제활동 인구, 불완전취업자, 실업자순으로 나타났으나, 2차, 3차의 패널이 진행과정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의 전체적인 비율변화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취업애로계층 : 공식 실업자 및 실업률이 실제 고용사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아래 정부가 고용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포괄해 만든 지표이다.

† 불완전취업자 : 현재 취업은 되어 있으나 주 36시간미만 단시간 근로자로 추가적인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불완전 취업자)으로 일용직, 임시직, 자활 및 공공근로 참여자를 포함한다.

‡ 실업자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4주 동안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을 하지 못하였으며 구직활동을 할 경우를 포함한다.

§ 비경제활동인구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경우, 주된 활동 상태에 따라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기타로 구분된다.

〈표 4〉 연도별 취업애로계층 장애인·비장애인 가구주의 근로형태 변화

(단위: 명, %)

	근로형태		장애인 가구주		비장애인 가구주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차년도 (2006년)	불완전 취업자	임시직	44	8.5	757	23.6
		일용직	39	7.5	555	17.3
		자활 및 공공근로	2	0.4	38	1.2
	실업자		33	6.4	252	7.8
	비경제활동인구		401	77.3	1,612	50.2
	합계		519	100	3,214	100
2차년도 (2007년)	불완전취 업자	임시직	19	3.7	298	11.7
		일용직	42	8.2	476	18.8
		자활 및 공공근로	5	1.0	42	1.7
	실업자		35	6.8	190	7.5
	비경제활동인구		413	80.4	1,531	60.3
	합계		514	100	2,537	100
3차년도 (2008년)	불완전취 업자	임시직	23	4.4	281	11.4
		일용직	53	10.0	481	19.6
		자활 및 공공근로	4	0.8	40	1.6
	실업자		27	5.1	143	5.8
	비경제활동인구		421	79.7	1,511	61.5
	합계		528	100	2,456	100

2) 근로능력

(1) 근로능력 정도

연도별 근로능력의 변화는 <표 5>와 같다. 취업애로계층 장애인 가구주와 비장애인 가구주의 근로능력 정도는 근로가능, 단순근로 가능, 단순근로 미약, 근로 무능력이라는 하위영역으로 살펴 보았다.

장애인 가구주와 비장애인 가구주의 근로능력정도를 비교해 본 결과, 1차년도에 장애인 가구주 519명 중 단순근로 미약자는 196명으로 37.8%를 차지하였고, 근로 무능력자가 137명으로 26.4%, 근로 가능자가 113명으로 21.8%, 단순근로 가능자는 73명으로 14.1%를 보이고 있다. 반면, 비장애인 가구주의 경우, 3,214명 중 근로 가능자가 1,948명(60.6%)으로 높게 차지하였다. 단순근로 미약자는 803명으로 25%, 단순근로 가능자는 320명으로 10%, 근로 무능력자는 143명으로 7.5% 순으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초기자료의 비율에서 장애인 가구주는 단순근로 미약자, 근로무능력자, 근로가능자, 단순근로 가능자 순으로 나타났고, 비장애인 가구주의 경우 근로가능자, 단순근로 미약자, 단순근로 가능자, 근로무능력자 순으로 나타났으나, 2차, 3차의 패널의 진행과정에 따라 장애인가구주 중 근로가능자는 증가하였고, 비장애인 가구주의 경우 근로무능력자가 미약하게나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연도별 취업애로계층 장애인·비장애인 가구주의 근로능력 정도

(단위: 명, %)

	근로능력정도	장애인 가구주		비장애인 가구주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차년도 (2006년)	근로가능	113	21.8	1,948	60.6
	단순근로 가능	73	14.1	320	10.0
	단순근로 미약	196	37.8	803	25.0
	근로 무능력	137	26.4	143	7.5
	합계	519	100	3,214	100
2차년도 (2007년)	근로가능	141	27.4	1,428	56.4
	단순근로가능	89	17.3	414	16.3
	단순근로미약	137	26.7	486	19.2
	근로무능력	147	28.6	205	8.1
	합계	514	100	2,533	100
3차년도 (2008년)	근로가능	164	31.1	1,432	58.3
	단순근로가능	86	16.3	413	16.8
	단순근로미약	174	33.0	525	21.4
	근로무능력	104	19.7	86	3.5
	합계	528	100	2,456	100

(2) 근로무능력 사유

취업애로계층 장애인 가구주와 비장애인 가구주의 근로 무능력 사유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표 6>와 같다. 1차년도에서 장애인 가구주 519명 중 근로능력정도에 따른 분류 중 근로무능력자에 포함되는 134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근로무능력 사유로는 중증장애 요인이 86(64.2%)을 차지하였다. 질병 또는 부상은 38명(28.4%)이고, 노령으로 인한 심신 무능력은 10명(7.5%)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비장애인 가구주 3,214명 중 분석대상자 136명의 근로무능력 사유로는 질병 또는 부상이 67명(49.3%), 노령으로 인한 심신 무능력이 63명(46.3%)로 높게 나타났다. 1차년도 패널자료에서 장애인 가구주는 중증장애로 인한 근로무능력 사유가 높았고, 비장애인 가구주의 경우 질병 또는 부상과 노령으로 인한 심신 무능력 사유가 높게 나타났다. 2차년도와 3차의 패널 진행과정에서도 장애인 가구주와 비장애인 가구주 두 집단 모두에서 중증장애로 인한 근로무능력 사유는 감소하는 반면, 질병 또는 부상이나 노령으로 인한 심신무능력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연도별 취업애로계층 장애인·비장애인 가구주의 근로무능력 사유

(단위: 명, %)

	근로무능력 사유	장애인 가구주		비장애인 가구주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차년도 (2006년)	중증장애	86	64.2	6	4.4
	질병 또는 부상	38	28.4	67	48.9
	노령으로 인한 심신 무능력	10	7.5	63	46.0
	기타(학업,가사,연로 등)	-	-	1	0.7
	합계	134	100	137	100
2차년도 (2007년)	중증장애	75	53.5	7	3.5
	질병 또는 부상	50	35.5	91	45.7
	노령으로 인한 심신 무능력	16	11.3	99	49.7
	기타(학업,가사,연로 등)	-	-	2	1.0
	합계	141	100	199	100
3차 (2008년)	중증장애	55	52.9	-	-
	질병 또는 부상	32	30.8	35	40.7
	노령으로 인한 심신 무능력	16	15.4	51	59.3
	기타(학업,가사,연로 등)	1	1.0	-	-
	합계	104	100	86	100

3) 근로형태별 노동속성

(1) 불완전취업 가구주의 직종

취업애로계층 장애인 가구주와 비장애인 가구주 중 불완전취업자(임시직, 일용직, 자활 및 공공근로 참여자)의 직종을 연도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표 7>와 같다. 불완전취업자는 현재 취업은 되어 있으나 주 36시간미만 단시간 근로자로 추가적인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불완전 취업자)으로 일용직, 임시직, 자활 및 공공근로 참여자를 포함하였다. 직업분류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제 5차 개정의 대분류 체계에 따라 분류했다.

1차년도에서 불완전취업상태에 있는 장애인 가구주는 84명이고, 이중 단순노무직 종사자는 58명으로 69%를 차지하였다. 기능원 및 기능관련 종사자는 12명으로 14.3%를 보이고 있다. 비장애인 가구주의 1,345명 중 단순노무직 종사자가 642명으로 47.7%이었고, 기능원 및 기능관련 종사자는 185명으로 13.8%, 서비스 종사자는 155명으로 11.5%, 장치, 기계 및 조립 종사자는 142명으로 10.6%를 차지하였다. 초기 비율에서 장애인 가구주와 비장애인 가구주 모두에서 단순노무 종사자가 높게 나타났으며, 2차, 3차의 패널의 진행과정에 따라 점점 비율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장애인 가구주의 경우 단순노무직 비율이 연도별로 47.7%, 54.3%, 53.5%에 비해 장애인 가구주는 1차, 2차, 3차 연도별로 69%, 69.7%, 71.3% 증가하는 추세이고, 그 비율도 비장애인 가구주에 비해 매우 높았다. 기능원 및 기능 관련직에서도 장애인 가구주는 1차, 2차 조사에서는 각각 14.3%, 16.7%이었고, 비장애인 가구주는 각각 13.8%, 15.1%로 나타났다. 그러나 3차 연도에서 장애인 가구주는 기능원 및 기능 관련직 종사자가 8.8%로 줄었으나, 비장애인 가구주의 경우 16.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분석대상자 중 장애인 가구주의 경우 고위직 임직원 및 관리직 종사자에 대한 응답자가 없었으며, 전문직 또는 준전문직 관련 종사자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연도별 장애인·비장애인 가구주 중 불완전취업자의 직종 비교

(단위: 명, %)

	1차년도(2006년)		2차년도(2007년)		3차년도(2008년)	
	장애인 가구주	비장애인 가구주	장애인 가구주	비장애인 가구주	장애인인 가구주	비장애인 가구주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고위직 임직원 및 관리자	-	6(0.4)	-	4(0.5)	-	1(0.1)
전문가	3(3.6)	28(2.1)	-	13(1.6)	-	14(1.7)
기술공 및 준 전문가	1(1.2)	47(3.5)	-	22(2.7)	2(2.5)	25(3.1)
사무 종사자	1(1.2)	60(4.5)	3(4.5)	27(3.3)	2(2.5)	27(3.4)

	1차년도(2006년)		2차년도(2007년)		3차년도(2008년)	
	장애인 가구주	비장애인 가구주	장애인 가구주	비장애인 가구주	장애인인 가구주	비장애인 가구주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서비스 종사자	2(2.4)	155(11.5)	2(3.0)	97(11.9)	5(6.3)	87(10.8)
판매 종사자	1(1.2)	73(5.4)	2(3.0)	25(3.1)	3(3.8)	24(3.0)
농·임·어업 종사자	-	7(0.5)	-	1(0.1)	-	8(1.0)
기능원 및 기능 종사자	12(14.3)	185(13.8)	11(16.7)	123(15.1)	7(8.8)	132(16.5)
장치, 기계, 조립종사자	6(7.1)	142(10.6)	2(3.0)	61(7.5)	4(5.0)	55(6.9)
단순노무종사자	58(69.0)	642(47.7)	46(69.7)	443(54.3)	57(71.3)	429(53.5)
합계	84(100)	1,345(100)	66(100)	816(100)	80(100)	802(100)

(2) 실업상태 가구주의 구직과정 중 어려움 정도

취업애로계층 가구주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장애인 가구주와 비장애인 가구주의 구직 중 어려움 정도를 연도별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표 8>에서 살펴보면, 1차년도 실업상태 장애인 가구주의 구직과정 중 어려움의 평균값은 건강(M=4.19, SD=1.31), 나이(M=3.34, SD=1.52), 기술부족(M=2.47, SD=1.41), 경력부족(M=2.34, SD=1.43), 열악한 근무환경(M=2.06, SD=1.3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장애 가구주는 나이(M=4.02, SD=1.27), 기술부족(M=2.70, SD=1.35), 저임금(M=2.57, SD=1.37), 열악한 근무환경(M=2.55, SD=1.26), 경력부족(M=2.53, SD=1.31), 불완전고용(M=2.40, SD=1.35), 건강(M=2.39, SD=1.49), 높은 기대(M=2.09, SD=1.12) 순으로 나타났다.

초기 패널자료의 비율에서는 실업상태에 있는 장애인 가구주의 구직 중 어려운 점이 건강, 나이, 기술부족, 경력부족 순으로 나타났으며, 2차, 3차 패널의 진행과정에 따라 나이, 기술부족, 경력부족 요인의 점점 평균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이 진행됨에 따라 건강요인의 평균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장애인 가구주에게 있어 건강요인은 구직과정 중 어려운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반면, 비장애인 가구주의 경우 구직과정 중 어려운 요인이 나이, 기술부족, 저임금, 열악한 근무환경, 경력부족 및 불완전고용 순으로 나타났으며, 2차와 3차 연도별 패널진행과정에 따라서 전체적인 평균의 변화에는 차이가 적게 나타나고 있었다.

〈표 8〉 연도별 실업상태에 있는 장애인·비장애인 가구주의 구직과정 중 어려움 정도

	1차년도(2006년) ^{a)}		2차년도(2007년) ^{b)}		3차년도(2008년) ^{c)}	
	장애인 가구주	비장애인 가구주	장애인 가구주	비장애인 가구주	장애인 가구주	비장애인 가구주
	M(SD)	M(SD)	M(SD)	M(SD)	M(SD)	M(SD)
나이	3.34(1.52)	4.02(1.27)	3.63(1.21)	3.85(1.29)	3.44(1.34)	3.57(1.47)
성차별	1.50(0.57)	1.77(0.93)	1.66(0.64)	1.66(0.85)	1.46(0.56)	1.66(0.82)
외모	-	-	1.86(1.09)	1.52(0.68)	1.75(1.17)	1.53(0.72)
학력	2.00(1.08)	2.24(1.21)	2.37(1.11)	2.09(1.19)	2.04(1.10)	2.09(1.15)
기술부족	2.47(1.41)	2.70(1.35)	2.94(1.31)	2.65(1.37)	2.51(1.32)	2.37(1.23)
경력부족	2.34(1.43)	2.53(1.31)	2.74(1.25)	2.51(1.34)	2.45(1.29)	2.28(1.23)
건강	4.19(1.31)	2.39(1.49)	3.83(1.32)	2.23(1.38)	3.29(1.68)	2.12(1.38)
높은 기대	1.53(0.80)	2.08(1.12)	1.97(0.86)	2.24(1.22)	1.64(0.75)	2.10(1.22)
신용불량자	1.47(1.14)	1.55(1.06)	1.46(0.74)	1.42(1.05)	1.59(0.99)	1.40(0.98)
가사일	1.09(0.29)	1.24(0.60)	1.29(0.71)	1.32(0.83)	1.10(0.35)	1.13(0.49)
양육	1.13(0.34)	1.17(0.53)	1.20(0.58)	1.28(0.84)	1.06(0.25)	1.13(0.49)
간병	1.06(0.25)	1.24(0.68)	1.23(0.59)	1.17(0.59)	1.04(0.19)	1.10(0.47)
열악한 근로환경	2.06(1.39)	2.55(1.26)	2.43(1.19)	2.57(1.25)	2.42(1.45)	2.50(1.23)
저임금	1.69(1.20)	2.59(1.37)	2.43(1.17)	2.66(1.38)	2.19(1.23)	2.46(1.31)
불안전고용	1.72(1.22)	2.40(1.35)	2.09(1.12)	2.33(1.35)	2.10(1.19)	2.47(1.29)

a) 1차년도 : 장애인가구주=32명, 비장애인가구주=251명

b) 2차년도 : 장애인가구주=35명, 비장애인가구주=186명

c) 3차년도 : 장애인가구주=27명, 비장애인가구주=143명

(3) 비경제활동 가구주의 비경제활동 사유

취업애로계층 가구주 중 비경제활동 사유는 <표 9>에 정리하였다. 장애인 가구주와 비장애인 가구주의 비경제활동사유가 겹치는 경우에 주된 사유를 기입하였으며, 비경제활동 사유의 하위영역은 근로무능력, 구직활동 포기, 근로의사 없음, 가정일부담(양육, 가사, 간병), 그리고 기타(통학, 연로, 군복무 등)로 살펴보았다.

장애인 가구주와 비장애 가구주의 비경제활동 사유를 살펴본 결과, 1차년도에서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는 장애인 가구주는 401명이고, 비경제활동의 이유로는 근로무능력이 258명(64.3%), 근로의사가 없음으로 응답한 사람은 71명(17.7%), 가정일부담(가사, 양육, 간병)이 36명(9.0%), 구직활동을 포기는 24명(6%)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장애인 가구주의 경우도 근로무능력과 근로 의사 없음이 각각 663명(41.1%), 462명(28.7%), 가정일부담(가사, 양육, 간병)이 243명(15.1%), 구직활동 포기는 160명(9.9%)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패널자료에서 장애인 가구주의 비경제활동 사유의 비율을 살펴보면, 근로무능력이 64.3%, 근로의사 없음이 17.7%로 높게 나타났으며, 2차년도 패널이 진행됨에 따라 근로무능력 요인은 48.8%로 낮아지고, 근로의사 없음과 구직활동 포기요인이 각각 27.6%, 14.8%로 비경제활동 사유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일부담(가사, 양육, 간병)은 6.5%로 낮아졌다. 3차년도 패널에서는 장애인 가구주의 근로무능력으로 인한 비경제활동 사유가 25.5%로 1차년도의 절반 수준에 미치는 반면, 근로의사 없음은 54%로 1차년도 17.7%에 비해 눈에 띄게 높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활동 포기 또한 초기패널에서의 비율이 2차, 3차 패널이 진행됨에 따라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장애인 가구주의 경우도 초기패널에서 근로무능력이 41.1%로 비경제활동의 주요 사유가 되었으나 2차, 3차 패널이 진행됨에 따라 비경제활동 사유로 근로무능력은 각각 20.9%, 6.5%로 낮아지고, 근로의사 없음은 1차년도 28.7%에서 2차, 3차년도에는 46.9%, 64.3%로 2배가량 증가했다. 구직활동 포기도 초기자료에서는 9.9%였으나 2차, 3차년도에서 각각 15.2%, 14.6%로 비율이 증가하였다. 가정일부담(가사, 양육, 간병)은 초기자료에서 15.1%였으나 2차, 3차년도 패널이 진행됨에 따라 13.6%, 12.7%로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연도별 취업애로계층 장애인·비장애인 가구주의 비경제활동 사유

(단위: 명, %)

	비경제활동 사유	장애인 가구주		비장애인 가구주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차년도 (2006년)	근로무능력	258	64.3	663	41.1
	구직활동포기	24	6.0	160	9.9
	근로의사 없음	71	17.7	462	28.7
	가정일부담(가사, 양육, 간병)	36	9.0	243	15.1
	기타	12	3.0	84	5.2
	합계	401	100	1,612	100

	비경제활동 사유	장애인 가구주		비장애인 가구주	
		빈도	비율	빈도	비율
2차년도 (2007년)	근로무능력	200	48.4	320	20.9
	구직활동포기	61	14.8	232	15.2
	근로의사 없음	114	27.6	718	46.9
	가정일부담(가사, 양육, 간병)	27	6.5	208	13.6
	기타	11	2.7	52	3.4
	합계	413	100	1,530	100
3차년도 (2008년)	근로무능력	106	25.5	97	6.5
	구직활동포기	51	12.3	218	14.6
	근로의사 없음	224	54.0	960	64.3
	가정일부담(가사, 양육, 간병)	25	6.0	189	12.7
	기타	9	2.2	29	1.9
	합계	415	100	1,493	100

4) 균등화 소득의 변화

한국복지패널의 연도별 균등화 소득의 변화는 <표 10>와 같다. 한국복지패널 데이터 사용지침서를 바탕으로 균등화 소득은 가구별 균등화된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미만이면 저소득층 가구로, 그렇지 않으면 일반가구로 분류하고 있다. 균등화 소득에 대한 분석은 가구 단위가 아니고 가구원 단위로 분석하며, 저소득층에 포함된 패널 개인의 개념으로 분석하였다.

전체 패널의 결과를 살펴보면, 1차년도에서 저소득층에 포함된 장애인 가구주는 75.7%를 차지하였고, 2차, 3차년도 패널이 진행됨에 따라서 각각 74.7%, 71.4%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저소득층에 포함된 비장애인 가구주의 경우도 초기패널에서 59.9%였으며, 2차, 3차년도 패널에서는 각각 63.7%, 61.4%를 차지하였다.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장애인의 빈곤과 불평등상태에 대한 연구에서 일반인에 비해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빈곤상태에 처해 있는 경우가 높으며, 빈곤 지속율은 장애인과 일반인의 비교시 장애인이 2배로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태완, 2010). 본 연구에서도 장애인 가구주의 경우 저소득층에 포함된 비율이 비장애인 가구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장애와 빈곤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표 10〉 연도별 취업애로계층 장애인·비장애인 가구주의 균등화 소득의 변화

(단위: 명, %)

		장애인 가구주			소계	비장애인 가구주
		등록장애인		비등록 장애인		
		중증장애 ^{a)}	경증장애 ^{b)}			
		빈도(비율)	빈도(비율)	빈도(비율)		
1차년도 (2006년)	일반가구	29(21.5)	73(23.8)	24(31.2)	126(24.3)	1,289(40.1)
	저소득층가구	106(78.5)	234(76.2)	53(68.8)	393(75.7)	1,925(59.9)
	합계	135(100)	307(100)	77(100)	519(100)	3,214(100)
2차년도 (2007년)	일반가구	26(21.8)	83(26.2)	21(26.9)	130(25.3)	921(36.3)
	저소득층가구	93(78.2)	234(73.8)	57(73.1)	384(74.7)	1,616(63.7)
	합계	119(100)	317(100)	78(100)	514(100)	2,537(100)
3차년도 (2008년)	일반가구	29(24.0)	98(30.0)	24(30.0)	151(28.6)	948(38.6)
	저소득층가구	92(76.0)	229(70.0)	56(70.0)	377(71.4)	1,508(61.4)
	합계	121(100)	327(100)	80(100)	528(100)	2,456(100)

a) 중증장애 : 장애등급 1~2급, b) 경증장애 : 장애등급 3~6급인 경우를 의미함.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속성 즉, 취업애로계층 가구주의 근로형태와 근로형태별 속성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1차년도 원표본을 기준으로 2차, 3차년도 패널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도에 따라 인구학적 특성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분석대상자의 지역별 분포는 1차년도 기초자료를 대비 2차, 3차 패널과정을 거치면서 가구원과 가구의 탈락률은 서울지역이 가장 높고, 지역적으로 가장 낮은 탈락률은 보이는 지역은 충남·대전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전라도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애로계층 가구주의 장애여부에 따른 노동속성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근로형태와 근로형태별 속성을 고려하여 정책적 지원의 전략수립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이다.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패널이 진행됨에 따라 취업애로계층 가구주의 근로형태의 변화는 비경제활동인구의 전체적인 비율변화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식적인 실업률은 안정적인 반면, 취업의사가 있거나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심신장애인이 포함된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노동시장의 동태적인 변화를 반영한다.

둘째, 초기자료의 비율에서 장애인 가구주의 근로능력 정도는 단순근로 미약자, 근로무능력자, 근로가능자, 단순근로 가능자 순으로 나타났고, 비장애인 가구주의 경우 근로가능자, 단순근로 미약자, 단순근로 가능자, 근로무능력자 순으로 나타났다. 2차, 3차의 패널의 진행과정에 따라 장애인 가구주 중 근로가능자는 증가하였고, 비장애인 가구주의 경우 근로무능력자가 미약하게나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은 65세 이상의 노인층이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패널이 진행됨에 따라 근로무능력 사유로 장애인 가구주와 비장애인 가구주 두 집단 모두에서 질병 또는 부상이나 노령으로 인한 심신무능력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였다.

셋째, 임시직, 일용직, 또는 자활이나 공공근로 참여자를 포함하는 불안전취업자중 장애인 가구주의 경우 비장애인 가구주에 비해 단순노무직, 기능원 및 기능 관련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위직 임직원이나 관리직, 전문직에 종사하는 장애인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장애인들은 화이트칼라의 직업보다 낮은 수준의 직업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나타낸다. 취업애로 계층에 있는 비장애인 가구주의 경우도 단순노무직, 기능원 및 기능 관련직, 서비스직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공식적인 실업상태에 있는 장애인 가구주의 경우 구직과정에서 건강을 주요 걸림돌로 느꼈으며, 패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나이, 기술이나 경력부족이 점점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반면, 비장애인 가구주의 경우 나이, 기술부족, 저임금, 열악한 근무환경이 구직과정에서 어려운 점으로 나타났다. 고용시장 진입시 경험하고 있는 애로사항의 동태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고용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근거가 된다.

다섯째, 장애인 가구주와 비장애인 가구주 두 집단 모두에서 초기자료에서 2차, 3차년도 패널에 진행됨에 따라 ‘근로무능력’보다는 ‘근로의사 없거나 구직활동을 아예 포기’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2010년 6월 한국노동연구원이 펴낸 ‘경제위기와 고용’ 연구보고서에서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와 비경제활동인구 속에 숨겨져 있는 잠재실업자 중 재취업 의사가 있으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대신 취업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보고와 다르지 않다.

여섯째, 균등화 소득에 따른 취업애로계층 가구주의 소득변화를 살펴본 결과, 장애인 가구주가 비장애인 가구주에 비해 저소득층에 포함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통한 정책적 함의로는 첫째,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종단연구 중 짧은 기간 동안의 동태를 살펴봄으로써, 취업애로계층의 장애인 및 비장애인 가구주의 노동속성의 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알 수 있었다. 그 동안 급변하는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와 환경의 동태적 흐름을 분석하기 어려워 장애인의 욕구와 노동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안고 있었는데,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는 동일한 개인이나 가구를 표본으로 하여 일정기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시간의 경과나 정부의 정책변화 등과 같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동태적인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둘째, 빈곤과 저소득의 문제가 고용불안정과 실업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한국적 상황에서 비장애인 가구주에 비해 장애인 가구주가 보다 고용불안정이 심각하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불완전고용, 실업, 비경제활동 상태가 길어짐에 따라 근로동기 저하와 구직활동 포기가 빈곤으로 이어져 중국에는 사회적 비용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취업애로계층 가구주의 정책적 지원에의 측면에서의 불완전 취업상태에 있는 가구주의 일자리 이동과 고용을 지원하는 정책은 개인적 속성과 노동속성을 고려하고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생계지원 및 복지정책과 연계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취업애로계층 가구주들은 장기실업 상태와 빈곤이라는 이중고에 처해 있어서 취업의 장애요인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여기에 장애라는 요인까지 더해져서 노동시장 참여는 더욱 어렵다. 취약계층 가구주들이 구직 중 경험하는 장애요인을 인적 속성과 노동속성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한 전략을 수립하여 취약계층에 대해 전체적으로 노동시장의 참여를 높인다는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취업애로계층은 불완전고용과 단지 취업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만이 아니라 근로의사가 있어도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비경제활동 사유로써 근로능력보다는 근로의사가 없거나 근로를 아예 포기하는 비율이 증가한다는 점에 주시하여, 향후 노동을 통한 소득보장과 자아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장애여부와 빈곤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는 점에서 빈곤층의 증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일을 통한 복지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의 연구과제로는 실질적으로 가구를 대표하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구주의 노동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노동공급요인과 노동수요요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중단연구를 통해 주요 요인들간의 상호작용을 고찰하여, 실질적으로 고용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수립의 근거자료를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곽지영 · 신은경(2006). 국민기초수급대상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 실태 및 영향요인 분석. 장애인 고용 16(2). 5~26.
- 김종민 · 손창균 · 신재동(2009). 저소득층 장애인의 빈곤 원인분석에 관한 통계적 함의. 제2회 한국 복지패널학술대회 논문집. 442~459.
- 김태원(2010). 우리나라 장애인의 빈곤과 불평등실태. 보건복지포럼. 20~29.
- 변용찬 · 김성희 · 윤상용 · 강민희 · 최미영 · 손창균 · 오혜경(2009).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 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정책보고서 2009-16.
- 오혜경(2005). 한국 여성장애인 실태와 사회적 대응. 장애인고용 겨울호;여성장애인 취업활성화 방안. 4(20).
- 이선우(1997). 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회. vol 33. 287~313.
- 이성규 · 김혜경 · 전해연(2005). 취업애로중증장애인 집중지원사업의 성별영향평가. 장애인직업안정 연구원.
- 장강직(2008). 저소득 취업애로계층 실태조사. 한국노동연구원.
- 조한진(2010). 장애인 고용정책과 그 대안. 한국장애인개발원:2010 장애인정책포럼.
- 황수경 · 이상호(2003).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와 취업확률. 제4회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
- 통계청. 2010년도 경제활동인구 동향.
- 한국노동연구원(2010). 경제위기와 고용.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 사용자지침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2009). 2005,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 한겨레신문. 2010. 6. 2. “공식-실질 실업률 격차 해마다 커져”.
- 한겨레신문. 2010. 6. 11. “취업애로계층 다소 줄었지만 금융위기 이전보다 많아”.
- Allan Smith, Breda Twoney(2002). Labor market experienc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Labour Marker Trends*, vol 110(8). 415~427.
- Catherine Barham(2002). Economic Inactivity and the Labour Market. *Labour Marker Trends February*, 69-77.
- Catherine Barham(2003). Life Stage of Economic Inactivity. *Labour Marker Trends October*, 495-502.
- Debra Leaker(2009). Economic Inactivity. *Economic and Labour Market Review*. vol 3 (2). 42-46.
- Elizabeth Whiting(2005). The labour market participation of older people. *Labour Marker Trends July*, 285-2005.

【Abstract】

A study for the Labour property change of underclass' households
: comparison between the disabled and the non-disabled

Kim. Sunny*, Lee Jeong Jar**

The study is aimed to analyze changes of labour properties from the head of the household who belongs to a class of the unemployed but is responsible for living expense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the works, implemented by KWPS (Korea Welfare Panel Study) in 2006, 2007, and 2008.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 (1)The official unemployment rates of underclass' households continue to be stable; as KWPS continued, however, the rates of unemployment are gradually increased because their willingness to work has been decreased, they intended to transfer to another job, or they suffered from mental and physical incapability from injuries and aging. (2)The most participants are employed as lower non-manual, unskilled manual workers and technical services, but only a few are manual workers. But The official unemployed rates of the economically inactive are gradually increased, which is categorized as they have a desire to be employed, working arrangements or disabilities by aging and an injuries. (3)In case of the disabled households who are under official unemployed conditions, they point health problems out as the important barrier on the process of job search. As the KWPS proceeded, they felt increasing problems in aging and lack of functions, skills, and experiences. (4) The reasons of the economically inactive are unwillingness to work and giving up to be employed, rather incapability to work. (5)Regarding the equal income, the possibility belonging to the low-income bracket tends to be included in a group of the disabled rather a group of non-disabled. The findings of this quantitative study which implemented in a longitudinal study revealed the basic trends in changes of labour properties from the underclass, disabled, and non-disabled households, and as a result, it can provide a practical base in the future, which contributes to set up an employment supporting policy as well as to improve the effects of supporting policy.

☼ Key Words : underclass' households, labour property

* The Graduate of Ewha Women University

** Secretary General, Municipal Seodaemum Welfare Center For the Mutism

장애인복지 연구 제1권 제2호
Disability & Social Welfare
Vol. 1, No. 2

장애인의 임금수준결정요인연구

A study Factors on Determinants of Wage an Employee With Disabilities

김재영*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고용된 장애인의 임금수준 차이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장애인의 임금수준결정요인을 규명해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전국 장애인작업장에서 200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로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총 1,000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로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른 통계적인 관련성을 검증할 수 있었으며($p < .000$, $F = 3.535$), 둘째로 장애인의 연령대에 따른 임금합계의 통계적 차이를 검증할 수 있었고, ($p < .000$, $F = 11.265$), 셋째로 장애유형에 따른 차이가 검증되었으며($p < .000$, $F = 21.942$), 마지막으로 장애등급에 따른 차이($p < .000$, $F = 4.568$)를 검증하여 총 4개의 변인 지역, 연령, 장애유형, 장애등급을 장애인의 임금에 영향을 주는 영향요인으로 찾아낼 수 있었다.

☉ 주제어 : 장애인, 임금수준결정요인, 경험적 연구

논문제출일 : 8월 9일 최종심사일 : 9월 24일

* 구리시장장애인근로복지센터 원장, 한성대학교 행정학박사과정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매우 낮은 취업률과 낮은 임금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장애로 인한 임금 차별을 받고 있고, 비장애인에 비해 노동환경이 열악한 노동시장에 취업하고 있다(권유경, 1998; 유동철, 2000; 이정호, 2002).

노동부(2008)에서 발표한 제3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계획에 의하면, 장애인구 및 경제활동 현황을 살펴본 결과, '05년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은 2,148,686명(출현률 4.59%)으로 추정되어 '00년 1,449,496명(출현률 3.09%)에 비해 699,199명 증가(48.2%)하였고, '06년 등록장애인은 1,967,326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4.1% 수준이었으며, 장애인의 고용률(15~64세)은 43.8%로 전체국민에 비해 19.9%로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직업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취업장애인의 직업은 전체 근로자 대비 단순노무직의 비율이 높은(27.4%) 반면, 전문직, 사무직의 비중이 낮았고, 취업장애인의 월평균 임금은 157만원('05년, 장애인근로자실태조사)으로 전체 근로자 임금인 240만원(2005년 매월 노동통계조사)의 65.6% 수준에 그친걸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장애인에 대한 취업기회의 제공은 장애인 개인의 존엄을 높이고 장애인의 사회에 대한 창조적인 기여를 도울 뿐 아니라 장애인 가족의 기능을 회복시켜 가족구성원의 생활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용된 장애인의 근로능력에 적합한 임금수준은 장애인의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 수단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다.

장애인 고용정책은 장애인의 삶의 안정과 사회 참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장애인 고용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회적 과제이다.

장애인복지의 목표가 정상화와 사회통합으로 외형을 확대하고 있는 지금,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취업이지만, 노동시장의 틀 내에서 장애인의 취업이나 고용에 관한 심층적 분석이 풍부하게 제공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취업은 경제적 측면에서만 아니라 비장애인과 사회·심리적 격차를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정상화와 사회통합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서구 복지국가에서도 1960년대 이후 장애인복지정책은 소득보장 중심에서 직업재활 및 고용지원을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선회하였다(황수경, 2003).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다른 구성원과 동등하게 노동시장에서의 취업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장애인정책의 출발점이자 궁극적 목표이기도 하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있어서 고용은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확보 이상의 의미, 즉 생존권과 노동권의 확보, 그리고 사회적 차별의 제거라는 의미까지 갖는 것이다.

또한, 고용된 장애인의 근로능력에 적합한 임금수준은 장애인의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 수단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렇다면 고용된 장애인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 선행연구 가운데 권유경(1998)은 장애인의 고용과 임금수준에 미치는 요인을 개인적 특성 관점(장애요인, 인적자본요인)과 구조적 특성 관점(노동시장요인)으로 분류하였으며, 유동철(2000)은 노동시장의 장애인 차별영향 분석에서 인적자본요인, 인구사회학적요인, 노동시장요인으로 나누었고, 이정호(2002)는 근로복지 장애인의 월 임금수준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경쟁적요인 관점(장애요인, 인적자본요인)과 경쟁외적요인 관점(노동시장요인)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의 경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의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 장애인의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중 28.4%를 실업자로 보고 있다.

직업을 갖는 것은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 생산물을 만들어 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통한 삶의 만족도와 삶의 질의 고양에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다. 특히 장애인에게 직업의 의미는 인권의 보장과 적극적인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뜻한다(백은령, 2003). 그러나 우리나라 장애인의 고용상황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2000년에 비해 2005년의 장애인 수는 무려 48.2%가 증가하여 214만 8천 8명(빈부격차시정위원회, 2006)에 이르고 있지만 장애인의 실업률은 매우 높아져* 장애인의 빈곤현상은 가속화 되고 있다. 게다가 중증장애인*의 고용기반은 극도로 취약한데 OECD(2003)에 따르면 1990년대 후반 한국의 중증장애인 실업률은 84.0%로 OECD 평균치 실업률 28.2% 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여전히 장애인의 고용정책은 장애의 수준과 기능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즉 의무고용시행 이후에도 장애인고용정책 효과는 중증장애인에게 집중되어 이들의 고용은 늘어난 반면 직업적 욕구가 높은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크게 개선되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의 왜곡현상이 나타났다고 보고되고 있다(이효성,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간 학술적, 정책적 측면에서 관심과 연구가 부족했던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장애인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고용 및 임금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장애인 고용자 임금의 합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고용 장애인들의 다양한 특성들 중 임금합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 특성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규명해내고, 장애인의 임금수준의 증대를 위한 사회복지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내고자 한다.

* 장애인의 실업률은 23.5%로 전체실업률 3.6%와 비교할때 약6.5배가 높다(보건사회연구원, 2006).

† 장애인중 노동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호)를 말하는데, 이를 '직업적 중증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 중에서도 특히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를 중증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중증장애인의 기준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조와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가운데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뇌병변장애인은 제3급 장애까지 직업적 중증장애인으로 보고 있다.

‡ 이를 보충해 주는 자료로 보건사회연구원(2006)에서는 장애정도별 고용률이 경증과 중증이 각각 57.0%, 26.1%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고용된 장애인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과연 모든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경제적 자립과 사회통합이 가능할 것인가 특히 중증장애인 경우 비장애인이나 경증장애인과 같은 정도로 고용이 되고 적절한 임금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도출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장애인의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장애의 개념과 유형

1) 장애의 개념

장애인에 대한 개념은 매우 복잡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장애인의 개념은 국가마다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한 시대의 장애인복지가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다른 견해를 갖는다. 한마디로 장애인의 개념은 국가의 경제수준과 문화, 전통 및 그 시대의 사회적 가치관에 의해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장애인 추정 수는 변하게 되고, 복지대상의 수도 변한다. 복지 대상수의 변화는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경제수준에 직결되며, 그 복지의 정도를 수용하는 사회적 가치관과 문화, 전통과 깊은 관계를 갖는다. 즉 장애가 실정법상 어떻게 정의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장애인의 출현을 장애인의 수, 복지 서비스의 필요성, 서비스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이라 하면 신체·정신장애인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인 생각은, 장애인을 “갖추지 못한 사람”, “모자라는 사람” 등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장애를 불구(不具)라고 하여 주로 외적으로 보이는 신체적 결함이나 행동상의 이상(異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신체적 또는 지적 결함은 치료와 훈련 그리고 교육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으므로 근래에는 단순히 신체적이나 지적 결함(impairment)의 정도에 국한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이로 인하여 주어질 일을 수행할 수 없게 된 능력의 저하(disability)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능력의 저하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겪어야 하는 불편(handicap)정도 등에 장애의 기준을 두고 있다. 유엔의 장애

인권리선언(제1조)에서 “장애인이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에서도 “장애인이란 함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라고 하고 있어 장애의 의미를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주위 환경과의 관계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장애인의 정의는 매우 포괄적인듯 하지만,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하면 지체장애·뇌병변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안면장애·신장장애·심장장애·간장애·호흡기장애·장루·요루장애·간질장애·정신지체·정신장애·발달장애 등 15가지 장애유형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애로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의 정도에 따라 심한 것부터 1급에서 6급까지 등급을 정하고 있어 장애인의 범위가 매우 협소하다.

2) 장애의 유형

〈표 1〉 장애인의 분류기준 및 내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신체 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요루
	간질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정신적 장애	정신지체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발달장애(자폐증)	소아자폐등 자폐성장애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

2. 선행연구 검토

본 절에서는 장애인근로자의 임금과 관련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임금분석에 사용한 변수의 종류와 유형 그리고 분석결과에 나타난 각 변수의 유의미성을 확인해 봄으로써 본 연구의 분석방법에 참고하였다.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1) 인구사회학적요인

(1) 가구주여부

가구주인 경우와 가족구성원의 경우 고용이나 임금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구주인 경우 해당가구의 주소득원으로서 가구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가구원에 비해 취업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희망 임금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선우(1997), 강동욱(2002)의 연구에서는 장애인이 가구주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ler와 Iden(1974)은 장애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가구주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확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였다.

(2) 성 별

일반적으로 남성은 여성에 비해 취업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안정된 직장에서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이중노동시장론에서 주로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여성은 출산 및 육아, 가사노동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 참여율이 떨어지거나 노동시장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단절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노동시장참여형태는 여성을 안정적인 직장에 고용되기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임금수준도 낮추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시장을 분석한 모든 연구에서는 성별이 주요한 변수로 상정된다. 그런데 일반인에 대한 분석에서는 이상의 가정들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지만 장애인에 대해서는 결과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어수봉(1996)의 연구에서는 남성장애인이 여성장애인에 비해 고용을 제외받을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희망임금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arrett 외(1975)는 직업재활센터의 재활대상자에 대한 연구에서 여성에 비하여 남성이 성공적으로 고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Dean과 Dolan(1984)은 재활성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은 성별, 결혼상태이며 이들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여성은 고용이 어렵다고 밝혔고 대개 남성이 여성보다 직업을 구하는 일이 용이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가치관은 실제로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이 실시한 근로장애인 취업실태조사에서 장애인 총 취업자 가운데 남성은 92.4%, 여성은 7.6%로 나타나 남성장애인에

비해 여성장애인의 취업이 크게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영평 1995).

Johnson과 Lambrinos(1985)의 연구는 1972년의 SSDA(Social Security Survey of Disabled and Nondisabled Adults)자료를 이용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실태를 먼저 분석하고 이후 생산성이 배제된 장애인·비장애인 간 그리고 남성장애인·여성장애인간의 차별효과를 임금분해방식을 이용해 추정하였다. 장애인차별 효과의 측정을 위해 먼저 남성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여성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함수를 추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장애인의 임금차별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노동시장에 장애인차별이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남성장애인과 비장애인 총임금격차의 33%, 여성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총임금격차의 40%가 장애인차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임금과 관련된 성차별은 장애인들 사이에도 존재하며 성차별로 인한 임금격차 정도는 남성장애인과 여성장애인 총임금격차의 1/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검토를 토대로 할 때 성별은 경제활동 형태에 있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서 다소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임금수준에는 남성일수록 임금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연 령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다는 것은 노동시장 내에서 생산기술의 습득과 숙련향상의 기간이 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령이 많을수록 직업기술 및 경험이 더 많다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기업의 수요조사에서 연령이 많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기업의 고용제외가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다(어수봉 1996; 류기철 1999). Berkowitz(1975)는 연령은 취업성과와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어수봉(1996)은 만나이를 사용하여 장애인의 고용가능성을 평가하였는데 연령이 많은 장애인일수록 고용주의 고용제의 확률이 높아진다고 분석하여 연령의 증가는 장애인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정기원외(1996)는 연령을 장애인의 취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설명하며 노동 가능한 연령인 20-54세의 연령계층에서는 비장애인과 비슷한 노동공급 행태를 보여준다고 보았다.

그러나 연령이 높을 경우 새로운 기술에의 적응용이성과 변화가능성 및 통제가능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최근의 고용현장의 직무추세가 컴퓨터나 첨단기기를 사용하는 직무가 증가하다보니 연령의 증가가 반드시 고용가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만 볼 수 없다. 따라서 고용여부를 결정할 경우 어떠한 영향을 더 고려할 지 알 수 없어 다소 모호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연령은 임금수준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연공서열형의 임금구조 하에서는 연령의 한 단위 증가가 임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어수봉(1996), 유동철(2000), 이정호(2002)의 연구에서도 연령의 증가가 임금 수준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장애 정도

장애정도가 덜할수록 임금수준에서 유리하다는 보고가 있으며(권유경, 1998), 300인 이상과 300인 미만의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복지 장애인들의 임금 결정요인을 연구한 이정호(2002)의 연구에서도 장애정도가 경증인 경우가 중증인 경우보다 월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일반인과 달리 장애인들에게 있어서는 장애가 고용이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큰데 특히 장애로 인한 노동 제한성 또한 중요한 변수이다. 고용주들은 장애가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감독과 훈련비용을 더 발생시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의 결과로 임금이 낮아지게 된다(전영환, 2008).

변용찬(2001)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구직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심한 장애로 일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바 있다.

2) 노동시장요인

(1) 근속기간

연공서열형 임금구조 하에서는 근속연수는 임금수준의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어수봉(1996), 유동철(2000)의 연구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집단 모두 근속연수가 길수록 임금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Kidd 외(2000)는 1996년 영국근로자조사(the British Labour Force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영국의 장애인남성과 비장애인 남성사이의 임금격차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근속연수는 장애인 남성근로자의 임금함수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aldwin과 Johnson(1994)의 연구에서도 근속연수는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2005)에 따르면 2001년부터 4년간 취업에 성공한 장애인 31,218명중 18%에 달하는 5,456명이 1개월 이내에 직장을 잃었으며 특히 절반이상이 6개월 이내에 직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돼 장애인의 장기근속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 고용형태

통계청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종사상지위별 월평균임금의 분포는 상용직의 경우 평균 임금은 167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임시직은 상용직의 54%, 일용직은 상용직의 41%에 해당하는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종사상지위간의 격차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의 종사상지위에 따른 임금 격차는 2001년 최저임금 421,490원을 기준으로 이를 하회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은 일용직의 경우 30%(660천명)에 이르는 반면, 임시직의 경우는 8.0%(359천명)으로 낮고, 상용직의 경우는 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대해서 유동철(2000)은 상용근로자 보다 비상용근로자가 받는 임금

수준이 여성장애인의 경우엔 떨어졌으며, 남성장애인은 오히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수봉(1996)도 비상용직과 상용직으로 구분하여 임금합수를 추정한 결과, 장애인과 일반인 모두 상용직이 비상용직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권유경(1998)은 고용형태를 상용전일제, 상용시간제, 임시직, 일용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상용전일제 노동자에 비해 임시직 노동자만 임금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유형의 노동자들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장애관련기업

장애와 관련한 기관이나 기업은 주로 장애인고용 친화적인 기업이나 장애인단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장, 근로작업 시설을 지칭한다.

이재선(2002)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84개 업체에 대해 규모가 증가할수록 근로장애인의 임금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연구한 결과 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장, 근로작업 시설로 갈수록 규모와 인력의 수준이 증가하며 생산능력 차이가 있으므로 근로장애인의 임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로작업 시설이 평균적으로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작업활동 시설과 보호작업장은 임금수준이 별 차이가 없어 작업활동 시설과 보호작업장의 역할과 기능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유경(1998)은 장애인관련기관 및 기업일수록 피고용가능성이 낮을 뿐 아니라 3.7% 정도의 낮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관련 기업이 장애인에게 낮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장애인의 경제적인 복지수준의 향상에 반하는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격리형태의 고용보다는 지원고용이나 경쟁고용의 형태를 따르는 것이 장애인의 소득수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관련 기업여부는 장애인에 대하여 수요독점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임금에 대한 장애인관련 기업여부는 부적인(-) 방향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변수로 예상된다.

(4) 직무형태

직무와 관련하여 서비스·판매직은 어수봉(1996)의 연구에서 가장 실업탈출 확률이 높은 직종임과 아울러 기업의 고용제외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직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에 대한 연구에서 관리직과 사무직의 경우, 생산직에 비해 11% 높고, 서비스·판매직의 계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직무간의 임금의 차이는 수요독점이론에 의하여 독점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생산직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심한 서비스·판매직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이선우 외(2001)는 장애인의 직무가 임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전문직이나 사무직이 다른 모든 직종에 비해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전문직이나 사무직과 관련한 직종의 개발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idd 외(2000)의 연구에서 직무변수는 남성의 경우 전문직과 기능공이 사무직이나 판매직보다 높은 임금을, 서비스직과 육체노동자는 사무직이나 판매직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직장규모

일반적으로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독점이윤의 실현으로 인해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영세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도 이윤크기의 실현이 다를 것으로 추정되므로 직장규모를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요인으로 살펴보았다. 이정호(2002)는 근로현장에 복귀한 장애인의 월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2000년 장애인근로자실태조사」를 원자료로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사업체 규모에 따른 노동시장의 분절이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보았다.

유동철(2000)은 장애인과 일반인의 임금격차분해에 대한 연구에서 특성분포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격차의 가장 큰 요인은 노동시장요인 가운데 기업규모변수임을 밝혔으며, 이는 장애인과 일반인이 처해 있는 노동시장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Baldwin(1994)은 임금수준에 대해 기업규모변수가 유의미한 정적인(+)효과를 나타낸다고 보았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업규모의 영향은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어수봉(1996)의 장애인의 임금함수분석에서 기업규모는 300인 이상의 기업에서 정적인(+)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정원오(1997)의 연구에서는 훈련수료자들의 소득크기에 대해서는 직장규모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직장규모가 증가할수록 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확대에 따라 장애인의무고용사업장 범위는 현행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였다. 그렇지만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장범위는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200인 이상 사업체는 2004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체는 2006년, 50인 이상 사업체는 2007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많은 연구자들은 장애인고용에 관한 인식에 관해 양적조사를 하였다(Ehrhart, 1994, Levy et al., 1992, Nietupuski et., 1996, Shafer et., 1987). 한편, Pitt-Catsoupes와 Butterworth(1995)는 24개의 사례를 중심으로 장애근로자의 감독자, 동료근로자, 직업재활전문가의 세 집단에 초점을 두어 질적인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는 장애인고용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는 연구는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에서 동시에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는 노동부와 보건복지가족부를 들 수 있다. 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해 고용장려금, 고용보조금, 융자 및 지원, 취업알선 등의 업무가 있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내에 고용개발원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운영하고 있다(노동부, 2002).

지체장애인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먼저 인구사회학적요인을 살펴보면 강위영(1994)은 나이, 성별과 같은 인구사회학적요인이 고용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였고, 임정기

(2005)의 연구에도 연령과 교육수준이 장애인의 취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홀랜드(Holland, 1985)는 장애인 근로자가 가지는 개인적 특성 요인들이 실업에 영향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케츠와 메이어(Katz and Meyer, 1990)는 기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임금을 많이 받길 원할수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실업탈피가 어렵다고 분석하였다. 전이상(2002)은 장애인 취업결정요인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고용에 긍정적인 요인이며 교육정도, 거주지역에 따라 대도시, 중소도시에 거주할수록 고용에 유리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나운환·정명현(2004)의 연구에서는 남성과 30대 이상, 미혼자보다는 기혼자, 미세대주 보다는 세대주의 실업률이 높았다.

장애관련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장애정도에 관한 연구가 많은데 건강상태와 장애유형이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Crip, 1990; 이선우 1997; Roessler and Rubin, 1982; Szymanski and Parker, 1996)와 장애정도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고용이 더 어렵다는 연구(Capella, 2002; Yuen and Shaughnessy, 2001; Eaton, Condon, and Mast, 2001)가 주를 이룬다. 민경희(1994)는 사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경증장애인이 중증장애인 보다 선호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지체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고용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고용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거나 (Clayton and Chubon, 1994; Fuhrer, Rintala, Hart, Clearman, and Young, 1992), 고용유형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백은령 2005)를 통하여 보호고용과 일반고용에 따른 만족감의 수준과 영향요인을 살펴본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삶의 만족과 고용상황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혹은 현대사회에서의 직업활동은 소득의 원천이며 가장 기본적인 사회참가의 형태이기 때문에 사회적통합이라는 관점에서 고용정책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연구(강동욱, 2005)가 있었다.

장애인의 고용문제는 상당한 기간 동안 논의되어 온 과제이다. 그러나 장애인고용의 질에 대해서는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다수의 국제기구들과 국가들에서 과거 완전고용의 기치 아래 실업률 혹은 고용률을 주요 지표로서 삼던 고용에 대한 양적인 접근방법과는 다른 질적인 접근이 본격화 되고 있다(황준욱, 2005).

인적특성 요인에는 장애특성을 나타내는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포함하고 있는데, 기존 장애인 취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정도에 따라 임금 등에 차이가 있고 장애유형 역시 정신적 장애가 상대적으로 신체적 장애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전영환, 2008). 인적자본 특성으로는 성별, 자격과 기술, 연령, 교육수준, 직업훈련, 사회성을 포함했다. 이러한 8개 인적특성 요인들은 장애인 고용요인으로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 언급된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사회적, 기술적 환경, 본질적 작업 측면, 작업성과를 통한 안정/안정감, 승진기회, 급여, 직무의 본질적 측면, 감독, 직무의 사회적 측면, 의사소통, 환경, 복지 후생 등을 들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는 이외에도 다른 요인의 영향을 좀 더 심각하게 받는데, 지금까지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는 주로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직업생활상의 애로점을 직무만족의 차원에서 재해석하거나 소수를 대상으로 직무만족 실태 및 관련 요인을 파악하는 경향이 있었다.

Ⅲ.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

1) 임금

고용된 장애인들의 월임금 수준을 사용하며 6개월의 평균월급을 연속변수로 파악하였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지역, 연령대, 장애유형, 장애등급을 설정하였다.

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전국 장애인작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로 이루어졌고 수집된 자료는 총 1,000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Ⅳ. 연구의 결과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임금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자 임금의 합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고용 장애인들의 다양한 특성들 중 임금합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 특성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지역

우선 본 연구는 장애인이 등록된 또는 고용되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 지역에 따라서 장애인의 임금합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지역에 따른 장애인의 임금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의 <표 2>와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이 고용되어 있는 지역 또는 거주지역과 장애인 임금 간의 분산분석을 통해 유의확률 .000, F값 3.53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검증되었다. 즉, 장애인의 임금에 통계적 영향을 주고 있는 영향요인의 하나로 지역이 유효한 변수라는 것을 검증하고 있는 것

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장애인 고용에 대한 임금수준이 높은 지역은 제주도인 것으로 나타났고 구체적으로 9,018,258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장애인 고용에 대한 임금수준이 낮은 지역은 서울로써 4,777,832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들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서울지역이 장애인에 대해 좀 더 비개방적이고 비우호적인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으며, 장애인 고용활성화 및 임금수준 향상을 위해 서울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인식의 전환 및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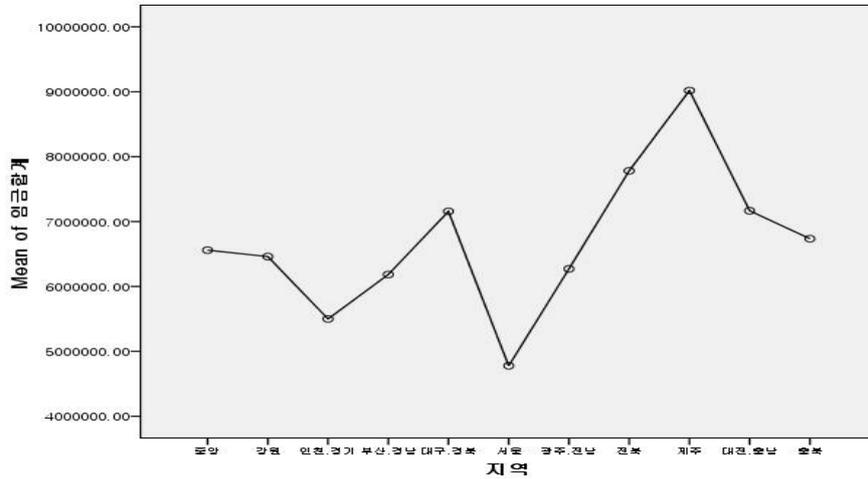
〈표 2〉 지역과 장애인 임금합계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선	상한선		
울산	201	6,559,668	5,112,025	360,574	5,848,652	7,270,683	512,000	18,715,200
강원	110	6,460,285	4,103,255	391,230	5,684,880	7,235,690	1,100,000	30,373,356
인천·경기	175	5,499,627	2,037,089	153,989	5,195,699	5,803,555	819,000	11,712,300
부산·경남	161	6,184,064	1,834,752	144,598	5,898,496	6,469,632	3,243,300	14,681,000
대구·경북	57	7,157,480	3,448,566	456,773	6,242,452	8,072,508	588,000	18,923,400
서울	69	4,777,832	2,810,038	338,288	4,102,787	5,452,877	418,000	13,678,000
광주·전남	27	6,271,130	3,463,479	666,547	4,901,023	7,641,237	1,800,000	15,000,000
전북	8	7,781,685	3,130,826	1,106,914	5,164,249	10,399,121	4,200,000	12,000,000
제주	6	9,018,258	2,173,224	887,215	6,737,598	11,298,918	6,000,000	11,894,250
대전·충남	93	7,166,030	4,564,981	473,366	6,225,883	8,106,177	920,708	22,184,520
충북	7	6,735,559	1,351,950	510,989	5,485,213	7,985,904	4,434,660	8,497,253
Total	914	6,262,706	3,673,682	121,514	6,024,226	6,501,187	418,000	30,373,356

분산분석

구 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 간	46,415,733,452,958	10	4,641,573,345,295,80	3.535	0.000
집단 내	11,857,638,296,559,600	903	13,131,382,388,216		
합계	12,321,795,631,089,200	913			

위의 연구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지역과 장애인 임금합계

2. 연령대

다음으로 본 연구는 장애인의 연령대에 따라서는 장애인 종사자들의 임금수준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그들 두 변수 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의 <표 3>과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인 장애인들의 다양한 연령대와 그들의 임금 간의 분산분석을 통해 유의확률 .000, F값 11.26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검증되었다. 즉, 장애인의 임금의 영향요인으로써 또 하나 연령을 들 수 있는 것이다. 즉, 장애인의 연령대는 임금수준에 통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인 장애인들의 다양한 연령대에 따른 그들의 임금합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40대였으며, 구체적으로는 7,348,687만원 이었고, 가장 낮은 임금합계를 나타낸 것것은 가장 높은 연령대인 70대 장애인이었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는 고용 장애인들의 임금 합계가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되고 있는 10대, 20대, 70대 연령층의 장애인들이 비교적 낮은 임금을 받고 있고, 장애인의 업무능력, 사무능력, 처리능력 등에 대해서 고용주들이 장애인 연령에 대해 이러한 능력들이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차등적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며, 어린 나이의 장애인 또는 고령의 장애인에 대해서 그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임금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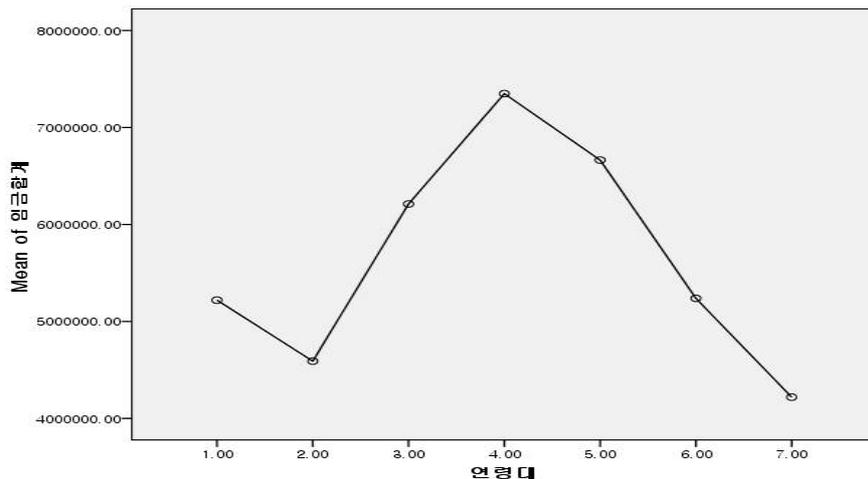
〈표 3〉 연령과 장애인 임금합계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선	상한선		
10대	3	5,219,396	2,919,184	1,685,391	-2,032,258	12,471,052	2,500,000	8,304,000
20대	115	4,590,918	3,237,597	301,907	3,992,841	5,188,994	671,000	13,504,050
30대	198	6,211,228	4,008,064	284,840	5,649,500	6,772,957	512,000	17,537,650
40대	247	7,348,687	3,944,333	250,971	6,854,359	7,843,015	819,000	22,184,520
50대	224	6,663,795	3,560,618	237,903	6,194,968	7,132,622	418,000	30,373,356
60대	105	5,238,350	1,971,176	192,367	4,856,878	5,619,821	1,054,150	12,000,000
70대	22	4,219,728	1,235,174	263,340	3,672,082	4,767,374	1,488,810	6,181,550
Total	914	6,262,706	3,673,682	121,514	6,024,226	6,501,187	418,000	30,373,356

분산분석

구 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854,537,018,818,714	6	142,422,836,469,786	11.265	0.000
집단내	11,467,258,612,270,500	907	12,643,063,519,592		
합계	12,321,795,631,089,200	913			

이와 같은 검증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령과 장애인 임금합계

3. 장애유형

다음으로 고용 장애인들의 장애유형에 따라서는 장애인들의 임금합계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통계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산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들인 장애인들의 다양한 장애유형에 따른 임금의 합계 간에는 유의확률 .000, F값 21.94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음이 검증되었다. 즉, 장애인의 임금합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써 장애등급이 유의미한 요인으로 검증된 것이다.

위의 연구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고용 장애인의 임금합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지체장애인으로 7,053,833만원이었으며, 다음으로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신장장애인, 언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발달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의 순으로 임금합계가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장애인의 유형별 임금합계에 대한 분석결과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나타내고 있는 뇌병변장애인, 발달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들에 대해 장애인 스스로의 능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해당 장애인들에 대한 고용지원시스템의 마련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있어서도 이처럼 등급에 맞추어서 장애인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표 4> 장애유형과 장애인 임금합계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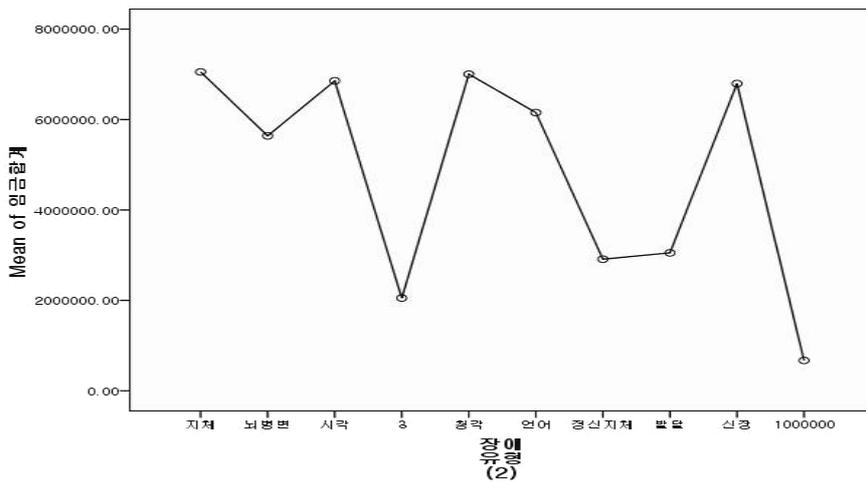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선	상한선		
지체	622	7,053,833	3,579,516	143,525	6,771,979	7,335,687	418,000	30,373,356
뇌병변	37	5,639,599	2,538,765	417,370	4,793,132	6,486,065	1,054,150	12,394,300
시각	30	6,856,063	3,859,305	704,609	5,414,975	8,297,152	2,104,600	15,679,000
청각	39	7,004,039	3,787,260	606,447	5,776,351	8,231,727	698,500	22,184,520
언어	6	6,154,791	3,932,554	1,605,458	2,027,828	10,281,754	864,500	9,747,500
정신지체	133	2,911,017	1,858,172	161,123	2,592,298	3,229,737	676,500	9,520,460
발달	20	3,051,251	1,469,503	328,591	2,363,502	3,739,000	512,000	5,118,000
신장	5	6,795,248	3,452,604	1,544,051	2,508,272	11,082,223	4,320,000	12,823,040
Total	894	6,260,411	3,661,818	122,469	6,020,049	6,500,773	418,000	30,373,356

* 결격 설문지 2매를 포함한 통계임.

분산분석

구 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 간	2,186,505,332,992,550	9	242,945,036,999,172	21.942	0.000
집단 내	9,787,652,757,027,600	884	11,072,005,381,252		
합계	11,974,158,090,020,200	893			

고용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임금합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장애유형과 장애인 임금합계

4. 장애등급

마지막으로 고용 장애인의 장애등급에 따라서는 장애인의 임금합계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결과가 통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의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고용 장애인의 장애등급에 따른 임금의 합계 간에는 유의확률 .000, F값 4.568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의 임금합계에 대한 또 하나의 영향요인으로써 장애등급이 유효한 변수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장애인의 세분화된 장애등급 중 임금의 합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등급은, 장애등급이 6등급인 경우가 7,249,913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임금의 합이 높은 순서대로 5급, 4급, 1급, 3급, 2급의 순으로 임금합계가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보았을 때 장애등급이 1급에 가까울수록 즉, 장애정도가 높은 수준일수록 임금합계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장애등급에 따른 업무수행능력의 차이, 인식의 차이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으며, 또한 이들 중증 장애인에 대한 처우개선 및 고용지원 프로그램, 복지차원에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등급별 임금합계의 차이는 고용주의 차별적인 대우나 업무량의 차이에 기인하는 등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나, 특별히 임금의 합계가 낮게 나오는 중증 장애인에 대한 기술개발 및 참여 프로그램, 자격증, 능력 개발 등의 다양한 접근 방법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표 5〉 장애등급과 장애인 임금합계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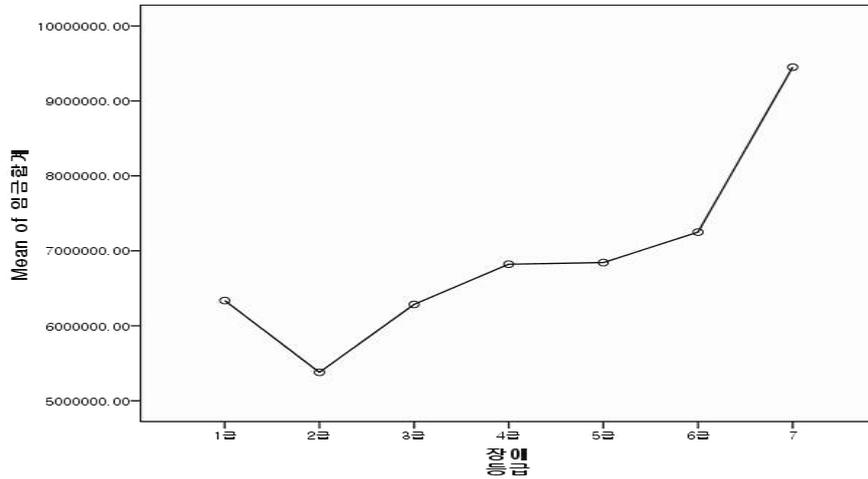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선	상한선		
1급	55	6,336,617	4,543,387	612,630	5,108,367	7,564,867	799,500	30,373,356
2급	244	5,379,192	3,575,470	228,896	4,928,318	5,830,065	512,000	18,715,200
3급	310	6,285,439	3,776,193	214,473	5,863,426	6,707,452	671,000	18,923,400
4급	103	6,821,914	2,857,036	281,512	6,263,536	7,380,292	588,000	13,678,000
5급	90	6,843,518	3,521,817	371,232	6,105,887	7,581,148	418,000	22,184,520
6급	102	7,249,913	3,625,162	358,944	6,537,863	7,961,962	1,090,400	17,537,650
Total	905	6,272,970	3,681,782	122,386	6,032,775	6,513,165	418,000	30,373,356

* 결격 설문지 1매를 포함한 통계임.

분산분석

구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 간	362,970,404,761,580	6	60,495,067,460,263	4.568	0.000
집단 내	11,891,224,357,045,600	898	13,241,897,947,712		
합계	12,254,194,761,807,200	904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장애등급과 장애인의 임금합계

5. 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어떠한 변수들이 장애인들의 임금합계에 통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것을 통해 장애인 복지 측면의 도움이 되는 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의 임금합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이것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산분석을 통해 알아 보았고, 첫째로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른 통계적인 관련성을 검증할 수 있었으며($p < .000$, $F=3.535$), 둘째로 장애인의 연령대에 따른 임금합계의 통계적 차이를 검증할 수 있었고 ($p < .000$, $F=11.265$), 셋째로 장애유형에 따른 차이가 검증되었으며($p < .000$, $F=21.942$), 마지막으로 장애등급에 따른 차이($p < .000$, $F=4.568$)를 검증하여 총 4개의 변인 지역, 연령, 장애유형, 장애등급을 장애인의 임금에 영향을 주는 영향요인으로 찾아낼 수 있었다.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장애인에 대한 고용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법적 또는 제도적인 장치로써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강제적 또는 의무적 조항이 아닌, 장애인 고용을

권고하고 권장하는 선택적 조항이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과 이들의 임금수준 및 복지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장애인 복지 측면에서의 연구가 점차 활발히 진행됨으로써, 복지국가로서의 도약을 위해서도 장애인의 고용상태 및 처우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입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인 시대적 요청이 된 것이다. 아직까지도 국내 다양한 기업체의 고용주들은 장애인에 대한 많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며 장애인 스스로의 심리적 또는 신체적 문제 역시 그들의 고용이나 임금수준, 복지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의 임금 및 고용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찾아내고, 이렇게 찾아낸 영향 변수들의 개선을 통해서 장애인의 고용환경 속에서의 처우의 개선과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의 고용과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는 장애인의 거주지역 또는 고용지역을 나타내는 지역과, 장애인의 연령대, 장애인의 장애등급, 장애인의 장애유형의 4가지 변수가 검증되었으며,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다.

우선 장애인의 임금합계에 있어서 지역적인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복지수준의 형평성의 문제로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복지시설 또는 복지환경의 인프라가 지역적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각 지역에 대한 복지환경의 조사 및 형평성에 맞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연령과 장애유형에 맞는 직업훈련과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며, 고용주들 역시도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연령에 맞는 업무의 탄력적 수정과 적절한 인력의 배치 등을 통한 인력활용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장애등급에 따라라도 중증장애인의 기술개발과 능력개발을 통한 처우의 개선과 자의식의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을 둘러싼 제도와 환경에 해당하는 장애의 사회모델이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장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크다. 따라서 지금까지 관성에 의하거나 장애운동의 산물로 발전해 온 장애정책의 현실과 방향에 대해 재점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이다. 복지시스템의 기본적 틀은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이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였다.

아울러 현재 정책집행에서 반사적 이익을 받는 장애인이라는 위치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고 실현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국가적 개입전략의 방안 및 개입방법은 어떤 순위를 가지고 구현될 것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참고문헌

- 강동욱(2002). 한국의 장애인 노동시장 구조분석, 영남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 강동욱(2005). 장애인 취업·임금차별에 관한 계량적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6(2), pp. 121-144.
- 강위영(1991). 장애인 직업재활대책에 관한 연구, 직업재활연구, 1(1).
- 권유경(1998). 한국 장애인의 피고용여부와 월임금수준 결정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나운환(2004). 직업재활개론, 나눔의 집.
- 노동부(2008). 제3차 장애인고용촉진5개년계획
- 류기철(1999). 정부의 실업대책과 실직자의 재취업, 국제경제연구 5(2), 105-126.
- 백은령(2003). 지체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환경요인과 사회통합정도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변용찬(2001). 장애인 정보격차 현황과 해소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어수봉(1996). 한국의 장애인 노동시장 분석, 노동경제논집, 19(1), 한국노동경제학회.
- 유동철(2000). 노동시장의 장애인차별 영향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선우 외(2001). 장애유형별 고용현황과 직업재활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55, pp. 39-50.
- 이선우(1997). 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vol. 33.
- 이재선(200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임금수준 결정 요인,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호(2002). 근로복지 장애인의 월임금수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효성(2000).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전이상(2003). 장애인의 고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4(4).
- 전영환(2008). 구조모형을 이용한 장애인 고용에서의 보조공학 성과분석, 대구대학교 대학원. 재활공학과 박사학위논문.
- 정기원 외(1996). 장애인의 취업실태와 고용의 경제적 효과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원오(1997). 저소득계층의 직업훈련효과 결정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2005). 장애인 고용실태, 2005 국정감사자료.

- 황수경(2003). 장애인-비장애인의 취업확률 격차와 장애효과,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연구, 3(1), pp. 141-169.
- 황준옥(2005). 노동과 고용에 대한 질적인 접근, 국제노동브리프, 3(7).
- Baldwin, M. L. & W. G. Johnson, (1994), Labor Market Discrimination against Men with Disabilities,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14(1): pp. 1-19.
- Berkowitz, M & M. A. Hill(1989), *Disability and the Labor Market*, ILR Press.
- Barrett, R.J. ; Schenker, S. Vorhees, C.V. (1975), Increased Muricide and Decreased Avoidance and Discrimination Learning in Thiamine Deficient Rats, *Life Sciences*, 16(7), pp. 1187-1199.
- Dean David H., & Dolan Robert C.(1984), *Toward an Improved Methodology*
- Johnson & Lambrinos(1985), Wage Discrimination against Handicapped Men and Women,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20(2).
- Kidd, M. P., Sloane, P. J. & Ferko, I.(2000), Wage Discrimination against and icapped Men and Women,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20(2), pp. 264-277.
- Katz, L. F. & Meyer, B. D.(1990), The impact of the potential duration of unemployment benefits on the duration of unemploymen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41(1), pp. 45-72.
- Scheffler, R. M. & Iden, G.(1974), The effect of disability on labor supply, *Industrial & Labor Relations Reviews*, 28(1).

【Abstract】

A study Factors on Determinants of Wage an Employee With Disabilities

Kim, Jae-Young*

This study, through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wage standards of employed persons with Disabilities, factors that affect their employability and wage standards are examined, and also aims to draw out the social welfare policies for improvement in their employment rate and wage standards.

The number of this study's employed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1,000 from January 1st, 2009 to June 30th 2009.

The summary of the results are as follows.

Looking at the effect of each factor on wage, the wage was predictable from area($p<.000$, $F=3.535$), age bracket($p<.000$, $F=11.265$), Disability Type($p<.000$, $F=21.942$)
= $.230$, $p<.01$), Disability class($p<.000$, $F=4.568$).

From these results, the wage was predictable from area, age bracket, Disability Type, Disability class.

☼ Key Words : employed persons with Disabilities, Factors on Determinants of Wage, The Empirical Analysis

* Guri-si Job Welfare Center director

장애인복지 연구 제1권 제2호
 Disability & Social Welfare
 Vol. 1, No. 2

장애인행정도우미 직무분석*

Job Analysis of Administrative Assistants with Disabilities

이 용 복**

【국문초록】

본 연구목적은 09년 현재 시행 3년째인 장애인행정도우미의 직무분석을 통하여 이들의 주요 업무 내용과 이들의 직무배치에 필요한 요소를 파악하여 향후 장애인행정도우미의 효과적인 직무배치를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애인행정도우미의 직무를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기초생활보장, 사회복지일반, 주민센터업무의 6개 영역으로 범주화 하였다. 그리고 각 영역을 보조업무와 민원처리업무의 소영역으로 분류하고, 소영역은 다시 각각의 세부업무로 분류하여, 행정도우미가 각 업무에 관여하는 빈도를 측정하였다. 분석대상은 872케이스이다. 분석결과 6개 영역에서 수행빈도가 가장 높은 업무는 장애인복지(177.2)이며, 다음은 노인복지(79.6), 아동복지(68.1), 주민센터(58.0)의 순이다. 소영역에서는 장애인복지의 민원업무(91.4)이며 그 다음이 장애인복지 업무보조(85.9), 사회복지일반 업무보조(41.1), 노인복지 업무보조(40.9)순이다. 세부업무 중 업무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장애인복지-업무보조-복사(19.4)이며, 다음으로 장애인복지-업무보조-문서정리(15.3), 장애인복지-민원업무-장애인복지 안내(12.8)의 순이다. 장애인행정도우미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 성별, 장애정도, 직무 수행 능력, 장애인행정도우미 시작년도이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행정도우미의 체계적인 교육 훈련 지원, 장애인행정도우미직무배치 기준안 마련, 임금과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개선, 장애인일자리 지원을 위한 잡코치 시스템의 마련 등의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 장애인행정도우미, 장애인행정도우미 직무, 직무분석

논문제출일 : 9월 22일 최종심사일 : 10월 1일

* 본 논문은 2009년도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과제인 “장애인행정도우미 직무분석”의 일부내용을 정리한 것임

**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장(lotus8084@koddi.or.kr)

I. 서론

그동안 우리나라의 장애인일자리정책은 직업재활을 통한 보호고용과 의무고용에 의한 취업 알선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며, 참여정부 이후에 각급 사회적일자리정책이 추진됨에도 장애인은 그 범주에서 배제된 상태였다(보건복지가족부, 2006). 그러나 장애인구의 증가와 권리의식의 신장에 따른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복지에 대한 욕구의 증가, 고용시장에서의 실질인구 감소로 인하여 장애인노동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수동적·단순일자리 참여에서 적극적·맞춤형일자리 참여를 통한 소득증진 추구의 방향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자리 참여대상자도 일반고용이 비교적 쉬운 경증장애인에서 일반 사업장의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특히, 지체, 시각 및 정신지체장애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사회적 일자리 마련의 사업방향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일자리 참여를 통한 장애인 차별 해소 및 사회통합 실현을 목표로 2010년까지 장애인 일자리 10만개 마련을 위한 Able 2010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행정도우미(이하 '행정도우미')는 본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사업의 하나로, 읍·면·동 등 주민자치센터(이하 '주민센터')에 복지행정 업무의 보조수행으로 장애인을 배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행정도우미사업[†]은 16개 시·도의 배정인원 2,000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7년 1,665명(83.3%), 2008년 1,819명(91.0%), 2009년 1,926명(96.3%)로 참여인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예산도 2007년 4,980,000천원, 2008년 10,260,000천원, 2009년 11,115,000천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본 사업이 단기적인 근무기간으로 인하여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점, 공무원 보조업무에 그치기 때문에 장애인의 특수상황을 고려한 고용 프로그램인가에 대한 의견, 대상자 선발기준이 지자체별로 상이하여 본래의 사업취지에 어긋난다 등 본 사업과 관련된 일련의 정책적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은 장애인행정도우미의 직무에 대한 검토·분석에 기초한 업무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다보니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의 본래의 목적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은 공공부문이 주체가 되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으로 주민센터 시범 실시 이후 배치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확대·실시한다는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과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으로 구분된다.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은 장애인에게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경험을 갖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전이를 지원하고자 제공하는 아르바이트형 일자리로, 2008년도에는 2,760명, 2009년도 3,15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었다.

† 장애인일자리사업의 현황은 시·도의 관리 하에 사업수행기관(시·군·구, 민간사업수행기관등)에서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한 것을, 장애인개발원에서 취합한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장애인개발원에서는 16개 시·도의 전산시스템 입력실적이 미비하여 엑셀자료를 수령하여 분석하였으며, 일부 엑셀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지자체의 것은 전산시스템 입력실적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다.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주민센터에서의 장애인행정도우미의 직무 경험은 장애인의 사회적 일자리로서 자리매김하는데 주요한 요소라 사료된다. 그러나 사업목적에서 장애인행정도우미의 역할이 ‘주민센터 업무의 행정보조’라는 범주에서 명시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행정보조의 직무가 어떤 업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진 것이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행 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행정도우미의 직무분석을 통하여 업무 내용을 파악하고 행정도우미 직무에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여 이를 기반으로 한 장애인행정도우미의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장애인행정도우미의 구체적인 직무 분석을 실시함에 따라 직무 수행 시 수반되어야 하는 직무환경, 직무 만족도, 직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집단별 특징, 장애인행정도우미에 대한 주민센터의 평가 등의 분석도 포함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본 사업의 정책적 발전 방향을 탐색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및 업무

정부는 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작은 정부를 실현하고 주민중심의 행정서비스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기존의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동안 읍·면·동사무소는 주민의 의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해주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한편, 주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행정시책을 집행하는 최일선 지방행정기관이었다. 그러나 교통·통신의 발달, 생활권·경제권의 확대 등으로 시·군·구청에 의한 광역적·종합적 행정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읍·면·동 단위의 일반행정기능이 약화되었다. 또한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복지·문화 등의 서비스 기능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른 주민의 자치의식과 지역 공동체 의식의 향상이 필요하게되었다. 주민센터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춰 읍·면·동사무소의 인력을 민원과 사회복지업무 중심으로 조정하여 주민에 대한 서비스 기능의 강화, 그리고 주민센터의 운영을 통해 주민의 문화, 복지, 여가기능의 향상 및 지역주민의 적극 참여를 통한 주민 자치의식과 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고자 하였다. 기능전환사업은 제1단계로 1999년 7월부터 동지역을 대상으로, 2000년 7월부터는 읍·면(동)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되었으며, 2001년 10월부터는 140개 시·군 1,863개 읍·면·동에 대하여 확대 시행되어 왔다(김중성·신원득, 2004).

기능전환 전	기능전환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민원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증명발급 - 민원신고 처리 ② 주민관리 및 보호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인감관리 - 민방위, 재난관리 ③ 사회복지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보호, 장애인복지 - 노인, 부녀, 아동복지 ④ 세원관리, 고지서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과태료 ⑤ 단속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정차, 불법건축물 단속 ⑥ 민간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십자회비 모금 - 자생단체 관리 등 ⑦ 본청 및 특별행정기관 보조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위생 - 산업, 도시, 건설 - 건축, 통계, 병무 ⑧ 기관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청사관리, 서무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읍면동사무소 (행정기능)</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민원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증명발급, 민원신고 처리 ② 주민관리 및 보호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인감관리 - 민방위, 재난관리 ③ 사회복지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보호, 장애인복지 - 노인, 부녀, 아동복지 <p>※ 시군구 이관 : ④~⑧</p> </td> </tr> <tr>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기능)</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민편의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장, 예식장, 놀이방, 탁아소 등 ② 문화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회, 취미교실, 청소년센터 - 영상·음악감상실, 도서관 ③ 여가활동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호회, 레크레이션 활동 ④ 각종 주민단체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등 ⑤ 소비자보호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물교환, 도·농간 자매결연 ⑥ 생활안정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안전, 청소년지도, 자율방범, 의용소방대 등 ⑦ 지역안전 관리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대, 하수구, 맨홀점검 </td> </tr> </table>	읍면동사무소 (행정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민원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증명발급, 민원신고 처리 ② 주민관리 및 보호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인감관리 - 민방위, 재난관리 ③ 사회복지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보호, 장애인복지 - 노인, 부녀, 아동복지 <p>※ 시군구 이관 : ④~⑧</p>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민편의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장, 예식장, 놀이방, 탁아소 등 ② 문화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회, 취미교실, 청소년센터 - 영상·음악감상실, 도서관 ③ 여가활동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호회, 레크레이션 활동 ④ 각종 주민단체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등 ⑤ 소비자보호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물교환, 도·농간 자매결연 ⑥ 생활안정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안전, 청소년지도, 자율방범, 의용소방대 등 ⑦ 지역안전 관리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대, 하수구, 맨홀점검
읍면동사무소 (행정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민원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증명발급, 민원신고 처리 ② 주민관리 및 보호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인감관리 - 민방위, 재난관리 ③ 사회복지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보호, 장애인복지 - 노인, 부녀, 아동복지 <p>※ 시군구 이관 : ④~⑧</p>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민편의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장, 예식장, 놀이방, 탁아소 등 ② 문화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회, 취미교실, 청소년센터 - 영상·음악감상실, 도서관 ③ 여가활동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호회, 레크레이션 활동 ④ 각종 주민단체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등 ⑤ 소비자보호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물교환, 도·농간 자매결연 ⑥ 생활안정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안전, 청소년지도, 자율방범, 의용소방대 등 ⑦ 지역안전 관리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대, 하수구, 맨홀점검 				

[그림 1]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출처 : 조석주(2005). p.97.

따라서 주민센터의 기능은 기존의 읍·면·동에서 진행되던 행정기능과 주민자치기능으로 정리되었다. 즉, 기능 전환 전의 단속규제기능, 민간협력기능, 본청 및 특별행정기관의 보조기능, 기관유지 기능 중 제 증명발급·민원신고 처리 등의 민원기능, 주민등록·인감관리·민방위·재난관리 등의 주민관리 및 보호기능, 생활보호·장애인복지·노인·부녀·아동복지 등의 사회복지 기능만 존치하고 나머지 기능은 시·군·구 본청으로 이관되었다. 따라서 [그림 1] 에서 보는바와 같이 주민센터는 보조행정계층으로 대민행정업무와 주민복지 업무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민센터의 기능변화에 따라 공무원들의 역할과 업무도 변화를 가져왔다. 즉, 기능전환 전에는 지방행정의 최일선 집행 책임자, 관할지역 및 주민의 지도·관리자, 지도·규제·단속 위주의 업무수행자, 상급기관 지시 업무의 대행역할을 주로 수행하였다. 그러나 기능전환 후에는 주민자치활동의 지원자, 대민서비스 행정의 봉사자, 민간자율 역량의 후견자, 주민과 시·군·구간의 가교역할 수행 등의 업무로 변화하게 되었다. 따라서 주민센터 내의 장애인행정도우미의 행정 보조의 업무에 따른 직무의 범위도 주민센터의 기능전환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및 업무 내용을 중심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직무분석의 개념과 방법

직무분석(job analysis)은 어떤 직무(job)를 구성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자에게 요구되는 경험, 자질, 기능, 지식, 능력, 책임과 그 직무가 타 직무와 구별되는 요인을 각각 명확하게 밝히어 기술하는 절차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직무분석은 사람 중심의 관리가 아닌 일 중심의 사람관리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현대적인 인사관리의 특징이 먼저 조직이 요구하는 일의 내용을 정의하고 이에 따라 사람을 맞추어 나가는 것을 그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송상호, 1997: 5). 사회복지조직에서 직무분석 적용을 시도한 최재성(2002: 36)은 직무분석을 “조직에서 수행되는 직무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방법”으로 보고, 조직에서의 직무를 분류하고 또한 분류된 직무의 책임과 의무를 기술하고 분석하며,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능력을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직무분석은 그 목적이 무엇이나에 따라 직무분석의 범위, 필요한 정보의 내용, 정보 수집 방법 등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직무를 분석할 때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과제중심 직무분석과 작업장중심 직무분석으로 구분한다(양일선 외, 1999 ; 강홍구·윤현숙, 2004에서 재인용). 과제중심 직무분석은 직무에서 수행하는 과제나 활동이 어떤 것들인지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며, 작업장중심의 직무분석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인간의 재능, 즉 지식, 기술, 능력, 경험에 비중을 둔다.

본 연구의 직무분석은 우선 장애인행정도우미가 주민센터에서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있다. 따라서 직무분석의 핵심은 장애인행정도우미가 수행하는 과제·활동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과제중심의 분석 방법을 활용할 것이다. 더불어 장애인행정도우미의 참가자가 장애인이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장애유형, 등급에 따른 직무의 특성은 어떠한지, 그리고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참가자에게 요구되는 경험, 자질, 기능, 지식, 능력은 어떠한지에 대한 분석도 실시하고자 한다.

3. 주민센터 장애인행정도우미 직무

장애인행정도우미는 주민센터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해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의 직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직무는 <표 1>에서 보는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업무, 장애인복지업무, 노인복지업무, 모부자가정업무, 아동복지 보육업무, 여성복지업무, 청소년복지업무, 의료급여업무, 장묘업무, 사회복지행정일반업무, 사회복지서비스업무의 11개영역의 69개 세부업무로 여기에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행정업무를 포함하면 총 12개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백종만 외, 2006).

〈표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직무

구 분	세 부 업 무
기초보장 및 자활지원	수급신청 안내 및 접수/ 수급자 선정 및 조사/ 수급자 관리/ 급여 지급/ 수급자 지원/ 자활사업 실시/ 기타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민원안내 접수/ 장애인복지대상자접수관리/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경제적 부담 경감/ 장애인 시설업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타
노인복지업무	노인복지 민원안내/ 노인복지 대상자 선정 관리/ 노인복지대상자 급여 지급/ 노인복지 지원/ 노인복지시설 업무/ 기타
모부자복지	모부자복지 민원안내 및 접수/ 모부자 가정 선정 관리/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모부자복지시설 업무/ 기타
아동복지 보육	아동복지 민원안내 및 접수/ 요보호 아동 보호 지원/ 아동건전육성 관련 업무/ 보육 업무/ 기타
여성복지	모보호여성 보호 및 자립지원/ 여성인력개발 및 활용사업/ 여성복지시설 업무/ 기타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 지원/ 청소년 육성 및 선도사업/ 청소년 관련단체 지도관리/ 청소년 시설 업무/ 기타
의료급여업무	의료급여 대상자 관리/ 의료급여 지급관련/ 의료급여 대상자 관리/ 기타
장묘업무	장사시설 수급 관리 계획/ 묘지실태 조사 및 무연분묘 정비/ 공사설 장사시설 설치 폐지 신고/ 분묘개장 공고 허가 신고/ 공사설 장사시설 관리/ 장례식장 지도 및 행정처분/ 기타
사회복지행정 일반업무	예산관련 업무/ 의회관련 업무/ 직원 슈퍼비전/ 업무관련 내부회의 참석/ 업무 관련 모임 참석/ 업무 지침 법령 자료 검토/ 보수교육 참여/ 지역종합계획 참여/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 업무	복지자원발굴 및 관리/ 자원봉사자 연계 및 사후관리/ 후원 결연자 연계 및 사후관리/ 대상자 복지시설 이용연계/ 대상자 복지시설 입소 의뢰/ 심리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심층상담/ 위기 가정 및 대상자의 발견 및 보호/ 관내 관련행사 진행/ 사업 및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기타
일반행정업무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행정도우미의 직무를 분석함에 있어 장애인행정도우미가 임하는 업무의 영역을 분류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백종만 외(2006)의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각 주민센터의 홈페이지의 업무 내용 분석 및 주민센터 담당공무원과의 면접조사를 통하여 장애인행정도우미의 직무영역 및 세부업무를 분류하였다. 즉, 백종만 외(2006)의 분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센터 공무원의 업무와 일치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장애인행정도우미는 이들 공무원의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정도이어서 장애인행정도우미의 업무를 분석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담당공무원과의 인터뷰에서는 주민센터의 기능에 따른 업무 이외에 수행되는 행정도우미가 업무내용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백종만 외(2005)가 분류하였

던 11개 영역을 6개의 영역으로 범주화하였다. 즉, 주민센터의 업무 성격상 통합하여 진행되고 있는 영역과 장애인행정도우미가 수행하는 업무의 관여도가 너무 미약하여 유의미성을 찾기 어려운 영역은 제외하였다. 따라서 의료급여 업무는 기초보장업무에 통합시켰으며, 주민자치센터에서 극소수의 일부 행정도우미만이 수행하는 모부자가정업무, 여성복지업무, 청소년복지업무는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분류된 장애인행정도우미의 직무의 영역은 기초보장(및 자활지원업무),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아동(보육)복지, 사회복지 일반 업무, 주민센터 일반 업무의 총 6개의 영역으로 범주화하였다. 그리고 각 영역은 보조적 업무를 수행하는 보조업무와 각 영역의 특성을 반영한 고유의 성격을 가진 민원처리 업무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보조업무와 민원처리 업무는 다시 각각의 세부업무로 분류하였다. 보조업무에는 문서정리, 문서전달, 문서대필, 복사, 팩스송부, 스캔 작업, 우편물 작업, 은행업무 처리 등의 세부업무이며, 민원업무는 각 영역별의 고유사업과 관련된 항목으로 등록, 안내, 상담, 카드관리, 접수, 그리고 공무원과의 면접조사를 통하여 장애인행정도우미들이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잡 업무들을 포함시켰다. 이하 장애인행정도우미의 직무분석을 위해 적용된 직무의 범주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장애인행정도우미 직무 분류

영역	소영역	세 부 업 무
장애인 복지	보조업무	문서 정리/ 문서 전달/ 문서 대필/ 복사/ 팩스 송부/ 스캔 작업/ 우편물 작업/ 은행업무 처리/ 기타
	민원업무	장애인 복지 안내/ 장애인복지대상자 접수/ 장애인 등록/ 장애인 증명서 발급/ 장애인 복지 기초상담/ 장애인 복지 전문상담/ 장애인 복지 관련 각종 카드 발급/ 장애인 카드 이력관리/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장애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업무/ 장애인수급자 진출입 관리/ 장애인 복지민원 일괄처리/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바우처) 접수/ 기타
아동 복지	보조업무	문서 정리/ 문서 전달/ 문서 대필/ 복사/ 팩스 송부/ 스캔 작업/ 우편물 작업/ 은행업무 처리/ 기타
	민원업무	아동복지 안내/ 아동복지 기초상담/ 아동복지 전문상담/ 보육료 신청 안내/ 보육료 접수/ 아동바우처 접수/ 기타
노인 복지	보조업무	문서 정리/ 문서 전달/ 문서 대필/ 복사/ 팩스 송부/ 스캔 작업/ 우편물 작업/ 은행업무 처리/ 기타
	민원업무	노인복지 안내/ 노인복지 기초상담/ 노인복지 전문상담/ 노인복지 대상자 접수/ 기초노령연금 신청 안내/ 기초노령연금 접수/ 기초노령연금대상자 진출입 관리/ 노인교통카드 발급/ 노인바우처/기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보조업무	문서 정리/ 문서 전달/ 문서 대필/ 복사/ 팩스 송부/ 스캔 작업/ 우편물 작업/ 은행업무 처리/ 기타
	민원업무	수급신청 안내/ 기초생활보장 기초상담/ 기초생활보장 전문상담/ 수급신청접수/ 의료급여증 교부 및 회수/ 기타

영역	소영역	세 부 업 무
사 회 복 지	보조업무	문서 정리/ 문서 전달/ 문서 대필/ 복사/ 팩스 송부/ 스캔 작업/ 우편물 작업/ 은행업무 처리/ 청소 및 환경 정비/ 물건 나르기/ 기타
	민원업무	한시생계/ 수급자 가정방문/ 복지관련 물품전달/ 밀반찬 서비스 배달/ 기타
주 민 센 터	보조업무	문서 정리/ 문서 전달/ 문서 대필/ 복사/ 팩스 송부/ 스캔 작업/ 우편물 작업/ 은행업무 처리/ 청소 및 환경 정비/ 물건 나르기/ 기타
	기타업무	주민등록증 및 호적 등 각종 증명서 발급업무/ 인감문서관리/ 쓰레기봉투 배달, 주문, 배포/ 주민자치센터 업무 보조/ 주민자치센터 업무 관리/ 팩스 민원/ 도서 관리/ 주차관리/ 멀티미디어관 관리/ 관내 감찰/ 청사 관리/ 기타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를 위하여 행정도우미참여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9년 9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다. 배포된 설문지 1,000부중 회수된 것은 908부이며 이중 통계적 유의성을 고려하여 분석에 사용된 것은 872부 이다.

2. 조사내용 및 분석

조사 내용은 행정도우미 직무환경, 장애인행정도우미의 직무 빈도, 직무에 미치는 요인 등이다. 수거된 설문지는 SPSS 12.0을 활용하였으며, 빈도분석,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분석

1. 응답자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연령은 31세~40세가 (33.8%)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41세~50세(28.2%)이다. 학력은 고졸(50.5%),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전문대졸(22.0%), 대졸 (19.7%)의 순이다. 장애종류별로는 지체장애(65.4%)가 가장 많으며, 뇌병변장애(10.3%), 시각장애

(9.2%) 순이며, 장애등급별로는 3급(27.5%)이 가장 많으며, 6급(18.3%), 5급과 2급(16.8%), 4급(16.0%)의 순이다. 자격증소지여부와 관련하여 컴퓨터자격증 소지자(30.2%)가 가장 많았으며 사회복지사 2급(9.7%)의 순이다. 생활정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3.0%)와 차상위계층(15.2%)의 참여자자가 18.2%에 지나지 않아 전체 중 이들의 참여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행정도우미 시작 연도는 2007년부터 참가자(41.2%)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2008년부터(23.5%), 2009년부터(35.3%)로, 응답자 중 41.2%는 3년째 본 사업에 참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현 주민센터에서 장애인행정도우미 일을 시작한 경우는 2007년부터(41.2%)가 가장 높으며 2007년 이후 시작한 경우는 35%였다. 이것은 2007년도부터 장애인행정도우미를 시작한 일부 행정도우미들이 이동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응답자의 특성

구 분		빈도	비율	구 분		빈도	비율	
성별	남	368	42.2	장애 등급	1급	39	4.5	
	여	504	57.8		2급	146	16.8	
연령	20세 이하	10	1.1		3급	238	27.5	
	~30세	222	25.4		4급	139	16.0	
	~40세	294	33.8		5급	146	16.8	
	~50세	244	28.2		6급	159	18.3	
	~60세	89	10.4					
	61세이상	12	1.4					
학력	초등졸	11	1.3		자 격 증	사회복지사1급	8	0.9
	중졸	50	5.8			사회복지사 2급	86	9.7
	고졸	438	50.5			컴퓨터자격증	267	30.2
	전문대졸	191	22.0			기타	404	45.8
	대졸	171	19.7					
	대학원졸	6	0.7					
장애 종류	지체장애	567	65.4	생활 정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0	3.0	
	뇌병변장애	89	10.3		차상위계층	101	15.2	
	시각장애	80	9.2		기타	545	81.8	
	청각장애	29	3.3		행정도우미 시작년도	2007년부터	360	41.2
	언어장애	16	1.8	2008년부터		205	23.5	
	지적장애	15	1.7	2009년부터		308	35.3	
	자폐성장애	1	0.1	현 주민센터 근무시작연도		2007년부터	305	35.0
	정신장애	13	1.5			2008년부터	213	24.5
	신장장애	20	2.3			2009년부터	353	40.5
	심장장애	5	0.6					
	호흡기장애	1	0.1					
	간장애	1	0.3					
	안면장애	3	0.2					
	장루/요루장애	2	1.2					
	간질장애	10	0.1					
	중복장애	14	1.6					

2. 직무 환경 및 만족도

장애인행정도우미들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환경에 대한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물리적인 환경으로 자기 자리(책상, 의자)를 갖고 있는 장애인행정도우미는 93.1%였다. 컴퓨터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는 87.6%이며, 자신이 혼자 쓸 수 있는 전화소유 비율도 63.5%이었다.

〈표 4〉 물리적 환경

구 분		빈도	비율
자기 자리 여부	있다	804	93.1
	없다	60	6.9
컴퓨터 여부	있다	741	87.6
	없다	105	12.4
전화 여부	있다	531	63.5
	없다	305	36.5

다음은 장애인행정도우미의 장애에 대한 이해, 인적관계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담당공무원이 장애인행정도우미들의 장애에 대하여 이해하고 배려하는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82.3%가 이해하고 배려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또한 장애인행정도우미와 담당자와의 관계에서도 86.3%가 원만한 것으로 장애인행정도우미들과 민원인간의 관계에서도 81.5%가 원만하다고 답하였다.

〈표 5〉 인적관계도

구 분		빈도	비율
담당공무원의 장애이해 및 배려 정도	매우 그렇지 않다	5	0.6
	그렇지 않다	16	1.8
	보통	133	15.3
	그렇다	400	45.9
	매우 그렇다	317	36.4
합 계		871	100.0
담당공무원과의 인적관계정도	매우 그렇지 않다	7	0.8
	그렇지 않다	6	0.7
	보통	107	12.2
	그렇다	431	49.3
	매우 그렇다	323	37.0
합 계		874	100.0
민원인과의 인적관계 정도	매우 그렇지 않다	5	0.6
	그렇지 않다	20	2.3
	보통	137	15.7
	그렇다	453	51.8
	매우 그렇다	260	29.7
합 계		875	100.0

사업참가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사업 참여자로서 68.6%가 만족하고 있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6.2%이었다. 업무에 대한 만족정도는 63.2%가 만족하고 있으며 9.7%만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자신의 업무가 주민센터에 주는 도움의 정도에 대하여 58.0%가 그렇다고 답하고 있다.

〈표 6〉 사업 참가 만족도

구 분	참여자로서 만족 정도		업무의 만족 정도		주민센터에 주는 도움 정도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매우 그렇지 않다	21	2.4	19	2.2	8	0.9
그렇지 않다	33	3.8	65	7.5	24	8.9
보통	218	25.1	235	27.1	332	38.2
그렇다	411	47.4	415	47.8	410	47.2
매우 그렇다	184	21.2	134	15.4	94	10.8
합 계	872	100.0	868	100.0	868	100.0

이번에는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먼저 사회참여 와 소득증진 도움 정도에 대하여 각각 75.6%가 긍정적이며, 그렇지 않다가 불과 5%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자립지원의 도움정도에 대하여 행정도우미사업이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지원에 도움이 되었다 라고 답한 비율은 63.4%이며, 아니다는 8.3%이었다. 따라서 행정도우미사업이 장애인의 사회참여, 소득증대, 자립지원의 기회를 확대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사회참여 및 자립 확대의 도움정도

구 분	사회참여 도움정도		소득증진 도움정도		자립지원도움정도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매우 그렇지 않다	22	2.5	22	2.5	23	2.6
그렇지 않다	22	2.5	22	2.5	50	5.7
보통	168	19.3	168	19.3	246	28.2
그렇다	432	49.5	432	49.5	418	48.0
매우 그렇다	228	26.1	228	26.1	134	15.4
합 계	872	100.0	872	100.0	872	100.0

3. 장애인행정도우미 직무 분석*

먼저 6개 영역에서의 장애인행정도우미의 직무 수행 빈도를 살펴보았다. <표 8>에 정리된 바와 같이 가장 수행빈도가 많은 영역은 장애인복지업무(177.2)였다. 그 다음은 노인복지업무(79.6), 아동복지업무(68.1), 주민센터일반업무(58.0), 사회복지일반업무(50.6), 기초보장업무(35.8)순이다.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직무는 세부영역별, 소영역별 수행 빈도에서와 같이 장애인행정 도우미가 가장 빈번하게 관여하는 업무임을 알 수 있다.

<표 8> 영역별 수행 빈도

구 분	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장애인복지영역	826	0	920	177.4	171.5
아동복지 보육영역	826	0	560	69.4	72.2
노인복지 영역	826	0	641	79.6	113.3
국민기초생활영역	826	0	520	35.6	63.1
사회복지일반영역	826	0	640	50.7	74.8
주민센터 일반영역	826	0	602	58.0	87.8
전 체	826	3	3090	469.4	424.4

다음으로는 각 직무영역에서 소영역인 보조 업무와 민원 업무에서의 업무 빈도를 살펴보았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많은 업무 빈도를 차지하는 것은 장애인복지 민원업무(91.4)이며 그 다음이 장애인복지 업무보조(85.9), 사회복지일반 업무보조(41.1), 노인복지 업무보조(40.9), 주민센터 보조업무(39.2), 아동복지 업무보조(38.0), 노인복지 민원업무(38.7), 아동복지 민원업무

* 행정도우미가 업무 영역별의 빈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하여 먼저 세부 업무의 일·월별 수행빈도를 ①은 월 1~2회, ②는 주 1~2회, ③은 매일 1~2회, ④는 매일 3~4회로 조사하였다. 그리고 각각 업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빈번하게 업무를 수행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①에 대해 1, ②에 대해 4, ③에 대해 20, ④에 대해 40의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여기서 ①은 1달 1~2회, ②는 주 1~2회, ③은 매일 1~2회, ④는 매일 3~4회로 되어 있었지만, ①, ②, ③, ④의 최대빈도를 상정하여 그 비율을 계산하여 1 : 4 : 20 : 40로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비율대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이 평균값은 특정 직무에 대해 장애인행정도우미들이 어느 정도 빈번하게 일을 하는지를 보여준다. 예를 들면 <표 8>에서 장애인복지업무 평균값 177.4점은 평균적인 장애인행정도우미가 장애인복지업무에 대해 177.4점만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즉 장애인복지업무에 속하는 23개 업무 가운데 177.2점에 해당하는 다양한 조합만큼(예컨대, 하루에 4회 수행하는 직무 4개 수행 + 1주일에 2회 수행하는 직무 4개 수행 + 한 달에 2회 수행하는 직무 1개 수행)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30.1), 국민기초보장 업무보조(25.6), 주민센터 민원업무(18.8), 국민기초보장 민원업무(10.3), 사회복지 민원업무(9.4) 순이다. 6개 영역별에 따른 소영역에서도 장애인 복지의 보조업무와 민원처리의 빈도가 높다. 한편 6개 영역에 따른 소영역별 비교를 해보면, 장애인복지 영역에서는 민원처리 업무의 수행 빈도가 보조 업무의 수행 빈도보다 더 많았다. 그러나 장애인복지업무를 제외한 영역에서는 보조업무의 수행 빈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다수의 장애인행정도우미들이 장애인복지의 민원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어느 업무보다도 장애인복지의 영역에서 장애 당사자로서 장애와 관련된 업무에 보다 더 전문적으로 접근하기가 용이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 9〉 소영역별 수행 빈도

구 분		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장애인복지	업무보조	826	0	360	86.0	72.2
	민원업무	826	0	560	91.4	117.7
아동복지	업무보조	826	0	320	39.2	59.4
	민원업무	826	0	280	30.2	54.8
노인복지	업무보조	826	0	320	41.0	58.3
	민원업무	826	0	360	38.6	64.9
국민기초보장	업무보조	826	0	320	25.5	46.3
	민원업무	826	0	240	10.1	25.2
사회복지일반	업무보조	826	0	440	41.3	46.3
	민원업무	826	0	200	9.4	25.2
주민센터	업무보조	826	0	400	39.3	46.3
	민원업무	826	0	332	18.7	25.2
전체	업무보조	826	0	1612	270.8	259.0
	민원업무	826	0	1569	198.6	213.4

다음으로 세부업무별로 수행 빈도를 살펴보면* 장애인복지에서 가장 빈번한 수행 업무는 복사(19.4)이며, 다음이 문서정리(15.3), 장애인복지 안내(12.8), 문서전달(11.0), 장애인증명서발급(9.7), 장애인복지대상자접수(9.4)의 순이다. 아동복지에서 가장 빈번한 수행 업무는 복사(8.4)이며 그 다음이 보육료 신청안내(7.4), 보육료 접수(6.4), 문서 정리 와 문서 전달(6.2), 아동복지 안내(5.4)의

* 각 세부업무별로 가장 빈도가 높은 순서로 3순위까지만 본 글에서는 정리한 것임

순이다. 노인복지에서 가장 빈번한 수행 업무는복사(8.6)이며 그 다음으로 문서정리(7.6), 기초노령연금 신청안내(6.9), 기초노령연금 접수(6.1), 노인복지 안내(5.9), 스캔작업(5.1)의 순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가장 빈번한 수행 업무는 복사(5.6)이며, 그 다음으로 문서 정리(4.3), 문서전달과 의료급여증 교부 및 회수(3.1), 수급신청안내(2.6), 기초생활보장기초상담(1.6)의 순이다. 사회복지일반에서 가장 빈번한 수행 업무는 복사(7.8)이며, 그 다음으로는 문서 정리(5.9), 문서전달과 한시생계관련업무(3.9), 복지관련물품전달(2.3), 수급지 가정방문(1.4)의 순이다. 주민센터에서 가장 빈번한 수행 업무는 복사(7.1)이며, 그 다음으로는 문서 정리(5.5), 주민자치센터 업무 보조(4.9), 문서전달(3.8), 팩스민원(1.9), 주민등록발급 및 증명서발급(1.8)의 순이다.

〈표 10〉 장애인행정도우미 세부업무별 수행 빈도

구 분		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장애인복지	업무부보조	복사	826	0	40	19.4	17.0
		문서 정리	826	0	40	15.3	15.7
		문서 전달	826	0	40	11.0	13.7
	민원업무부	장애인 복지 안내	826	0	40	12.8	15.7
		장애인 증명서 발급	826	0	40	9.7	13.9
		장애인복지대상자 접수	826	0	40	9.4	13.9
아동복지	업무부보조	복사	826	0	40	8.4	14.0
		문서 정리	826	0	40	6.2	11.9
		문서 전달	826	0	40	6.2	11.0
	민원업무부	보육료 신청 안내	826	0	40	7.4	13.5
		보육료 접수	826	0	40	6.4	12.7
		아동복지 안내	826	0	40	5.4	11.6
노인복지	업무부보조	복사	826	0	40	8.6	13.7
		문서 정리	826	0	40	7.6	12.83
		스캔작업	826	0	40	5.1	11.5
	민원업무부	기초노령연금 신청 안내	826	0	40	6.9	12.6
		기초노령연금 접수	826	0	40	6.1	12.0
		노인복지안내	826	0	40	5.9	11.7

구 분		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보조	복사	826	0	40	5.6	11.6
		문서 정리	826	0	40	4.3	9.9
		문서전달	826	0	40	3.1	8.1
	민원업무	의료급여증 교부 및 회수	826	0	40	3.1	8.7
		수급신청 안내	826	0	40	2.6	7.9
		기초생활보장 기초상담	826	0	40	1.6	5.9
사회복지일반	업무보조	복사	826	0	40	7.8	13.4
		문서 정리	826	0	40	5.9	11.3
		문서전달/우편물작업	826	0	40	3.9	9.1
	민원업무	한시생계	826	0	40	3.9	10.0
		복지관련 물품전달	826	0	40	2.3	7.1
		수급자 가정방문	826	0	40	1.4	5.9
주민센터	업무보조	복사	826	0	40	7.1	13.3
		문서 정리	826	0	40	5.5	11.6
		문서전달	826	0	40	3.8	9.6
	민원업무	주민자치센터 업무 보조	826	0	40	4.9	11.7
		팩스 민원	826	0	40	1.9	7.0
		주민등록증 및 호적 등 각종 증명서 발급업무	826	0	40	1.8	7.5

4. 직무 수행 영향 요인

위의 분석결과에 준하여 여기서는 장애인행정도우미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보았다. 전체적인 모형의 적합도는 <표 4-35>와 같이 $F=5.828(p<.001)$ 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R2값은 .122로, 각 영양요인들이 분산을 설명하는 비율은 12.2%이다.

분석결과, 장애인행정도우미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성별, 장애정도, 직무 수행 능력, 장애인행정도우미 시작년도이었다. 먼저,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직무를 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1세 증가할 경우 0.4762점만큼 직무를 덜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도 직무 수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직무를 86.575점만큼 더 수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정도도 직무 빈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졌는데 중증장애인은 경증장애인보다 106.043만큼 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능력은 직무 수행 빈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직무 수행 능력 1점이 올라갈수록 20.823점만큼 직무를 더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애인행정도우미 일을 언제 시작했는가 여부도 직무 수행 빈도에 영향을 미쳤다. 07년도에 일을 시작한 행정도우미는 91.057점만큼 더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직무 수행 영향 요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연령*	-.4762	-.103	-2.519
성별*(남성=1)	-86.575	-.098	-2.420
중졸 이하(고졸=기준)	-54.944	-.032	-.804
전문대졸 이상(고졸=기준)	6.685	.008	.190
장애정도** (중증=1)	-106.043	-.122	-2.971
직무수행능력***	20.823	-.241	-6.126
07년 시작*	91.057	.104	2.412
08년 시작	56.639	.055	1.285
농촌지역(도시=기준)	.362	.064	1.027
도농복합지역(도시=기준)	-.221	-.033	-.254
바쁜 정도	-9.4E-05	.000	.006
뇌병변장애인	60.001	.043	.022
시각, 청각, 언어장애인	1.081	.001	.356
지적, 정신적 장애인	29.108	.014	-.813
내부장애인	-73.962	-.031	-2.971
N	592		
R2	.122		
F	F=5.828	p=.000	

* p <.05, ** p <.01, *** p <.001

<표 11>가 전체 직무 수행을 대상으로 하였다면, 이번에는 보조 업무와 민원 업무로 나누어 분석해 보기로 하자. 먼저 보조업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찾아보았다.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형의 적합도는 $F=4.709(p <.001)$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R2값은 .101로, 각 영향요인들이 분산을 설명하는 비율은 10.1%이다. 분석결과, 장애인행정도우미의 보조직무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연령, 성별, 장애정도, 직무 수행 능력, 근무지역, 장애유형(뇌병변장애인)이었다.

〈표 12〉 업무보조 영향 요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연령**	-0.3829	-.136	-3.285
성별*(남성=1)	-43.609	-.081	-1.977
중졸 이하(고졸=기준)	-16.131	-.016	-.383
전문대졸 이상(고졸=기준)	1.889	.004	.087
장애정도* (중증=1)	-56.491	-.107	-2.567
직무수행능력***	-10.244	-.195	-4.888
07년 시작	34.828	.065	1.496
08년 시작	30.623	.049	1.127
농촌지역**(도시=기준)	70.503	.118	2.685
도농복합지역(도시=기준)	7.342	.010	.248
바쁜 정도	-.008	-.034	-.828
뇌병변장애인*	68.187	.081	2.016
시각, 청각, 언어장애인	7.854	.010	.265
지적, 정신적 장애인	30.508	.024	.605
내부장애인	-41.447	-.56.101	-.028
N	592		
R2	.101		
F	F=4.709	p=.000	

* p <.05, ** p <.01, *** p <.001

여기서도 연령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는데, 연령이 많을수록 보조적 직무를 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 1세가 많아지면 0.3829만큼 직무를 덜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별 요인도 보조적 직무의 수행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남성은 여성보다 43.609만큼 일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 역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중증장애인은 경증장애인보다 56.491만큼 보조적 직무를 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능력은 보조적 직무의 수행 빈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는데 직무 수행 능력 1점이 올라가면, 10.244만큼 보조적 직무를 더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촌지역의 주민센터에 배치된 장애인행정도우미는 도시지역보다 70.503만큼 보조적 직무를 더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뇌병변장애인은 지체장애인보다 68.187만큼 보조적 직무를 더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에는 민원업무에서의 영향 요인을 살펴보았다.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형의 적합도는 F값 6.982로서 유의도 0.000 수준에서 유의했다. R2값은 .143으로, 각 영양요인들이 분산을 설명하는 비율은 14.3%이다. 분석결과, 장애인행정도우미의 민원업무 직무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장애정도, 직무 수행 능력, 장애인행정도우미 시작년도이었다. 성별에서 보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 민원처리 업무를 42.966만큼 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증장애인은 경증장애인보다 49.551만큼 민원 처리 직무를 덜 수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직무 수행 능력은 민원처리 과업의 수행빈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직무 수행 능력 1점이 올라가면, 10.579만큼 민원처리 과업을 더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애인행정도우미 시작년도의 경우, 2007년도에 일을 시작한 장애인행정도우미도 56.229만큼 민원처리 과업을 더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민원업무 영향 요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연령	-.933	-.041	-1.008
성별*(남성=1)	-42.966	-.099	-2.453
중졸 이하(고졸=기준)	-38.812	-.046	-1.160
전문대졸 이상(고졸=기준)	4.796	.011	.279
장애정도** (중증=1)	-49.551	-.115	-2.835
직무수행능력***	10.579	.247	6.356
07년 시작**	56.229	.130	1.283
08년 시작	26.016	.051	1.205
농촌지역(도시=기준)	-26.751	-.041	-1.283
도농복합지역(도시=기준)	-19.546	-.032	-.831
바쁜정도	.008	.041	1.030
뇌병변장애인	-8.187	-.012	-.305
시각, 청각, 언어장애인	-6.773	-.011	-.288
지적, 정신적 장애인	-1.401	-.001	-.035
내부장애인	-32.516	-.027	-.730
N	592		
R2	.143		
F	F=6.982	p=.000	

* p <.05, ** p <.01, *** p <.001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07년부터 시작되어 09년 현재 3년째를 맞고 있는 장애인행정도우미의 직무 분석을 실시하여 장애인행정도우미가 주민센터내에서 어떠한 집무를 수행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장애인행정도우미의 효과적인 직무배치를 위한 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은 공공부문이 주체가 되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으로, 주민센터 시범 실시 이후 배치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확대·실시한다는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주민센터에서의 장애인행정도우미의 직무 경험은 장애인의 사회적 일자리로서 자리매김하는데 주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행정도우미의 직무 분야를 장애인복지영역, 노인복지영역, 아동복지영역, 기초생활보장영역, 사회복지일반영역, 주민센터업무영역의 6개 영역으로 범주화하였다. 그리고 각 영역의 직무범주에 따른 각각의 소영역의 업무를 분류하여 이를 보조업무와 민원처리 업무로 분류하고, 보조업무와 민원처리 업무는 다시 각각의 세부업무로 분류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장애인행정도우미 직무 중 수행빈도가 높은 영역은 장애인복지업무(177.2)였다. 그 다음은 노인복지업무(79.6), 아동복지업무(68.1), 주민센터일반업무(58.0), 사회복지일반업무(50.6), 기초보장업무(35.8) 순이다. 둘째, 소영역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업무 빈도는 장애인복지 민원업무(91.4)이며 그 다음이 장애인복지 업무보조(85.9), 사회복지일반 업무보조(41.1), 노인복지 업무보조(40.9), 주민센터 보조업무(39.2), 아동복지 업무보조(38.0), 노인복지 민원업무(38.7), 아동복지 민원업무(30.1), 국민기초보장 업무보조(25.6), 주민센터 민원업무(18.8), 국민기초보장 민원업무(10.3), 사회복지 민원업무(9.4) 순이다. 6개 영역별에 따른 소영역에서도 장애인 복지의 보조업무와 민원처리의 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세부업무 중 업무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장애인복지-업무보조-복사(19.4)이다. 그 다음 순으로 장애인복지-업무보조-문서정리(15.3), 장애인복지-민원업무-장애인복지 안내(12.8), 장애인복지-업무보조-문서전달(11.0), 장애인복지-민원업무-장애인증명서인증명서 발급(9.7), 장애인복지-민원업무-장애인복지대상자 접수(9.4), 노인복지-업무보조-복사(8.6), 아동복지-업무보조-복사(8.4), 사회복지일반-보조업무-복사(7.8), 노인복지-업무보조-문서정리(7.6), 아동복지-민원업무-보육료 신청안내(7.4), 주민센터-보조업무-복사(7.1), 노인복지-민원업무-기초노령연금 신청안내(6.9), 노인복지-민원업무-기초노령연금 접수(6.1), 아동복지-민원업무-보육료 접수(6.4), 아동복지-업무보조-문서정리와 문서 전달(6.2), 등의 순이다. 넷째, 장애인행정도우미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 성별, 장애정도, 직무 수행 능력, 장애인행정도우미 시작년도이다. 보조 직무의 수행 빈도에 영향 요인은, 연령, 성별, 장애정도, 직무수행 능력, 근무지역, 장애종류(뇌병변장애인)이며, 민원업무의 수행 빈도에 영향 요인은 성별, 장애정도, 직무수행 능력, 장애인행정도우미 시작년도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행정도우미의 효과적인 직무배치를 위한 한 정책대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행정도우미의 체계적인 교육 훈련의 지원이다. 주지하다시피, 장애인행정도우미는 업무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후로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적절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장애인행정도우미의 업무가 주민센터 업무의 다양한 직무에 관여되고 있다는 점에 업무의 성격과 내용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장애인행정도우미 필요인력의 자질과 능력을 규정하여 이에 따른 적정 교육을 체계화 하는 작업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행정도우미직무배치의 기준안 마련이다.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은 주민센터 시범 실시 후 배치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행정도우미의 직무 수행의 능력은 노동시장의 전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중증 및 고용취약 장애인들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직무의 발견과 수행능력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인관계 능력이 뒤떨어지는 집단에 대해서는 민원처리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배치하든가 하는 직무재배치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 개인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서비스 지원체계, 프로그램, 보조도구, 전문인력, 편의시설 등의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임금과 고용안정성 등의 제도적 개선사항이다. 주민센터행정도우미사업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생활안정 도모, 그리고 이를 통한 사회 참가의 의미가 부여되는 것인 만큼, 장애인행정도우미의 저임금은 장애인행정도우미의 주민센터 내 직무 적응을 힘들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본 사업에 참가한 장애인행정도우미가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증진, 자립지원에 긍정적인 평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하는데 임금과 1년기간의 단기고용등이 제약요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장애인행정도우미 참가자들의 노동시장 전이를 위한 장치의 마련이다. 본 사업은 공공부문이 주체가 되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으로서, 주민센터 시범 실시 이후 배치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확대·실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각종 실적파악을 하는데 있어서 일반노동시장으로 전이한 자가 있는지가 전혀 보고되고 있지 않았다. 즉,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에의 참가하는 장애인에게 사회적 일자리의 자리매김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치가 부진하다는 점은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는 사업의 집행주체들이 이 사업을 통한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전이자를 발굴해 내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고 전망한 때문일 수 있는데 아무리 사례가 적다하더라도 그 사례를 발굴해내고 분석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전이 가능성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그를 적극적으로 유인해내기 위한 유인책 등이 전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의 목적은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전이를 지원하고자 제공하는 전환기적 일자리”의 제공에 있으므로 애초의 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이전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다섯째, 구청의 역할 정립이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가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개발팀의 지원체계 속에서 사업의 전반적 내용을 확정된 후 시·도를 거쳐 시·군·구에 전달되는,

공부문의 일반적인 전달체계와 동일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시·군·구는 사업수행 및 예산집행, 위탁기관 지원·지도·감독, 참여자 모집·선발·관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행정도우미의 직무배치 및 교육 등에 구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장애인행정도우미의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최일선 기관으로 구청의 역할정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이다.

여섯째, 장애인일자리 지원을 위한 잡코치 시스템의 마련이다. 잡코치는 장애인행정도우미의 선발, 직업능력 평가, 직무 배치, 사후관리 등에서 사업 담당자와의 연계를 통해 지원 관리하는 전문 인력이다. 잡코치는 장애인이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접 지원하거나, 사업주(사업 담당자)에 대해서도 장애인의 직무적응에 필요한 조언을 해 주며 필요에 따라 직무와 직장환경개선을 제안하기도 한다. 이를 통한 직무능력 향상, 직무적응을 위한 지원, 인간관계와 직장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홍구·윤현숙(2004). 사회복지사의 직무분석과 표준 직무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8-29.
- 김종성·신원득(2004).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체제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42(2). 196-222.
- 백종만(외저)(2006).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2차년도 평가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06). 일자리 마련을 통한 장애인복지 증진(Able 2010 프로젝트 추진). 보건복지부.
- 송상호(1997).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직무분석에 관한 연구. 인사관리연구. 5-8
- 조석주(2005). 읍면동 기능전환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지방행정연구 19(3), 93-126.
- 최재성(2002). 사회복지기관의 정보화를 위한 업무표준화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03년도 자료.

【Abstract】

Job Analysis of Administrative Assistants with Disabilities

Lee, Yong-Bok*

Programs for administrative assistants with disabilities started in 2007.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make policy alternatives for effective job placement and to grasp the essential elements for job placement and main work areas of administrative assistants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ir job analysis.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we categorized work areas into six parts: Welfare for the disabled, Welfare for the elderly, Welfare for the child, Basic Livelihood Security, Social Welfare, Resident Autonomy Center Work. Each of the six parts was sub-categorized into two areas: Assist Work and Civil Affairs. Each of these, in addition, were classified into detailed works. After categorizing the work areas, we measured how frequently administrative assistants with disabilities had taken part in these works with 872cases being selected. The result of this research showed the ranking of participation frequency as follows; Welfare for the disabled (177.2), Welfare for the elderly (79.6), Welfare for the child (68.1), Resident Autonomy Center Work (58.0), Welfare (50.6), and Basic Livelihood Security (35.8). Among the sub-category areas, civil work in the field of Welfare for the disabled indicated the highest frequency (91.4), with the subsequent order of Assist Work in the field of Welfare for the disabled (85.9), Assist Work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41.1), and Assist Work in the field of Welfare for the elderly (40.9). In the detailed work areas, Copy - Assistance Work - Welfare for the disabled (15.3) showed the highest participation frequency and Guide - Civil Affairs - Welfare for the disabled (12.8) stood on the second frequency. Age, sex, degree of disability, job competency and the length of program proved to have influences on the participation frequency.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highlighted the systematic training program,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r job security and wage, the standards for work placement, and Job Coach system as political suggestions for the practical and effective utilization of administrative assistants with disabilities.

☼ Key Words : administrative assistants with disabilities, work areas of administrative assistants with disabilities, job analysis.

* Head of Policy Research Dept,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amily Support System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김 정 희*

【국문초록】

본 연구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포함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생애주기 관점에서 가족의 욕구를 파악하여,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는 실효성 있는 가족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문헌조사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특성, 발달장애인 가족의 부양부담 및 욕구 파악,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현황을 분석했다. 전국에 거주하는 자폐성장애인 또는 지적장애인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로 욕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84부(자폐성장애인 265부, 지적장애인 319부)가 최종분석에 활용되었다. 자료분석을 위해 SPSS WIN 15.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기술통계 분석과 집단별 차이 파악을 위한 t-test, ANOVA 등을 실시하였다. 장애유형에 따른 가족의 서비스 욕구에 대한 차이를 t-test로 검정한 결과 교육적 지원·경제적 지원·정서적 지원·보호지원·비공식적 지원의 모든 부분에서 지적장애가 자폐성장애보다 이용 욕구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생애주기에 따른 서비스 이용 욕구에서는 교육적 지원($F=5.087, p<.01$)·경제적 지원($F=3.910, p<.01$)·정서적 지원($F=8.811, p<.001$)·보호지원($F=3.074, p<.05$)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비공식적 지원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결과 발달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서비스에서 가족을 포함한 가족단위 생애주기별 지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언급했고, 가족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준으로 기존 조직의 적극 활용,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이용 접근성 고려, 사례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확보를 제시했다.

☉ 주제어 :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생애주기, 가족지원체계 구축

논문제출일 : 00월 00일 최종심사일 : 00월 00일

*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정책팀장

I. 들어가는 글

가족은 각 구성원이 상호 연관되어 서로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체계이다. 이는 가족들이 경험하는 많은 생활 사건들이 가족체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언급한다. 특히, 가족 구성원 중에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 성장기에 있는 발달장애아동의 경우 비장애아동과는 달리 가정과 학교에서 특별한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낮은 사회성, 대인관계 설정의 어려움, 학습능력 저하,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 등으로 이들은 생활의 대부분을 절대적으로 가족에게 의존한다. 따라서 지속적인 서비스와 지원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는 비단 성장기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생의 전반에 걸쳐 요구된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과업은 일반적 생애주기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접근이 생애주기별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는 바, 생애주기별 접근을 강조하는 것은 보편적 장애인복지 이념과 패러다임의 변화와 더불어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발달장애아를 둔 가족의 가족체계 내에서의 변화는 가족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장애아를 둔 비장애형제의 경우 오랫동안 가족구성원으로 함께 살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부모의 경우에는 양육문제로 인해 가족갈등을 경험한다. 부모들은 일상생활, 대인관계 장애를 장애자녀와 함께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연쇄적인 가족 간의 갈등과 스트레스의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경제적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으로, 장애자녀를 돌보느라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데서 비롯되는 실업 및 주거문제를 비롯하여 과도하고 지속된 양육으로 인한 정서문제 등 포괄되지 못한 내재화 문제를 겪고 있다.

가족지원은 기존에 장애인에 초점을 두던 것에서 나아가 통합적인 차원에서 가족구성원을 지지하는 새로운 사고방식이다. 장애인가족지원은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는 교육, 물질, 정서, 건강, 보호 등 전 영역을 포괄하여 다차원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지원은 장애인이 성인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교량역할을 한다. 양질의 가족지원 프로그램은 모든 가족구성원에 초점을 맞추고, 가족의 역할·욕구·생애주기에 따라 달라지며, 장애인과 가족의 개별적 선택과 기호를 존중하고, 가족이 지역사회 자원을 사용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장애자녀의 가족지원에 대한 정책과 서비스 자체가 독립적, 종합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고 가족보다는 장애자녀 개인에게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즉, 가족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러있다. 가족지원 관련 정책과 서비스를 살펴보아도,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법률은 없는 상황이고, 장애인(장애아동 포함) 및 가족지원 관련 법률로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에 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국제장애인권리협약, 건강가정기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에 일부 언급되어 있는 정도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가족지원을 위해서는 가정에서 장애인을 보조하려는 가족의 능력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제도가 구축되어야 한다.

전달체계 측면을 살펴볼 때, 가족지원 업무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연계성 부족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복잡성은 장애인 가족의 가족지원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게 한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관련 부처,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책수립자의 당면 과제는 각종 지원의 출처를 조합해서 장애아동이 필요한 교육훈련과 건강 관련 서비스를 받고, 가족구성원들이 지원을 받아 돌봄제공 능력이나 가정기능을 증진하고, 공적 영역을 벗어나 가능하면 지역사회 중심의 지지망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행정부서에서 효율적인 정책방안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장애인 당사자의 역할기능을 강화시키는 체계유지를 위한 측면, 사회물리적 환경개선 측면에서의 접근이 주류를 이루어왔다. 장애인을 위한 정책개발 및 시행도 가족보다는 장애인 개인에 초점을 맞춘 시책들이 주류를 이룬 것이 사실이다. 고무적인 것은 최근 들어 장애인 가족지원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지적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에 대한 연구(이미선·김경진, 2000), 지적장애인 자녀의 전 생애주기를 고려한 지적장애인 가족지원방안에 관한 연구(오혜경·백은령·한민우, 2007), 지적장애인 사례관리 조사연구(변경희, 2008) 등이 수행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 가족지원에 대한 관심과 제도화방안에 관한 의견들이 장애인 부모와 유관단체 들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2008년 12월 기준 총 등록장애인 2,246,965명 중 지적장애인 수는 146,898명이고, 자폐성장장애인 수는 12,954명으로 전체장애인의 7.11%인 총 159,852명이 발달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다. 발달장애인은 특성상 다양한 요구를 갖고 있다. 그러나 가족들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현재 제공되는 지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지역사회는 가족지원에 필요한 인적, 물적자원과 서비스의 원천이다. 가족의 능력을 강화하고, 욕구충족을 위한 가족지원은 제도화와 병행하여 지역사회와 연관된 프로그램으로 체계화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장애를 포함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생애주기 관점에서 가족의 욕구를 파악하여,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는 실효성 있는 가족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II.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서비스 현황

1.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특성

발달장애(發達障礙, developmental disability)는 정신이나 신체적인 발달에서 나이만큼 발달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지적장애·뇌성마비·자폐증·유전장애·염색체 장애·전반적 발달장애 등 다양한 영역의 장애를 포괄하는 개념이다(위키디피아 백과사전, 2009).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 제4판 수정본(DSM-IV-TR :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4th ed., test rev.,

2000)에서는 영아 및 청소년기의 발달장애를 10집단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으며, 이 영역에는 지적장애, 학습장애, 운동기술장애, 의사소통장애, 자폐성장애·레트장애·아스퍼저장애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발달장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섭식장애, 틱장애, 배설장애, 기타 장애가 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10월 15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전면 개정 전까지 발달장애는 자폐성장애로 인식되었다. 이후 발달장애는 자폐성장애로, 정신지체는 지적장애로 명칭이 변화되면서 발달장애는 자폐성장애와 지적장애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보건복지부 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는 발달장애의 범주를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로 규정하고 있다(표 2-1).

〈표 2-1〉 정신적 장애의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정동장애

발달장애인의 범주에 속한 지적장애인은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을 의미한다. 자폐성장애인은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등급은 <표 2-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인 발달장애의 개념으로 인한 사회적 오해를 방지하고 정확한 연구의 진행을 위하여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 제시하는 발달장애의 개념을 기본으로 하고, 장애인복지법이 분류한 정신적 장애 중 발달장애의 범주에 속하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로 진단받은 사람을 발달장애인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표 2-2〉 발달장애인의 장애등급

등급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1급	지능지수가 34 이하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등급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장애인
2급	지능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ICD-10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 나가기 어려운 사람
3급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제2급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 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하여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자료출처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시행 2009. 1. 1)

모든 인간은 생애주기(life span)에 따라 육구, 발달과업, 사회적 과업이 다르다. 이는 장애인에게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장애자녀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나, 발달장애인만을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연구한 자료는 매우 드물며, 장애인의 생애주기 구분도 연구자에 따라 상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되는 지적장애인을 중심으로 하여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학령전기, 학령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의 5단계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학령전기(영유아기, 출생에서 7세까지)

발달장애 영아는 대부분 출생 또는 출생 직후에 장애가 발생하므로 비장애 영유아보다 양육자에게 더 많은 보호를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발달장애 영아는 발달적인 측면이나 인지적인 측면에서 비장애 영아들과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장애여부를 모른 채 가족 안에서 평범하게 자라나기도 한다(오혜경 외, 2007). 비장애아동의 경우 유아기에 접어드는 3세 이후에는 상징에 대한 이해능력이 급속도로 발달하며, 관계의 범위가 부모, 가족을 넘어서 동료와 다른 사람들에게게로 확대된다. 반면, 발달장애아동은 언어 및 지적능력에 있어 정체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하여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발달장애 영·유아들의 경우 언어 및 의사소통의 문제가 대두되며, 이와 관련하여 사회성 부족의 문제가 함께 동반되므로 언어치료와 사회성 및 일상생활훈련을 위한 조기교육, 심리교육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높다.

2) 학령기(아동기, 8세에서 13세까지)

이 시기는 비장애아동과 마찬가지로 발달장애아동에 있어서도 전 생애주기에 걸쳐 가장 크게 성장하는 시기이다. 학교와 동료를 통해 사회적·지리적으로 발달장애아동의 세계는 확장되며,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기술들을 필요로 하게 된다(변용찬 외, 2006). 그러나 발달장애아동은 비장애아동에 비하여 짧은 주의집중시간, 낮은 단기기억력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급격한 변화상황에서 위축되거나 적응 상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사회, 언어발달 측면에서 발달장애아동은 조음장애, 낮은 자아개념 때문에 사회성의 결여 등이 나타난다. 발달장애아동은 정상적인 언어발달 단계를 따르되, 발달속도가 일반아동 보다 느리고, 아동의 지능이 낮을수록 언어장애가 심한 편이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의 언어발달을 촉진하려면 조기훈련이 중요하며, 훈련에는 표출언어에만 중심을 두지 말고 항상 의미를 결부시킨 언어(개념화) 훈련이 필요하다(오혜경 외, 2007).

3) 청소년기(14세에서 18세까지)

생애주기에 있어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전환시기라고 할 수 있다. 비장애 청소년들의 경우 이 시기에 신체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되며,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앤더슨(Anderson) 외(1982)는 장애청소년의 경우 동료관계의 형성, 이성관계의 탐색, 미래에 대한 준비 등이 가장 중요한 과업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 대처가 장애청소년의 전환기의 이슈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김용득, 2000). 발달장애 청소년들 역시 신체적인 성장에 있어서는 비장애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급격한 시기이며, 성적으로 발달하게 된다. 그러나 발달장애 청소년들은 사회적인 기술과 대인관계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더라도 적절한 대처가 여전히 어렵다. 따라서 발달장애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와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회적 기술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4) 성인기(20세에서 64세까지)

성인기는 이전의 적절한 발달단계를 전제로 개인의 생애를 결정해 가고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이자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생활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요한 발달과제 역시 고용을 통해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고 타인과 관계를 맺고 친밀감을 형성하여 부모로부터 심리, 사회적인 독립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은 지적수준이 낮아 발달상 과제를 수행하는데 해결능력이 지체되고, 더불어 적응능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는 큰 혼란으로 다가올 수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성인기에는 가족의 보호능력이 감소해가는 시기이므로, 자립적인 능력을 최대화하고 부모 외의 보호체계를 대비하는 계획이 요구된다. 특히, 발달장애인이 중년기가 되면 이들을 돌보

아주던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거나, 고령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후견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5) 노년기(65세 이후)

노년기는 죽음을 앞두고 남은 삶을 정리하는 시기로 발달장애인도 예외는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시각, 청각, 신체 등 후천적 장애를 지니게 되며, 이를 적절히 수용하지 못한다. 성공적인 노년기를 위해서는 지지적인 환경이 매우 중요하며, 의료기구와 같은 사회적 지원은 노년기 장애인들의 독립성을 증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김용득, 2000). 고령의 장애인은 고령과 장애라는 이중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전 발달단계에서 보다 더욱 심한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발달장애인들은 여기에 지적장애까지 더해져 그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고령의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해 나가도록 지원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시설에 입소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도움이 필요하다.

2. 생애주기에 따른 가족의 부양부담

양육부담은 스트레스보다 다차원적인 개념이자 부모 또는 주된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어려움과 부담감으로, 장애아를 돌보는 부모가 아동과 관련된 특별한 요구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과 불편감의 정도 및 부정적 영향으로 사용된다. 즉, 양육부담은 가족원들이 경험하는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차원에서의 복합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이라 할 수 있다(오혜경·정소영, 2003b). 양육부담이 주된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어려움과 부담감이라고 한다면, 부양부담은 피부양자가 아동이 아닌 성인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피부양자를 부양하는데 있어서 부양자가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를 의미한다. 발달장애인이 생애주기별로 특성과 요구가 다르듯 발달장애인의 가족들도 생애주기에 따라 각각 다른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가족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고, 관계, 기능,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많은 장애가족들이 가족이나 개인을 위해 생활주기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본 절에서는 생애주기에 따른 가족의 부양부담감을 발달장애인의 생활주기에 따른 가족의 과업으로 개념정의한다. 발달장애아동의 부모들이 생애주기별로 겪게 되는 위기에 관한 연구자들의 견해 중 턴불과 턴불(Turnbull & Turnbull, 1997)의 개념을 정리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3〉 발달장애인 가족의 생애주기별 문제

단계	부모 문제	형제자매 문제
아동기 (출생-5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한 진단정보 얻기 · 형제자매와 친척에게 알리기 · 서비스 찾기 · 지침을 결정하기 위해 개인의 신념을 분명히 하기 · 결점의 문제에 접촉하기 · 장애의 긍정적인 부분 찾기 · 큰 기대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제·자매에게 필요한 부모의 시간과 정열의 감소 · 줄어든 관심에 질투를 느낌 · 장애에 대한 오해와 관련한 두려움
학령기 (5-12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일상의 과정을 수행하기 · 교육적 함의에 정서적으로 적응하기 · 주류화(통합교육) VS 특수학급 배치 문제를 분명히 하기 · IEP 회의에 참석하기 · 지역사회 자원을 찾기 · 과외 활동을 조정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 보호 욕구에 대한 책임을 나누기 · 레크리에이션과 여가에서 가족의 제한 · 친구와 선생님에게 알리기 · 같은 학교에 “주류화” 되기 · 장애에 대한 기본 정보 욕구
청소년기 (12-21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의 만성 가능성에 대해 정서적으로 적응하기 · 성적인 문제의 출현 확인 · 또래로부터 고립, 거절 가능성에 응대하기 · 생애/직업발달을 계획하기 · 여가시간 활동을 조정하기 · 사춘기의 신체적·정서적 변화 다루기 · 중등과정 후의 교육 계획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제자매와 과(過)동일시 · 사람의 차이에 대한 더 큰 이해 · 생애 선택에 대한 장애의 영향 · 가능한 결점과 당혹감 다루기 · 형제자매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 형제자매 지원 집단을 위한 기회
성인기 (21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견인에게 가능한 요구를 계획하기 · 독립성에 대한 적절한 성인으로서의 함의를 알리기 · 장애 개인을 위해 외부사회에 요구 알리기 · 생애선택이나 직업프로그램 시작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적 지원을 위한 책무성의 문제 가능성 · 유전적 함의가 고려된 관심사에 대응하기 · 장애에 대해 새로운 배우자에게 안내하기 · 삶(생애)의 선택 정보 욕구 · 후견인으로서 가능한 문제

출처 : Turnbull, A. & Turnbull, H.(1997). “Families, professionals, and exceptional, and exceptionality : A special partnership(3rd ed.)”. Upper Saddle, N.J: Prentice-Hall.

3.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1) 가족지원의 개념 및 원리

가족지원은 가족의 부양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원 방안으로서, 가족체계를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일컫는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가족지원은 아동이나 특정 성인과 같은 특정한 개별 가족 성원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 안에 있는 모든 가족성원의 욕구와 기능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가족지원은 정상화이념에 바탕을 둔 것으로, 아동의 장애를 가족이 이해하고 아동과 가족이 상호 융화되는 것과 관련한 모든 활동으로, 궁극적으로는 가족체계를 강화하고 유지하도록 하는데 주요한 의의가 있다. 가족지원의 목적은 부모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아동들을 돕기 위해 가족들에게 능력을 주고, 부모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지원의 개념을 “전문가의 판단에 의한 욕구가 아닌 가족의 욕구를 중심으로 사정하고, 가족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족 스스로가 서비스에 대한 통제력을 갖도록 개입함으로써 가족의 통합성과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오혜경 외, 2003b)”으로 개념 정의한다.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던스트와 트리벳(Dunst & Trivette, 1994)의 장애인 가족의 역량강화와 서비스의 통합을 강조하는 가족지원의 원칙(김성천 외, 2009)과, 레온(Leon, 1999)의 가족지원서비스에 포함해야 할 주요 가치와 실천의 원리를 비교정리하면 <표 2-4>와 같다.

<표 2-4> Dunst & Trivette(1994)와 Leon(1999)의 주장 비교

Dunst & Trivette(1994)	Leon(1999)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족의 공동체 의식을 증진시켜 가족성원간의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2. 가족의 자연적이고 비공식적인 지원체계를 활성화 한다. 3. 개입에서 전문가간의 팀을 강조한다. 4. 가족의 개별성을 존중한다. 5. 가족기능의 강화를 위해 가족의 약점보다 강점을 강조한다. 6. 치료적 접근 보다는 촉진적 접근을 하며, 가족을 서비스의 수혜자보다는 소비자로서 욕구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전달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애주기(life span)에 부합하는 서비스 2. 강점관점과 지역사회 역량강화 준거틀의 활용 3. 서비스의 통합성 4. 정부서비스 기관-지역사회와의 협력적 파트너십 5. 이웃을 기반으로 하며 이용자와 가족에게 우호적인 서비스 개발 6. 지방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강화 7. 지역사회 내의 공식적·비공식적인 강점과 자원의 확인 8.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적과 목표를 통합하여 결과를 측정하기

자료 : 김성천 외(2009), 『가족중심의 장애아동 통합지원 체계구축연구』에서 인용

2) 가족지원의 욕구 및 유형

우리나라의 가족지원 정책은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 중심을 이루고, 이에 대한 비판의 대안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만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혈연중심 특히, 가족에게 장애인의 보호와 재활의 일차적인 책임을 지우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 및 혈연중심의 보호는 발달 장애인들로 하여금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가족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성인 발달장애인을 둔 가족의 욕구는 시설보호수용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오늘날과 같이 가족보호 기능이 약화된 사회에서는 더 이상 가족의 비공식적 보호만으로는 발달장애인을 보호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의 부양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러한 고민은 발달장애인이 생애주기별 특성과 욕구가 다르듯 발달장애인의 가족들도 생애주기에 따라 다른 욕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오혜경 외(2007)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를 5단계로 나누어 가족지원 욕구를 설명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유아기 장애아동(출생에서 3세까지)의 가족은 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하여 장애 정도와 발달장애의 특성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상황에 적응하려는 욕구를 갖는다. 즉, 자녀의 장애발생 원인과 예후 등 장애특성, 양육, 교육, 재활 등에 관한 많은 정보와 전문적인 상담을 필요로 한다. 학령전기 장애아동(4세에서 7세까지)의 가족은 아동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교육적 배려를 받고자 하는 욕구와 비장애 형제·자매의 요구에 관심과 정서적 돌봄을 제공하는 욕구를 갖는다. 학령기 장애아동(8세에서 13세까지)의 가족은 적절한 교육기관을 선택하는 것과, 형제·자매의 장애형제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하는 갈등상황 등에 적합한 대처욕구를 갖는다. 청소년기 장애인(14세에서 18세까지)의 가족은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일반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생리적, 사회적,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고 성에 대한 호기심이 짝트게 되므로 자녀의 성에 대한 정보제공을 필요로 한다. 또한 이 시기의 형제·자매들은 발달장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지만 자신에게 과도한 기대를 가지는 부모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욕망과 장애형제에 대한 애정과 책임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고 걱정, 분노하기도 하므로, 이들의 장래역할에 대한 안내를 기대하는 욕구를 갖고 있다. 성인기 발달장애인 대다수의 공통된 욕구는 학령기 이후 사회적인 활동이나 참여 기회인데, 학교 졸업 이후에는 사회적인 단절로 인한 가정 내 고립, 사회적 기술, 대인관계, 정서적 문제들의 해결 욕구를 보인다. 특히, 누구와 어디에서, 어떤 주거 생활을 준비하고 실현할 것인가의 문제는 성인기 장애인 가족의 중요한 욕구이다.

3)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관련 제도와 서비스 현황

장애인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와 사업은 크게 정부와 민간기관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정부부문의 경우 사회복지급여의 성격에 따라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구분할 수 있다.

현금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생계급여와 같은 공적부조와 아동수당 및 사회보험 등 직접적으로 대상자에게 현금의 형태로 제공되는 재화를 말하며, 현물급여는 상담, 재활치료 등 개인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를 일컫는 개념이다(김성천 외, 2009). 본 항에서는 장애인 가족지원관련 제도를 경제적, 교육적, 의료적, 돌봄관련, 사회정서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경제적 영역에서 우리나라는 장애인 및 가족지원을 위한 제도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각종 세제상 감면과 공중시설 이용료 감면, 장애인 의무고용제 확대, 취업알선 및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둘째, 교육적 영역으로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지원을 하고 있다.

셋째, 의료적 영역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36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 제21조, 의료급여법 제3조, 제10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13조에 근거를 두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다. 그 외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 실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등의 사업이 보건복지부 이외의 기관에서 장애인 및 그 가족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다.

넷째, 돌봄 관련 영역에서는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중증장애인 가정도우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다섯째, 사회·정서적 영역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가족의 사회·정서적 스트레스를 경감시켜주기 위한 정형화된 제도나 심층 서비스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과 장애인부모회와 같은 장애인 관련 단체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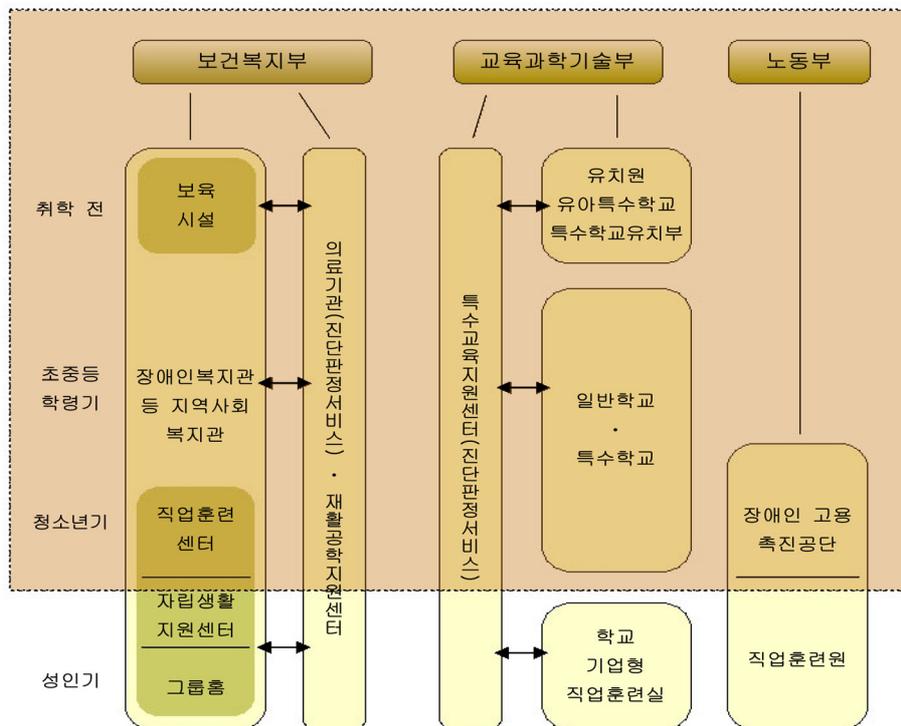
4)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대표적인 정부부처로는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를 제시할 수 있다. 조운경(2009)은 장애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서비스 전달체계를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를 중심으로 하여 <그림 2-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를 통한 전달체계를 살펴보면, 전 생애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고, 특정 생애주기만을 대상으로 하는 곳도 있으나, 학령전기에는 보육시설, 학령기에는 장애인복지관 및 지역사회복지관, 청소년기에는 직업훈련센터, 성인기에는 자립생활지원센터와 그룹홈 등이 대표적인 전달체계라고 할 수 있다. 진단·판정서비스는 의료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보조기구와 관련된 서비스는 의료기관 및

재활공학지원센터 등을 통해 제공된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제공기관과 대상 생애주기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학령전기 및 학령기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장애인부모회 및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과 학령기부터 노년기까지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관,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역사회활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특수교육 관련 교육기관(유아특수학교, 특수학교)과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통해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으며, 성인기에는 학교와 기업형 직업훈련실을 통해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07년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해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진단·판정서비스, 특수교육 및 치료지원, 가족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동부는 학령전기나 학령기 장애아동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없으며, 청소년기와 성인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고용 및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과 가족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각각 생애주기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부처 간의 연계와 협조는 매우 미흡한 편이다(조윤경, 2009).

[그림 2-1] 장애인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자료 : 조윤경(2009), “발달장애아동 가족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제언”에서 인용

5)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서비스의 문제점

국내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관련 제도와 서비스 현황, 전달체계를 살펴본 결과 몇 가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선정 기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제공되는 현금과 현물급여 서비스는 경제적, 교육적, 의료적, 돌봄, 사회·정서적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제공되는 서비스마다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상이하여 장애인 및 그 가족은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비스 제공 여부에 혼선을 겪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장애가족 지원서비스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통일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대상자를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일부 저소득층을 제외한 장애인 가족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최근 가족의 돌봄노동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에서 가족지원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나 아동과 노인으로 대상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장애가족은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 예산 및 인프라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측면에서 가족지향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 간 격차 및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며, 실제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전문인력, 서비스 제공기관 등 인프라 측면에서도 공급자가 수요자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서비스가 서비스의 명칭과 추구하는 목적은 다를 지라도 내용면에 있어서 차별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서비스는 어디까지나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전제로 하여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3) 서비스 전달체계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기본적인 전달체계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중앙 및 지방정부, 관련 단체(기관)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도 미약한 실정이다. 이는 가족지원 관련한 별도의 법이 존재하지 않고, 장애인 중심의 정책으로 일관해 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차원에서 가족의 욕구를 파악하고 지원하여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어야 하는데, 가족전체 관점에서 접근하는 서비스 체계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을 전환하고, 현재 일부 시도에서 진행 중인 장애인 가족지원 전문센터 같은 전달체계와 서로 협력하여, 장애인 가족과 서비스 제공 기관간의 조정, 협조, 촉진 및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 법률들은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복지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책수립 과정에서의

당사자 및 부모의 의견수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장애인 및 가족지원을 강제화 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장애인 가족지원 서비스의 가용성, 자금지원, 접근성 등 공급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가족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Ⅲ.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실태 및 욕구조사

1. 조사개요

1) 조사방법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전국에 거주하는 자폐성장아인 또는 지적장애인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가족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자녀의 생애주기별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우편 및 방문조사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노년기(65세 이후)의 경우 현실적으로 표본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인기에 통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에 속한 자폐성장아인 및 지적장애인 학교와 직업재활시설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표본할당은 2008년 12월 말 현재 등록 자폐성장아인 및 지적장애인의 수를 고려하였고, 지역별 표본 규모는 모집단의 규모에 따른 비례할당방법을 적용하였다. 권역별 할당될 사례를 학령전기, 학령기, 청소년기, 성인기 동일 비율로 재할당한 후, 권역별로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접근이 용이한 학교를 중심으로 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할당된 사례수의 약 2배수의 설문지를 배포한 후 회수하였다.

2) 분석방법

조사완료 후 기재가 누락되었거나 부실응답한 설문지를 확인하여 최종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총 982부의 설문지 중 653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오류가 있는 설문지를 제외한 총 584부(자폐성장아인 265부, 지적장애인 319부)가 최종분석에 활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지침에 따라 부호화한 후 전산입력하였고, 오류점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오류를 교정하였다. 최종 분석자료는 SPSS WIN 15.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기술통계 분석과 집단별 차이 파악을 위한 t-test, ANOVA 등을 실시하였다.

3) 조사내용

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응답자 일반사항, 발달장애인 자녀 관련 사항, 발달장애인 가족의 부담

및 어려움, 발달장애인 가족 관련 서비스 욕구 등 4가지 영역, 총 8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역에 따른 내용은 <표 3-1>과 같다.

<표 3-1>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체계 개발을 위한 욕구조사 설문지 구성 내용

구분	내용	문항수
응답자 일반사항	성별, 연령,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학력, 직업, 건강상태, 장애여부, 가계 월평균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주거형태, 거주지역	15문항
발달장애인 관련 문항	연령, 성별, 장애유형, 장애등급, 중복장애 여부, 일상생활능력, 의사소통능력, 주거형태, 참여 사회활동	9문항
발달장애인 가족의 부담 및 어려움	주 돌봄자, 주 돌봄자 연령, 주 돌봄자 건강상태, 돌봄 시간, 가족이 겪는 어려움, 돌보는 비용, 부담스러운 비용, 경제적 부담 정도, 가족 간 갈등, 차별 경험, 주 상담자, 재활치료 관련 어려움, 교육 관련 어려움, 보호 관련 어려움, 서비스 접근과정에서의 어려움, 서비스 이용과정에서의 어려움,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	22문항
발달장애인 가족관련 서비스	교육적 지원, 경제적(물질적 지원), 정서적 지원, 보호지원, 비공식적 지원	42문항

2. 조사대상자의 특성

1)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 가족의 특성은 <표 3-2>와 같다. 응답자는 어머니 526명(90.8%), 아버지 31명(5.4%) 이었다. 직업의 경우, 아버지는 전문관리직 25.1%(139명), 자영업 23.5%(130명), 행정사무직 18.6%(103명)에 종사했고, 어머니는 전업주부 62.5%(352명)가 가장 많았으며, 전문관리직에 종사하는 경우도 6.9%(39명)가 되었다. 부모의 장애여부에서는 아버지 98.0%(551명), 어머니 98.6%(561명)가 장애가 없었다. 부모의 건강상태를 묻는 질문에 부의 경우 89.6%, 모의 경우 85.7%가 건강하다고 응답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에서는 차상위 이하계층이 14.0%(79명)를 차지했다. 가족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400만원 이상이 19.6%(111명)로 가장 많았고, 200~250만원 14.9%(84명), 150~200만원 13.8%(78명), 250~300만원 12.7%(72명), 300~350만원 12.7%(72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3-2〉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항목	구분	빈도	비율	항목	구분	빈도	비율
연령 (무응답:19)	19세 이하	1	0.2	관계 (무응답:5)	어머니	526	90.8
	20대	8	1.4		아버지	31	5.4
	30대	207	36.6		친척	2	0.3
	40대	293	51.9		형제자매	6	1.0
	50대	46	8.1		조부모	9	1.6
	60세 이상	10	1.8		기타	5	0.9
	합계	565	100.0		합계	579	100.0
부학력 (무응답:21)	초졸	6	1.1	모학력 (무응답:15)	초졸	7	1.2
	중졸	9	1.6		중졸	15	2.6
	고졸	155	27.5		고졸	239	42.0
	대졸	324	57.5		대졸	280	49.2
	대학원졸	61	10.8		대학원졸	22	3.9
	기타	8	1.4		기타	6	1.1
	합계	563	100.0		합계	569	100.0
부직업 (무응답:31)	전문관리직	139	25.1	모직업 (무응답:21)	전문관리직	39	6.9
	행정사무직	103	18.6		행정사무직	26	4.6
	서비스직	36	6.5		서비스직	32	5.7
	단순노무직	27	4.9		단순노무직	16	2.8
	기능직	65	11.8		기능직	4	0.7
	전업주부	6	1.1		전업주부	352	62.5
	농축수산업	7	1.3		농축수산업	0	0
	자영업	130	23.5		자영업	32	5.7
	무직	5	0.9		무직	28	5.0
	기타	35	6.3		기타	34	6.0
	합계	553	100.0		합계	563	100.0
부 건강상태 (무응답:24)	매우건강하다	148	26.4	모 건강상태 (무응답:10)	매우건강하다	107	18.6
	비교적건강하다	354	63.2		비교적건강하다	385	67.1
	건강이나쁜편이다	46	8.2		건강이나쁜편이다	73	12.7
	매우건강이나쁘다	4	0.7		매우건강이나쁘다	6	1.0
	해당사항없음	8	1.4		해당사항없음	3	0.5
	합계	560	100.0		합계	574	100.0
부 장애여부 (무응답:22)	없음	551	98.0	모 장애여부 (무응답:15)	없음	561	98.6
	있음	11	2.0		있음	8	1.4
	합계	562	100.0			합계	569
가계소득 (무응답:19)	100만원 미만	37	6.5	수급여부 (무응답:19)	예	51	9.0
	100만원이상 150만원미만	52	9.2		아니오	486	86.0
	15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78	13.8		차상위수급	28	5.0
	200만원이상 250만원미만	84	14.9				
	25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72	12.7				
	300만원이상 350만원미만	72	12.7				
	350만원이상 400만원미만	59	10.4				
	400만원 이상	111	19.6				
	합계	565	100.0		합계	565	100.0
주거형태 (무응답:8)	월세	45	7.8	거주지역 (무응답:13)	대도시	335	58.7
	전세	145	25.2		중소도시	214	37.5
	자가	348	60.4		농어촌	22	3.9
	기타	38	6.6				
	합계	576	100.0			합계	571

2) 발달장애인 자녀의 일반적 특성

발달장애인의 일반적 특성은 <표 3-3>과 같다. 조사대상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 54.6%(319명), 자폐성장애 45.4%(265명)이고, 생애주기에 따른 분류는 학령전기 28.5%(166명), 학령기 28.0%(163명), 청소년기 26.5%(154명), 성인기 17.0%(99명)*로 구성되어 있다. 1급 장애인은 58.9%(341명),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는 29.7%(168명), 현재 거주지는 가족과 함께 집에서 산다는 응답이 96.4%(561명)였다. 자녀의 일상생활능력은 89.9%(521명)가 가족 등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54.4%(317명)의 자녀가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도움을 받아야 의사표현이 가능하다고 답하였다.

<표 3-3> 자녀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항목	구분	빈도	비율	항목	구분	빈도	비율		
장애유형 (무응답:0)	지적장애	319	54.6	장애등급 (무응답:5)	1급	341	58.9		
	자폐성장애	265	45.4		2급	172	29.7		
	합계	584	100.0		3급	37	6.4		
				판정받지 않음	29	5.0	합계	579	100.0
생애주기 (무응답:2)	학령전기	166	28.5	성별 (무응답:0)	남자	443	75.9		
	학령기	163	28.0		여자	141	24.1		
	청소년기	154	26.5		합계	584	100.0		
	성인기	99	17.0						
	합계	582	100.0						
중복장애 여부 (무응답:18)	없다	398	70.3	일상생활 능력 (무응답:5)	전혀 할수 없다	43	7.4		
	있다	168	29.7		대부분 도움 필요	299	51.6		
	합계	566	100.0		일부 도움 필요	179	30.9		
			스스로 할수 있다		53	9.2			
			해당사항없음		5	0.9			
				합계	579	100.0			
의사소통 능력 (무응답:1)	의사표현 불가능	112	19.2	현거주지 (무응답:2)	가족과함께집에서	561	96.4		
	보호자도움으로 간단	205	35.2		조부모의집에서	12	2.1		
	간단한의사표현 가능	176	30.2		친척집에서	1	0.2		
	스스로 의사표현 가능	87	14.9		생활시설에서	4	0.7		
	해당사항 없음	3	0.5		그룹홈 및 소규모시설	3	0.4		
	합계	583	100.0		기타	1	0.2		
				합계	582	100.0			

* 학령전기(0세-7세), 학령기(8세-13세), 청소년기(14세-18세), 성인기(19세 이상)로 분류하였다.

3) 주 돌봄자의 일반적 특성

(1) 일반적 특성

발달장애인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은 어머니가 89.4%(481명)로 가장 많았고, 돌봄자의 연령대는 40대 49.7%(284명), 30대 35.0%(200명)가 주를 이루었다(표 3-4).

〈표 3-4〉 주 돌봄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항목	구분	빈도	비율	항목	구분	빈도	비율	
주 돌봄자 (무응답:46)	아버지	12	2.2	주 돌봄자 연령 (무응답:12)	20세-29세	5	0.9	
	어머니	481	89.4		30세-39세	200	35.0	
	친조부모	18	3.3		40세-49세	284	49.7	
	외조부모	8	1.5		50세-59세	56	9.8	
	형제자매	1	0.2		60세 이상	27	4.7	
	도우미	5	0.9					
	활동보조인	2	0.4					
	친척	1	0.2					
기타	10	1.9						
	합계	538	100.0		합계	572	100.0	

(2) 주 돌봄자의 보호시간

주 돌봄자가 자녀를 돌보는데 소요되는 보호시간은 평일의 경우 6시간~10시간 구간이 41.2%(223명)로 가장 많았고, 전체 응답자의 평균 평일 보호시간은 10.79시간(5.686)으로 나타났다. 주말의 경우에는 21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이 47.0%(242명)로 가장 많았고, 전체 응답자의 평균 주말 보호시간은 17.91시간(6.625)으로 나타났다(표 3-5). 보호시간이 주중 평균 10.79시간, 주말 평균 17.19시간으로 나타난 것은, 수면시간과 학교 활동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주 돌봄자가 발달장애 자녀의 보호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5〉 주 돌봄자의 보호시간

항목	구분	빈도(명)	비율(%)	평균(시간)	표준편차	최소값(시간)	최대값(시간)
평일 (무응답:43)	5시간 이하	98	18.1	10.79	5.868	1	24
	6시간-10시간	223	41.2				
	11시간-15시간	88	16.3				
	16시간-20시간	97	17.9				
	21시간 이상	35	6.5				
	합계	541	100.0				
주말 (무응답:69)	5시간 이하	31	6.0	17.91	6.625	1	24
	6시간-10시간	58	11.3				
	11시간-15시간	106	20.6				
	16시간-20시간	78	15.1				
	21시간 이상	242	47.0				
	합계	515	100.0				

4) 가족지원 욕구

(1) 장애유형에 따른 서비스 이용욕구

장애유형에 따라 자녀를 돌보는 가족의 서비스 이용 욕구에 대한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독립 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교육적 지원·경제적 지원·정서적 지원·보호지원·비공식적 지원의 모든 부분에서 지적장애가 자폐성장애보다 이용 욕구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표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적 지원($t=2.279, p<.05$)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교육적 지원($t=0.616, p>.05$)·정서적 지원($t=1.499, p>.05$)·보호지원($t=0.438, p>.05$)·비공식적 지원($t=0.870, p>.05$)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는 장애유형과 상관없이 교육·정서·보호·비공식 지원 욕구에 차이가 없었다. 이는 장애유형을 막론하고 다차원적인 서비스 욕구와 부합하는 가족지원이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표 3-6> 장애유형에 따른 서비스 이용 욕구

구분	장애유형	N	평균	표준편차	t값(df)
교육적 지원	지적장애	292	18.0479	2.77032	0.616(542)
	자폐성장애	252	17.9008	2.78479	
경제적 지원	지적장애	292	28.6130	4.51240	2.279(503.732)*
	자폐성장애	255	27.6510	5.26089	
정서적 지원	지적장애	292	23.2671	4.30582	1.499(545)
	자폐성장애	255	22.7020	4.50081	
보호지원	지적장애	289	38.6782	6.12460	0.438(538)
	자폐성장애	251	38.4462	6.14427	
비공식 지원	지적장애	281	35.3523	4.70870	0.870(528)
	자폐성장애	249	34.9799	5.14895	

* $p<.05$

(2) 생애주기에 따른 서비스 이용욕구

생애주기에 따라 발달장애 자녀를 돌보는 가족의 서비스 이용 욕구에 대한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교육적 지원에서는 평균점수가 17.98점으로 학령전기, 학령기, 청소년기에서 이용 욕구가 평균(17.98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지원은 평균 28.16점이었고, 학령기, 청소년기, 학령전기 순으로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정서적 지원은 평균 23.00점으로 학령전기와 학령기에서 평균보다 높은 점수가 나왔다. 보호지원(평균 38.57점)에서도 학령기, 청소년기, 학령전기에서 평균보다 높은 점수가 나왔고, 비공식적 지원은

평균 35.17점이었다. <표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적 지원(F=5.087, p<.01) · 경제적 지원(F=3.910, p<.01) · 정서적 지원(F=8.811, p<.001) · 보호지원(F=3.074, p<.05)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비공식적 지원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사후검정에서 Scheffe와 Dunnett의 T3를 사용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파악한 결과 교육적 지원의 경우, 학령기(p<.05)와 청소년기(p<.05)에서 성인기보다 높은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적 지원의 경우, 학령기(p<.05)에서 성인기보다 높은 경제적 지원 욕구가 있었으며, 정서적 지원에서는 학령전기(p<.01) · 학령기(p<.01)에서 성인기보다 정서적 지원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적 지원에서 학령기가 성인기보다 욕구가 높게 나타난 것은 학령전기부터 시작된 재활치료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고 학교 진학에 따라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이며, 청소년기의 경우 사회성훈련 프로그램이나 직업훈련과 같은 영역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적 지원 영역에서 학령기가 성인기보다 높은 경제적 지원 욕구가 있는 것은 학령기까지 계속되는 치료 및 교육으로 인한 부담이 계속되고 있으며, 그 동안 바우처사업 등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한 성인기에 비하여 학령기의 경우 수혜를 받고 있거나, 수혜를 받는 다른 발달장애인을 통해 국가의 재활치료사업에 대한 인지가 높아진 때문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학령전기와 학령기에서는 성인기보다 높은 정서적 지원 욕구가 나타났다. 이는 학령전기의 경우 장애진단을 받고 큰 심리적 충격을 받고, 자녀의 양육과 교육 방향에 대해서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시기이며, 학령기의 경우 특수학교나 일반학교의 선택문제, 학교에서의 적응문제, 교사와의 관계 등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 모두 어려움을 겪는 데서 기인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3-7> 생애주기별* 서비스 이용 욕구

구분	생애주기	N	평균	표준편차	F값	사후검정 [†]
교육적 지원	학 령 전 기	153	18.1503	2.42729	5.087**	b>d, c>d
	학 령 기	152	18.1711	2.21905		
	청 소 년 기	144	18.2431	2.66615		
	성 인 기	93	16.9677	3.91055		
	합 계	542	17.9779	2.77889		
경제적 지원	학 령 전 기	155	28.2194	4.93236	3.910**	b>d
	학 령 기	154	28.8636	4.00011		
	청 소 년 기	145	28.2621	4.65329		
	성 인 기	91	26.6813	6.21446		
	합 계	545	28.1560	4.90081		

* 학령전기=a, 학령기=b, 청소년기=c, 성인기=d

구분	생애주기	N	평균	표준편차	F값	사후검정*
정서적 지원	학 령 전 기	154	23.8182	3.59094	8.811***	a>d, b>d
	학 령 기	154	23.5455	3.78868		
	청 소 년 기	145	22.7793	4.10195		
	성 인 기	92	21.0870	6.19403		
	합 계	545	23.0037	4.40921		
보호지원	학 령 전 기	154	38.7987	5.32399	3.074*	-
	학 령 기	153	39.0980	5.31231		
	청 소 년 기	142	38.8662	5.04621		
	성 인 기	89	36.7978	9.31053		
	합 계	538	38.5706	6.13137		
비공식 지원	학 령 전 기	147	35.7347	5.16087	2.545	-
	학 령 기	154	35.5000	4.39437		
	청 소 년 기	141	34.9149	4.77716		
	성 인 기	86	34.0349	5.49320		
	합 계	528	35.1705	4.92576		

* p<.05, ** p<.01, *** p<.001

5) 조사의 시사점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지원 실태 및 욕구를 파악한 결과를 종합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가족지원 욕구의 충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이다. 장애유형별로 교육/경제/정서/보호/비공식지원 욕구 및 우선순위를 파악한 결과 경제적 지원 욕구를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 집단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지적장애인 가족이 자폐성장장애인 가족보다 경제적 지원 욕구가 더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자폐성장장애인의 경우 지적장애를 동반한 중복장애가 많으므로 치료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원화된 서비스의 제공이 아닌 가족욕구를 기반으로 한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둘째, 생애주기별 욕구에 적합한 가족지원의 필요성에 관한 부분이다. 생애주기별로 교육/경제/정서/보호/비공식 지원욕구 및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양육관련 어려움으로 학령전기·학령기·

† 비공식적 지원의 경우 사후검정 방법으로 Scheffe를 사용하였고, 교육적 지원·경제적 지원·정서적 지원·보호지원의 경우에는 등분산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Dunnett의 T3 방법을 사용하였다.

* 비공식적 지원의 경우 사후검정 방법으로 Scheffe를 사용하였고, 교육적 지원·경제적 지원·정서적 지원·보호지원의 경우에는 등분산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Dunnett의 T3 방법을 사용하였다.

성인기는 비용부담을, 청소년기는 전문가 및 치료기관의 부족을 지적했다. 자녀돌봄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학령전기·학령기는 치료비를, 청소년기·성인기는 미래에 발생할 비용에 대한 부담을 지적했다. 정서지원 관련해서는 학령전기·학령기는 발달장애가족을 위한 교육을, 청소년기는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성인기는 장애자녀 양육상담과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우선순위로 지목했다. 보호지원에서는 모든 생애주기에서 전 생애에 걸친 one-stop 관리 서비스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발달과정 상 생애주기에 따라 욕구가 증첩되기는 하지만, 대상이 발달장애인일 경우 더욱 세심한 생애주기별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생애주기별 욕구와 부합하는 개별화된 가족지원 서비스가 다양한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제공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IV.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체계 구축방안

1. 여건 종합 진단

1) 장애인 가족지원 관련 논의

기존의 장애인복지 정책의 중심은 개인으로, 주로 상담과 보호가 주가 되는 시혜적 수준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장애인 중심의 지원을 넘어서는 가족관점에서의 통합된 지원에 대한 요구가 장애인부모단체 등에서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장애인 가족지원법의 제정에 관한 논의도 있다. 장애인 가족지원은 장애인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인데, 그 중에서도 발달장애인의 가족지원은 여느 장애유형과 견주어서도 초기개입의 필요성이 높은 민감한 부분임에는 틀림없다. 가족중심 장애인복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 전문가 양성, 지역사회 중심의 가족지원체계 구축 등 제반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장애인 가족지원에 관한 다양한 논의는 장애인 가족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 동의와 여건조성의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

2) 기존 서비스의 조정과 통합 필요성 제기

서비스의 조정과 통합은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과 연관된다. 기존의 정책이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달체계였다면, 가족지원은 기존의 전달체계가 확보하고 있는 상담·교육·네트워크의 활용가능성을 고려한 통합적 전달체계를 갖춰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각에서는 새로운 가족지원법의 제정을 주장하고 있는데, 법령의 제·개정은 예산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되, 한편으로는 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각종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병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정책방향

1) 접근방법

선진국의 가족지원 정책은 장애아동을 위한 조기개입부터 시작된다. 호주의 경우 0~5세(출생에서 학교입학 시기)의 발달장애아동들과 그 가족을 위한 보건 및 복지를 장려하기 위한 조기중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의 삶에서 가족이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가족의 관심사와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장애 영유아 지원체계가 미비한 우리나라의 사정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이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심리적 개입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의 부재와도 직결된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경우 조기진단과 개입을 통해 가족의 초기 상실감과 좌절, 죄책감을 극복하여 가족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접근은 가족의 욕구를 반영한 가족중심 운영 형태를 띠어야 할 것이다. 이에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서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다른 한편으로 장애인 및 그 가족을 위한 접근방법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은 생애주기별 관점에서의 접근이다. 본 연구의 욕구조사 결과에서도 언급했듯이 장애유형별, 생애주기별로 표출되는 장애인의 욕구와 가족의 욕구는 일정부분 중첩되기도 하지만 차이를 나타내기도 한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간에 장애유형별 욕구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생애주기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교육, 경제, 정서, 보호지원 욕구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의 정책접근이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지원이 아닌 개별적인 욕구를 통합한 차원에서의 포괄적인 정책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편성을 강조한 통합적인 차원에서의 가족지원정책접근방법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2) 가족지원체계 모형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체계 구축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여전히 발품을 팔고, 입소문에 의지한 채 서비스 기관을 찾아다니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 가족은 장애를 발견한 학령전기부터 성인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전환기마다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어려움의 양상 또한 가족마다 매우 다양하다. 즉,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정도, 특성 등에 따라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다양하고, 그 가족이 처한 환경요인에 따라 욕구 또한 다양하므로 획일적인 서비스를 적용할 경우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는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례관리 시스템은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체계 구축에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사례관리 구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 및 노동부를 포함한 대부분 정부부처, 학계, 전문가 및 장애인단체 등이 그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체계 모형은 1~2개의 시군구별로 ‘(가칭)사례관리센터’를 설치하여 발달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검사, 평가, 정보제공, 상담, 서비스 연계, 옹호 등 통합적인 지원을 독립적이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은 민간 및 공공기관은 이러한 사례관리센터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안을 마련하고, 모니터링 및 평가를 담당하도록 한다. 보건복지콜센터(129번)는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해 국가 서비스의 전달 및 정보제공의 역할을 담당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사례관리센터에 의뢰하여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사례관리센터의 주요 역할은 ① 사전면접(Intake) 및 발달검사, ② 자격적격성 판별, ③ 발달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욕구 평가, ④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및 서비스 연계, ⑤ 지역사회자원과 정보(사회복지, 교육, 치료 등) 연계, ⑥ 발달장애인 가족 상담 및 권리 옹호, ⑦ 조기교육 및 학교교육을 위한 전환정보 제공 및 지원, ⑧ 생애주기 서비스(주거지원, 재정후견, 직업재활 등) 제공 등이다.

V. 결론 및 제언

장애인 가족지원은 장애인 중심의 복지에서 나아가 가족전체의 관점을 통합하는 정책접근이다. 가족지원에 관한 논의는 기존의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수혜적인 복지형태에서 벗어나, 장애인 가족의 욕구를 반영한 정책을 제도화하기 원하는 장애인단체, 장애인부모회 등의 문제제기를 통해 최근 더욱 가시화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발달장애인 가족의 경우에는 장애특성 상 일생을 통해 가족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는 발달장애인을 양육, 보호하는 주부양자의 부담이 평생 동안 지속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된 전달체계가 필요하고,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와 부합하는 다양한 차원에서의 가족지원 관련 서비스의 제공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지원 욕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장애인 두 집단의 가족지원 욕구에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장애유형에 따라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에 차이가 있었고, 비공식지원을 제외한 교육/경제/정서/보호지원 차원에서 생애주기별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한 접근이 장애당사자의 생애주기별 욕구에 더욱 초점을 두고 다차원적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서비스의 산재와 정보 부족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의사결정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이들은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의 우선순위로 전 생애에 걸친 원스톱(one-stop) 관리 서비스를 지적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인 서비스의 가족단위 생애주기별 지원으로의 전환에 관한 제언이다. 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족의 어려움과 서비스 욕구는 차이가 분명하다. 장애정도, 경제적 수준,

지원체계에 따라서도 욕구가 달리 나타나는데, 발달장애인은 지적능력과 사회성이 부족한 장애 특성 상 가족들의 부양부담이 성인기 이후로 갈수록 더욱 증가된다. 지역사회 기관들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는 있으나, 학령전기 부터 청소년기 혹은 성인초기에 해당하는 발달장애인을 위주로 한 서비스 제공이 주를 이루어왔다. 따라서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성인기 이후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는 한 장치가 된다. 하지만 이러한 장애인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족전체에게 미칠 파급효과를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것이 가족들의 현실이다. 이에 기존의 장애인 중심 서비스에서 나아가 가족을 포함하는 가족단위의 생애주기별 서비스의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둘째, 가족지원 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제언이다. 발달장애인 부모의 대다수가 자녀의 장애를 확인한 때부터 시작하여 생애주기별로 성장과 변화를 나타내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불안감과 당혹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개별적이고 다양한 생애전환기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치는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가족지원은 통합적인 관점에서 제공되어야 함과 동시에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개별성을 고려한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족지원 전달체계의 중심축으로 사례관리 서비스의 도입을 검토해야 하고, 국가차원에서의 접근성이 탁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지원 전달체계가 제도화되어야 할 시점이다.

셋째,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확보에 관한 제언이다. 학령전기부터 성인기초기까지 발달장애인들은 가족을 제외하고 학교,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기관 등에서 교사(혹은 사회복지사)와 가장 접촉빈도가 높다. 교사와의 관계의 질은 발달장애인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현재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교사들의 참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 반면에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는 발달장애와 관련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사례가 왕왕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전문교육,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언한다.

참고문헌

- 김성천 · 권오형 · 최복천 · 심석순 · 신현욱 · 임수경(2009), 『가족중심의 장애아동 통합지원 체계구축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 김용득(2000), “생애주기와 장애인복지서비스”. 노틀담복지관 개관13주년 기념세미나 자료집, 1-21.
- 변경희(2008), “지적장애인 사례관리 조사연구”.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2008년 세미나 자료집, 3-58.
- 변용찬 · 김상희 · 윤상용 · 권선진 · 조홍식 · 조성열 · 강종건 · 최승희(2006), 『생애주기별 장애인의 복지욕구 분석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오혜경 · 백은령 · 한민우(2007), 『지적장애인 가족지원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2003a), 『영유아기 장애아동의 양육부담과 가족지원』. 도서출판 신정.
- 오혜경 · 정소영(2003b), 『학령기 장애아동의 양육부담과 가족지원』. 도서출판 신정.
- 이미선 · 김경진(2000), 『장애영유아 가족지원 방안연구』. 국립특수교육원. 영유
- 조운경(2009), “발달장애아동 가족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제언”. 한국장애인개발원 『발달장애인가족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세미나 자료집』, 55-66.
- Anderson, E. M., Clarke, L., and Spain, B.(1982), 『Disability in Adolescence』. Methuen.
- Dunst, C. J., Trivette, C. M.(1994), “Aims and principles of family support programs. In C.J. Dunst, C.M. Trivette, & A. G. Deal(Eds.)”. Supporting and strengthening families. Vol. 1, p.30-48
- Leon, A. M.(1999), “Family support model : integrating service delivery in the twenty-first century”. Families in Society. Vol 80. p.14-41.
- Turnbull, A. and Turnbull, H.(1997). 『Families, professionals, and exceptional, and exceptionality : A special partnership(3rd ed.)』. Upper Saddle, N.J : Prentice-Hall.

【Abstract】

A Study on Family Support System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Kim, Jung 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uild capacity of families more strengthen and make an effective support system for family. In terms of life cycle, it finds out family's needs to target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cluding Intellectual Disorder and Autistic Disorder. According to documentary survey, it was analyzed that status of family support, burden of care-giving, their needs and life cycle characteristic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is study was used in the final analysis which is a total 584 questionnaires(265 questionnaires of Autistic Disorder, 319 questionnaires of Intellectual Disorder) to target family who care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order or Autistic Disorder in the country. It was used SPSS WIN 15.0 statistical package for data analysis. It conducted that descriptive statistics also used ANOVA and t-test for figure out the difference of group.

According to the t-test results of the type of disabilities on the family's service needs as the difference, it is finding that needs of Intellectual Disorder was more higher than Autistic Disorder for all part of support, such as educational, economic, emotional, protecting, informal so on. It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statistically but informal support was not in the life cycle needs of educational support services ($F = 5.087, p < .01$) • financial support ($F = 3.910, p < .01$) • emotional support ($F = 8.811, p < .001$) • protection support ($F = 3.074, p < .05$).

The findings are as fellows:

First of all, it is important that conversion of life cycle service for family including perso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Second, it makes to existing organization for basis of family support systems.

Third, it considers to use for accessibility of perso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and their family.

Forth, it suggests to ensure the professionals who can handle case managements.

☼ Key Words : perso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family support, life span, family sup

*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Policy Research Division / Chief of Policy Team

『장애인복지 연구』 투고 및 심사규정
2010. 1 제정

I. 투고 방법

1. 투고자격

투고자격은 제한하지 않음

2. 투고내용

장애인복지정책 및 임상, 장애학, 장애문제 또는 이와 관련되는 분야의 연구에 한하며,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독창적인 내용(단, 석·박사 학위 논문의 경우 타 학술지나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경우에 게재 가능)

3. 발간일정

- ① 연3회 정기적(4, 8, 12월말)인 발간을 원칙으로 함.
- ② 논문 접수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고 상시접수를 원칙으로 하나, 심사기간과 발행일을 고려한 접수 마감일은 아래와 같음.
 - 4월 30일 발행분 : 3월 15일(2010년 1호에만 적용)
 - 8월 30일 발행분 : 6월 30일
 - 12월 30일 발행분 : 10월 30일
- ③ 심사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별도로 공고

4. 논문제출

- ① 제출자료 : 투고논문, 논문투고신청서(서식 1)
- ② 제출방법 : 이메일, 등기우편, 인편제출
- ③ 심사료 및 게재료 : 없음
- ④ 접수된 원고는 반환하지 아니함. 단, 투고된 논문의 성격이 본 지와 맞지 않거나 연구윤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논문작성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논문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이룸센터 5층 (우. 150-917)
재)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김영미 연구원
- 전화 : 02-3433-0649
- 팩스 : 02-416-9567
- E-mail : kymi@koddi.or.kr

4. 저작권

본 지에 게재되었거나 게재확정인 논문의 저작권은 본 지가 소유하게 되며, 본지의 허락 없이 임의로 타 지에 게재할 수 없음.

5. 게재편수 및 순서

- ① 게재편수는 매 호마다 6편 내외로 하되 해당 호에 게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 호로 이월하여 게재할 수 있음.
- ② 선정된 논문의 게재순서는 투고 순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음.

II. 논문심사원칙

1. 심사위원 선정

심사위원은 편집위원들 중에서 응모된 논문의 주제에 따라 가장 적합한 사람 3인을 선임하며, 편집위원들 중에서 심사위원을 선임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외부의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2. 심사절차 및 방법

- ① 연구자 무기명 상태로 심사위원 3인에게 제출된 원고 사본을 송부한다.
- ② 한 편의 논문에 대해 3명의 심사위원이 동시에 심사하며, 심사위원은 기본 심사양식인 논문심사평가서(서식 2)에 기초하여 심사한다.
- ③ 논문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이 5개의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한다.

- 주제의 학술성 및 전문성
- 목적의 명료성 및 내용의 일치성
- 연구의 체계와 구성의 타당도
- 연구의 독창성 및 최근 연구동향의 반영도
- 장애인복지분야의 공헌도, 유용성

④ 개별 심사위원의 판정은 다음의 4개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 게재(○) : 제출된 논문이 별도의 수정없이 게재하기에 적합함
- 수정 후 게재(◎) : 게재하기에 적합하지만 특정 부분에 수정이 필요함
- 수정 후 재심(△) : 게재여부의 판단을 유보하며, 특정부분을 수정한 후 재심사함
- 게재불가(×) : 게재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⑤ 심사결과에 따른 판정기준은 아래 심사판정표와 같으며, 심사결과는 심사결과 통보서에 의해 투고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번호	심사위원A	심사위원B	심사위원C	초심판정	재심판정
1	○	○	○	그대로 게재	-
2	○	○	◎	"	-
3	○	○	△	"	-
4	○	○	×	"	-
5	○	◎	◎	수정후게재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11	○	△	△	수정후재심 (B,C)	B,C위원 중 적어도 1명이 게재판정한 경우 게재
12	○	△	×	수정후재심 (B)	B위원이 게재판정한 경우 게재
13	◎	△	△	수정후재심 (B,C)	B,C위원 중 적어도 1명이 게재판정한 경우 게재
14	◎	△	×	수정후재심 (B)	B위원이 게재판정한 경우 게재
15	△	△	△	수정후재심 (A,B,C)	A,B,C위원 중 적어도 2명이 게재판정한 경우 게재
16	△	△	×	수정후재심 (A,B)	A,B위원 모두 게재판정한 경우 게재
17	○	×	×	"	-
18	◎	×	×	"	-
19	△	×	×	"	-
20	×	×	×	"	-

- ⑤ 수정 후 게재(◎) 판정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수정논문과 함께 수정사항을 정리하여 작성한 논문수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논문이 접수 되는대로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이때 재심판정을 게재 혹은 게재불가만 가능하며 재심판정은 심사판정표에 따른다.

3. 편집 확정

- ① 투고 원고에 대한 심사가 끝나는 대로 편집위원회는 편집회의를 개최하여 심사보고서 최종 검토와 편집을 확정한다.
- ② 게재가 확정되면 저자는 최종본을 편집위원장에게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전달하며, 편집위원장이 최종본을 검토한 후 출판사에 넘긴 후에는 저자가 직접 출판사에 연락하여 논문을 수정할 수 없다. 다만, 명백한 오류 및 오타 등이 발견되었을 때는 편집위원장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편집자는 투고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 논문접수일, 심사완료일, 게재확정일을 정확히 명시한다.
- ④ 동일인(주저자·공저자 모두 해당)이 2편 이상의 논문을 투고하여 모두 심사를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통과된 논문은 투고 순에 따라 한 호당 1편씩만 게재된다.
- ⑤ 심사위원은 심사내용에 대해 투고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투고자 역시 심사내용을 공공연하게 누설할 수 없다.
- ⑥ 상기 심사원칙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4. 이의신청 및 재투고

- ① '게재불가' 판정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저자는 최종판정결과 통보 후 1주일 이내 1회에 한해 편집위원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사는 새로 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진행하며, 심사절차 및 방법은 처음 투고된 논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Ⅲ. 연구윤리

1. 연구부정행위의 유형

- ①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② 변조 :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③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
- ④ 저자의 허위기재 : 연구에 직접적인 공헌 또는 기여한 사람을 고의적으로 배제하거나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단, 연구에 작은 기여를 했으나 공동연구자로 포함시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주, 서문 등에 기여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 ⑤ 중복게재 : 동일한 논문의 내용을 두 개 이상의 출판물에 발표하는 행위(단, 본인의 학위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축약·수정·보완하여 투고한 경우는 중복게재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저자는 원 저작물의 출처를 투고논문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 ⑥ 이중투고 : 동일한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거나, 심사 중인 논문을 타 학술지에 투고하는 행위
- ⑦ 논문의 무단 수정 : 게재판정이 내려진 원고를 출판사에 넘긴 후 편집위원장의 승낙 없이 출판사와 연락하여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는 행위
- ⑧ 공적허위진술 : 투고 시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대하여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 ⑨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⑩ 기타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또는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예: 자기 표절)

2.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

- ① 편집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았을 경우, 편집회의를 소집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②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이 난 경우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

- 학술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한국연구재단, 본지 논문 목록)
- 판정시점으로부터 이후 3년 간 투고 제한
- 위반사실의 공지(한국연구재단 통보, 개발원 홈페이지)
- 위반자에게 경고 및 주의조치

3. 제보자의 권리

- ① 제보자는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하나, 익명의 제보라도 부정행위의 명확한 내용과 증거를 포함한 경우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신원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③ 제보자는 부정행위 신고 이후 진행되는 조사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4. 피조사자의 권리

- ① 편집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최종판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혐의내용 및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 ② 피조사자는 부정행위의 조사절차 및 일정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피조사자에게 해명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심사위원의 윤리

- ① 편집위원·심사위원은 논문의 접수·심사·게재과정에서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② 편집위원·심사위원은 논문의 접수·심사·게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논문작성요령

1. 논문의 순서

모든 논문은 아래 제시된 순서대로 집필되어야 한다. 다만, 영문으로 작성된 논문은 영문초록을 앞으로, 국문초록을 뒤로 배치하되 국문초록을 생략할 수 있다.

- 논문제목
- 저자성명(소속 및 지위)
- 국문초록(500자 이내) 및 주제어
- 본문
- 참고문헌
- 영문초록(250단어 이내, 논문제목, 성명, 소속, 본문, 영문주제어 순) 및 주제어
- 부록(필요한 경우)

2. 분량 및 용지설정

- ① 논문은 워드프로세서(한글 2002 이상)로 작성하며, 논문의 분량(국영문초록, 참고문헌, 부록 포함)은 25쪽 이하로 작성한다.
- ② 용지설정은 아래의 표에 따른다.

용지종류	A4(210×297mm)	
용지여백	위쪽: 20mm 아래쪽: 15mm 왼쪽: 30mm 오른쪽: 30mm	머리말: 15mm 꼬리말: 15mm 제본: 0mm
글자모양	크기: 11pt 글꼴: 휴먼명조	장평: 95% 자간: 0%
문단모양	정렬방식: 혼합 문단여백: 왼쪽 0pt, 오른쪽 0pt 들여쓰기: 2(space bar)	줄간격: 160% 문단위 0pt, 문단아래 0pt 최소공백: 100%

3. 저자성명

- ① 저자는 성명을 표시하고 옆에 소속과 지위를 기재한다.
- ② 논문의 저자는 제1저자, 공동저자 순으로 표기하며, 공동저자는 기여도에 따라 순서대로 표기한다.

4. 국문초록

- ① 국문초록은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하며, 한국 600자 또는 A4 1/2 분량으로 한다.
- ② 국문초록 아래에 3개 이상의 주제어를 제시하여야 한다.

5. 영문초록

- ① 영문초록은 1,000단어 또는 A4 1장 정도의 분량으로 작성한다.
- ② 영문초록은 논문제목, 성명(직위, 소속), 요약, Key words 순으로 작성한다.

6. 본문

- ① 논문의 작성언어는 한글과 영어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인명, 지명 등 고유명사는 원문자를 사용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 도량형은 미터법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본문의 항목별 번호는 아래 예를 따른다.

- 항목순서 : I. → 1. → 1) → (1) → ① → 가.
- 항목설정

I. 휴먼명조 16pt, 진하게

1. 휴먼명조 14pt, 진하게

1)휴먼명조 12pt, 진하게

(1) 휴먼명조 11pt, 진하게

① 휴먼명조 11pt

가. 휴먼명조 11pt

- ④ 표와 그림은 아래 예시와 같이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표제목은 표의 상단 중앙, 그림 제목은 그림의 하단 중앙에 제시한다.
- (예) <표 1>, <표 2>… [그림 1], [그림 2]…

7. 문헌의 인용

① 본문 내의 문헌인용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제시한다.

- 본문 해당처에 괄호 처리하여 저자, 발행년도, 필요한 경우 인용페이지를 표기한다.
 - 예 1 : 이 문제에 대하여 홍길동(2009)은 ……
 - 예 2 : 한 연구(홍길동, 2009)에 의하면 ……
 - 예 3 : 최근의 연구(홍길동, 2009; Robert, 2007: 127)에 의하면 ……
- 직접 인용문에는 인용부호를 달고 페이지를 표시한다.
 - 예 1 : 홍길동(2009)에 의하면 “……”(p.115)
 - 예 2 : 한 연구에 의하면 “……” (홍길동, 2009 : 115)
- 저자가 다수일 경우 2인까지는 모두 표시하되, 3인 이상은 첫 자만 표시하고 그 다음은 국문일 경우 ‘○○○ 외’, 영문인 경우 ‘한글표기(○○○) 외’로 나타낸다.
 - 예 1 : 홍길동 외(2009),
 - 예 2 : 로버트(Robert) 외(2007)

8. 참고문헌

① 참고문헌의 작성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제시한다.

- 논문의 말미에 국문, 중국어, 일본어 등 동양(한자사용권) 문헌부터 가나다순으로 제시하고 그 다음에 영문 등 알파벳으로 표시된 저자의 문헌을 제시한다.
- 같은 저자의 저서가 여러 개 있는 경우는 출판년도 순으로 기록하고, 같은 해에 쓰여진 것은 본문의 인용된 순서에 따라 출판된 연도 뒤에 (a), (b), (c)를 첨가하며(예: 2000(a), 2000(b)) 이 때 맨 앞의 저자 이름은 반복을 피하고 _____로 대체한다.
- 단행본과 논문의 제목은 첫 단어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표기한다. 단, 정기간행물의 책명은 각 단어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제시한다.
 - 예) 국문 단행본 : 저자명(발행연도). 도서명. 발행처.
 - 예) 영문 단행본 : 저자명(발행연도). 도서명(이탤릭체). 발행처 : 발행소.
 - 예) 국문 논문 : 저자명(발행연도). 제목. 잡지명. 권호. 게재페이지.
 - 예) 영문 논문 : 저자명(발행연도). 제목. 잡지명(이탤릭체). 권호. 게재페이지.
 - 예) 학위 논문 : 저자명(발행연도). 제목. ○○대학교. ○○학위논문.
- 참고문헌의 예.

① 단행본
 김태희(2009). 아이리스. 한국방송공사.
 송혜교·원빈(2008). 그들이 사는 세상. 한국방송공사.
 Esping-Andersen, Gosta(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② 학위논문, 학술지, 자료집, 보고서, 신문
 이순재(2009). 주연배우의 지명도가 시청률에 미치는 영향 : 문화방송 드라마 프로그램 중심. OO대학교 OO학위 논문.
 유재석(2009). 진행자의 올바른 언어 사용 방법에 관한 연구 :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진행자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11호 100-120.
 강호동(2009). 진행자의 올바른 언어 사용이 시청률에 미치는 영향 연구. 미디어교육 40(3), 200-235.
 이윤석(2009). 국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차별화 과제. 한국방송모니터링학회 2009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30-44.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한겨레신문. 2009. 11. 25. “세종시로 갈 연구기관들 이전 힘들다”.
 Mason, Marry Ann(1992), *Standing Still in the Workplace ; Women in Social Work and Other Female-Dominated Occupations*. *Journal of Women and Social Work* 7(3): 23-43.
 Hong, Kil Dong(2000), *Schooling and Employment of Married Women in Korea*.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9. 논문저자 및 심사정보 표시

- ①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발행 시 영문초록 하단에 제1저자와 교신저자를 표시하고 이메일 주소를 명기하도록 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논문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투고일, 심사기간, 게재확정일을 영문초록 하단에 표시해 발행하도록 하며, 표시기준은 아래와 같다.
 - 투고일 : 논문투고신청서 및 투고논문이 도착한 날짜
 - 심사기간 : 심사위원에게 심사의뢰한 날부터 ‘그대로 게재’ 논문은 최종심사 결과가 나온 날짜, ‘수정 후 게재’ 논문은 수정논문이 제출된 날짜, ‘수정 후 재심’ 논문은 재심결과가 나온 날짜까지
 - 게재확정일 : 편집위원장이 게재확정을 내린 날짜

편집위원장

이용복(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장)

편집위원

권선진(평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용득(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정희(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김종인(나사렛대 인간재활학과 교수)

박을중(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백은령(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변경희(한신대 재활학과 교수)

양숙미(남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혜경(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미정(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이성규(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승기(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한진(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차현미(문화관광부장관 정책보좌관)

「장애인복지 연구」 제1권2호 Disability & Social Welfare

발행일 : 2010년 10월 31일

발행처 : (재)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5층

발행인 : 이용홍

대표전화 : 02-3433-0600

팩 스 : 02-416-9567

홈페이지 : <http://www.koddi.or.kr>

인쇄처 : 한국척수장애인협회(031-421-8418)

장애인복지 연구

DISABILITY & SOCIAL WELFARE

- The fundamental research for the handicapped children rehabilitation treatment service evaluation: The service issue relate to use reality and satisfaction
Yang, Sook-Mee · Oh, Hea-Kyung · CHun, Dong-Il
- A Study on Changes in Self-Esteem of Disabled Women by Participation in Culture-Arts Activities
Park, Hyun-Joo
- A Study on the Impact of Abolishing LPG Subsidy Policy for People with Disability
Lee, Dal-Yob · Huh, Chang-deog
- A Study on the effect of independent living of the disabled and the satisfaction level of art and cultural welfare services: Focused on welfare centers of art and cultural welfare services
Jung, Won-Il · Kwon, So-Hyun
- Research of Location Tracking (GPS) Product Designs for Autistic Children
Han, Man-uk